

연구보고 2010-08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현철 · 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

Kang, Hyun-Cheol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0.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의무 규정 법령의 선진화를 통한 기업 등 국민 부담의 경감 필요
-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보고·신고·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
 -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
 - 기업과 국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보장
 -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 연구 방법
 - 법령전수조사방법과 실태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

II. 주요 내용

- 보고·신고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분석
- 보고·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보고의 의의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신고의 의의 및 종류, 요건, 효과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
 - 교육·기술 관련 법제
 - 국토·해양 관련 법제
 - 문화·관광 관련 법제
 -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 법제
-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법적 근거 분석
 - 보고·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분석
 -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신고제도 분석
- 보고·신고제도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샘플링 조사와 보고·신고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선대상 및 근거를 상호 교차비교

Ⅲ. 기대효과

- 보고·신고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선진화와 체계화에 기여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이후 조사·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주제어 : 보고, 신고, 행정조사, 표준비용모델, 행정비용, 보고·신고 실태조사

Abstract

I . Purpose and Necessity

-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and citizen through advanced terms of legal report, data submission
 - Determine by the type of legislation on legal report, data submission
 - Advance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maintenance of legal standards
 - Guarantee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or enterprise and citizen
 - Reduction of unnecessary burdens
 - Methods of Study
 - Census and survey methods to law

II . Main content

- Theory and case analysis through the legal report on the meaning and problems
 - The legal report of the meanings and legal issues
 - Meaning of reporting and related legal issues and obligations imposed

- The significance and types, requirements, effects of the legal report
- The legal report and data submiss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alysis of census legislation through the status of legal report system, under current law

- Legislation related to education, technology
- Legislation related to land and marine
- Legislation related to culture, tourism
- Legislation related to health(food, Sanitary), environments
- Legislation related to fair trade, knowledge economy

Analysis of improvement targets of the legal report system

- Based on legal analysis
- Reporting methods, deadlines, rules of procedure analysis
- Sanctions for any breach of regulations
- Analysis of the legal report and data submiss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Unnecessary procedural analysis reporting system

Survey on reporting system

- Reporting system, the target of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ublic Health Act

- A sampling survey on the standard cost model and based on survey results compare the targets and the rationale

III. Benefits

-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legislation and organize the presentation of reports on the legislative basis
- Used as the basis for analysis of the case presented a standard cost model

►► **Key Words** : Report, Declar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tandard cost model, Administrative costs, Survey report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1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2. 연구의 구성	25
제 2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일반론	27
제 1 절 보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27
1. 개념 정의	27
2. 보고의무·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29
제 2 절 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31
1. 개념 정의	31
2. 신고의 종류	32
3. 구별개념	44
4. 유사 제도와의 구별	45
5.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허가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가 여부	48
6. 신고의 요건	49
7. 신고의 수리	51
8. 신고의 효과	52

9. 수리의 거부(거부행위의 처분성)	55
10. 신고업의 양도	56
11. 신고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58
제 3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 의의	60
1. 행정조사 개관	60
2.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64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67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68
1. 총괄표	68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80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14
1. 총괄표	114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32
제 3 절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227
1. 총괄표	227
2. 개별법상의 보고·신고 현황	233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253
1. 보건(식품·위생)	253
2. 환 경	370
3. 산 립	405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413
1.	공정거래 관련 총괄표	413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 신고 현황	415
3.	지식경제 관련 총괄표	42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435
5.	금융 관련 총괄표	458
6.	금융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463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477
제 1 절	보고·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분석	477
1.	교육·기술 관련 법제	477
2.	국토·해양 관련 법제	479
3.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506
제 2 절	보고·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525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527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531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535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535
2.	교육·문화 관련 법제	541
3.	국토·해양 관련 법제	549
4.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558
제 4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584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586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591
제 5 절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신고제도 분석	603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603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613
제 5 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실태조사	617
제 1 절 조사 설계	617
1. 조사대상 및 절차	617
2. 문항구성 및 분석방법	618
제 2 절 조사 결과	621
1. 건설산업기본법	621
2. 공중위생관리법	634
제 6 장 결 론	647
참 고 문 헌	651

【부 록】

건설산업기본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655
공중위생관리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661

표 및 그림 목차

<표-1>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21
<표-2> 신고·보고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유형	539
<표-3>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541
<표-4>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543
<표-5>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549
<표-6>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550
<표-7>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551
<표-8>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입법례	552
<표-9> 등록사업자의 자본금변경, 인력변경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555
<표-10>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558
<표-11>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563
<표-12>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586
<표-13>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587
<표-14>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590
<표-15>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592
<표-16>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593
<표-17>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597
<표-18> 국민건강증진법상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598

<표-19> 문항구성	619
<표-20> 표준비용분석의 단계	620
<표-2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건설산업기본법)	622
<표-22> 1회 평균 소요비용(유효응답 24명 기준)	628
<표-23> 기업 규모별 표준비용(건설산업기본법)	629
<표-24>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631
<표-25>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633
<표-26>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공중위생관리법)	635
<표-27> 1회 평균 소요비용(유효응답 129 기준)	640
<표-28> 업종별 표준비용(공중위생관리법)	641
<표-29>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공중위생관리법)	643
<표-30>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645
<그림-1>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횟수	623
<그림-2>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횟수	624
<그림-3>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횟수	624
<그림-4>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횟수	625
<그림-5> 연 평균 전문업체 이용횟수	628

<그림-6> 외주 시 비용의 적절성	630
<그림-7>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631
<그림-8>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632
<그림-9> 신고·보고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건설산업기본법)	634
<그림-10> 신고보고횟수-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	636
<그림-11> 신고보고횟수-공중위생영업신고	636
<그림-12> 연 평균 전문업체 이용횟수	639
<그림-13> 외주시 비용의 적절성	642
<그림-14> 신고보고 의무 중 가장 부담되는 것	643
<그림-15> 신고보고 의무 중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644
<그림-16>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64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 또는 신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일시 정지, 과태료, 행정형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업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보고·신고·자료제출과 같은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명확성원칙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신고의무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 법령에 의무의 내용 및 절차, 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는 이들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어 의무이행을 위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의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인·허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보고·신고제도가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서 형식적으로는 보고·신고제도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기존의 인·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각종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있거나,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이행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비

용이 과도한 경우가 많아 기업 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넷째,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기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법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등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행정의 정보수집,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자료제출·보고의무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이들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형벌의 정도, 과태료의 금액 등 제재수단은 동일 의무 위반에 대한 다른 입법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나,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제도의 입법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선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 등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 의무 등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무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여전히 기존의 인·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보고·신고제도,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있거나,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이행시 구

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기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법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등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 행정의 정보수집,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자료제출·보고의무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한 제재가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보고·신고·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하고, 기업과 국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행법상의 보고·신고 제도를 다음의 <표-1>과 같이 i)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ii)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iii)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iv)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소관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v)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관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표-1>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분야	소관 부처	법률명	합계	비고
교육·기술	교육과학기술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 89개	90개	

제1장 서론

분야	소관 부처	법률명	합계	비고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외 130개	131개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제외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41개	42개	-문화재청 소관 법령 제외
보 건 (식품·위생) · 환경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외 78개	157개	-농촌진흥청, 기상청 소관 법령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은 식품 관련 법령만 대상으로 선정함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외 9개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 12개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42개		
공정거래·지식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 10개	151개	
	금융위원회	공사채등록법 외 38개		
	지식경제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외 86개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 13개		
			총 481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법령전수조사 방법과 실태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법령전수조사방법의 경우 201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국토

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소관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관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법률 총 481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1차 전수조사하여 <보고·신고의 법적 근거,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 유형별 보고·신고내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관련 법조문>을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후 책임연구진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법령에 규정된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보고/자료(보고서·계획서·평가서·정보)제출/신고/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으로 재분류하였고,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보고(신고)의 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1차 전수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보고·신고·자료(보고서·계획서·평가서·정보)제출·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을 추가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조사분석의 대상법령의 선정기준일은 법령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중간단계인 2010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후 전면개정된 법령의 경우에만 일부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이 보고서는 보고·신고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보고·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조항의 직접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구하거나 명하는 보고·자료제출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률의 관리·감독이나 몇몇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고·자료제출 등을 명하

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 등(이러한 보고·자료제출 등은 통상 출입검사·질문·현장조사와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으로 분류하였다. 출입검사·질문·현장조사 등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해당 분야별로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별 보고·신고·자료(보고서·계획서·평가서·정보)제출·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의 수치를 통계화 하였고, 해당 분야별 수치 역시 산출하였다.

둘째, 실태조사방법의 경우 기업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고·신고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으로 수범영업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기업들이 의무 이행에 따르는 비용을 추산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 및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였고, 실제 현장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디씨알폴’에 의해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실제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임의 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 50개를 선정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관련 조사의 표본은 특성별 할당 후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의 6개 업종의 기업체 298개(각 업종별 50개 내외)로 선정하였다. 임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한 「공중위생관리법」 대상

조사의 표본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5.79\%$ 이다.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보고·신고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술·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분야,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소관 보건(식품·위생)·환경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관 공정거래·지식경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보고·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보고·신고 방법·기한 및 절차규정, 보고·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규정, 불필요한 보고·신고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보고·신고제도를 설문조사를 통한 입법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표준비용모델을 조사하여 실질적 국민과 기업의 행정상 부담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보고·신고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 보고 ·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보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1. 개념 정의

강학상 ‘보고’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이루어진 바 없고, 범실무상 명칭은 보고라고 표현하나, 그 성격은 신고인 경우 또는 단순 자료제출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보고’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보고의 접수 및 거부, 법적 효과 발생 시기 등에 관한 다툼 및 이로 인한 권리구제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법학계 및 실무에서 ‘보고’ 자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고’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현행법 및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고’ 역시 사전적 의미에서의 ‘보고’와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상 보고는 일단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대내적(또는 행정내부적) 보고와 대외적(또는 외부적) 보고로 나눌 수 있다. 대내적 보고는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하고, 대외적 보고는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고는 의무이행 시점에 따라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로 나눌 수 있다. 사전보고는 “하급행정기관, 국민 또는 기업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하고, 사후보고는 “하급행정기관, 국민 또는 기업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한 후 (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적어도 대외적 보고의 경우) 보고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두보고의 경우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 행정법상 보고 중 ‘대내적 보고’를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보고”, 즉 대외적 보고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는 단체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와 더불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보고의무를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는 단체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²⁾라고 하여, 널리 순수한 보고뿐 아니라, 자료제출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기업 등 국민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보고의무 이행 뿐 아니라, 각종 자료·서류·보고서·계획서·평가서 제출의무 이행 역시 부담으로 느

1) 구두보고의 예로 『선박안전법』상 선박결함신고(법 제74조, 시행규칙 제95조), 『선원법』상 선박운항보고(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5조) 등을 들 수 있다.

2)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436쪽.

낄 수 있는바, 이 보고서는 순수한 신고·보고뿐 아니라, 신고·보고에 수반하여 또는 독자적으로 기업 등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각종 자료·서류·보고서·계획서·평가서 제출 등(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의 의무 부과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고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되, 전수조사시에는 자료제출 등을 보고와 별개로 보아 정리하고자 한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보고는 행정조사의 조사방법의 하나로서 이해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별 조항의 직접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구하거나 명하는 보고·자료제출 등 외에 당해 법률의 관리·감독이나 몇몇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고·자료제출 등을 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등은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보고의무·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에 대한 의무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률상 근거를 갖는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은 그 의무부과를 위한 법률 이외에 독자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학설이고 확립된 판례이다. 다시 말해, 법률유보는 의무부과와 의무강제 양쪽에 모두 해당된다.³⁾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21쪽.

그런데 적어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보고의무·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 경우에는 기업 등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고, 그 위반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비례원칙, 명확성원칙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⁴⁾

그러나 보고의무·자료제출 등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두어져 있거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보고받는 주체, 보고의무자, 보고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형식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보고받는 주체, 보고의무자, 보고내용 및 절차, 형식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어 의무이행을 위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관리·감독·법 시행의 효율 등을 이유로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게 포괄적으로 수권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고의무 등 부과의 목적은 적정하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⁵⁾ 보고의무 등 부과를 통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호), 보고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비권력적 보고의무 등의 부과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작용의 근거규정은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권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행정기관의 비권력적 조사는 조직법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625쪽.

5) 법제처, 앞의 책, 436쪽.

에 대한 벌칙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⁶⁾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동일 의무 위반에 대한 다른 입법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나,⁷⁾ 법령에 따라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의 상한이 과다한 경우도 있다.

제 2 절 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1. 개념 정의

강학상 신고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⁸⁾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⁹⁾ “행정청에 대하여 보통 문서로써 행하는 요식적·명시적 통지”,¹⁰⁾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¹¹⁾ 등이 그것이다.

신고의 통상적인 법적 효과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고대상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신고와 같이 사법상의 혼인의 효력이 창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¹²⁾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신고는 사실로서의 신고일 뿐이다.¹³⁾

6) 법제처, 앞의 책, 436쪽;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966쪽.

7) 국회법제실, 앞의 책, 966쪽.

8) 홍정선, 앞의 책 187쪽.

9) 천병태·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101쪽.

10)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002. 2, 26쪽.

11) 대판 1999. 12. 24, 98다57419·57426.

12)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470쪽.

13)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

그런데 실정법상 신고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그 유형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다르므로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요구되며, 수리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인정되거나 또는 신고의 효과로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의 현실은 행정규제의 완화책으로서 종래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도 제도의 실질은 변화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의 신고제는 형식은 신고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2. 신고의 종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① 의 의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전형적인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단순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

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2000. 12. 22, 993455;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낚골탐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시설들은 신고한 낚골탐을 실제로 설치·관리함에 있어 마련해야 하는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이 낚골탐 설치신고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낚골탐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이를 일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5. 2. 25, 2004두4031.

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예 : 테니스장업 신고)를 말한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고는 신고가 상대방(행정기관)에 제출되어 도달된 때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사인의 신고행위 그 자체만으로 금지가 해제된다),¹⁴⁾ 이는 자체완성적인 행위인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도 그 효과와 관련하여 법적 효과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신고(예 : 혼인신고)도 있고, 경찰상 금지의 해제원인으로서의 신고(예 : 각종 영업신고)도 있다. 또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의무적 신고(예 : 출생신고)와 임의적 신고(예 : 혼인신고)로 구분될 수 있다.¹⁵⁾

② 행정절차법상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형적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신고제도의 조문화는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에 그 입법의견이 제시되어 많은 논의가 제기된 결과 이루어졌다. 즉 당시 허가를 신고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구체적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신고의 수리를 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행정청의 구체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신고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하

14) 홍정선, 앞의 책, 329쪽.

15)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 박영사, 2005, 150쪽.

여 결국 허가 또는 인가 등과 동일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신고에 관한 논의가 필연적이었다.

그 결과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가 본래적 의미의 신고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신고의 의미를 왜곡하여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제도로 활용하는 것은 규제제도의 명목과 실질이 다르게 운용되는 경우로서 국민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행정과정에 대한 신뢰와 예견가능성을 도모하는 「행정절차법」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로 제한하여 행정절차법제정심의회위원회 의 초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초안을 관계부처의 의견조회에 회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었다.

- i) 법령에 신고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인·허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고의 경우에도 요건심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보완할 것이 요청된다는 의견,
- ii)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본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이를 신고불이행으로 보기보다는 사안별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
- iii) 신고의무자가 스스로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믿고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행정청의 실무부서 검토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인의 착오, 무지, 불가피한 사유 등 본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위와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원안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상당히 수정되어 현재의 조문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절차

법』 제40조 제1항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i)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iii)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청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의무지웠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청에 대하여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즉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제5항)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개별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인 신고에 해당한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수리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수리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의 수리를

16) 대판 1996. 7. 12. 95주11665; 대판 2000. 4. 11, 98두5682.

의미한다. 즉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만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밖의 수리는 다만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③ 법적 효과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예 :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의 발생 또는 경찰상 금지의 해제를 통한 기본권(영업의 자유)의 회복]를 가져온다. 신고에 의하여 법이 정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는 불필요하며, 설사 행정청이 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를 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 효과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심사·처리 등 별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¹⁸⁾ 자체완성적 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흠의 효과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별 행정법령의 해석이 문제된다.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그런데 행정법상 신고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이외에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변형적인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예 : 수산업법 제44조의 어업신고)를 말한다.¹⁹⁾ 즉 행정요건

17)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8, 230쪽.

18)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139쪽.

19)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

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수리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사인이 알려진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인식의 표시행위인 점에서 단순한 문서의 도달이나 접수와 다르다.²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자체완성적 신고와 다르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금지가 해제된다.²¹⁾

대체로 신고가 인·허가나 등록에서의 신청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²⁾ 판례는 수산업법 제44조의 어업신고,²³⁾ 구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²⁴⁾ 등을 이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한편 “등록제는 절차상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등록행위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인의 신청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신고의 의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양자 모

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수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0. 5. 26, 99다37382.

20)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29-230쪽.

21) 홍정선, 앞의 책, 329쪽.

22)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29쪽.

23) 대판 2000. 5. 26, 99다37382.

24) 대판 2007. 6. 1, 2005두17201.

두 희망·원망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등록행위라는 용어의 의미도 수리의 개념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등록을 받아 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행정청의 심사는 다만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형식적 심사에만 그치는 것이지 요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예 : 안전성심사나 공익성심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 여부는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²⁵⁾ 따라서 실정법상 등록제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별칭이라 할 것이다.”²⁶⁾라고 하여 등록제에서의 신청을 행정요건적 신고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법령상 또는 행정실무상 등록이라는 용어가 언제나 수리를 요하는 사인의 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수리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예 :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등재)하는 것을 등록이라 부르기도 한다

25)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은 정기간행물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정기간행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정기간행물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출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외형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결 1997. 8. 21, 93헌바51.

26)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 2005, 박영사, 151-152쪽.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⁷⁾

3) 양자의 구별

① 구별실익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그 법적 효과, 신고수리의 의미 및 수리거부에 대한 쟁송가능성 등에 있어 그 내용을 달리하는 바, 신고의 효과, 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의 의미, 신고수리의 의미, 신고수리 거부처분의 성질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② 구별기준

개별법령상 나타나고 있는 신고가 과연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개별법령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⁸⁾ 다만,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행위 내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은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²⁹⁾

일설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기준으로 “원칙상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

27)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등록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8) 홍정선, 앞의 책, 149쪽; 김명길, 앞의 논문, 474쪽.

29) 김명길, 앞의 논문, 474쪽.

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요건을 신고요건의 한 부분으로 한다고 하여도 입법자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할 수도 있는바, 양자의 구별은 신고요건의 성질이 아니라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³⁰⁾

③ 사 견

생각건대, 물론 신고제와 허가제가 가지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서 본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제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입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신고는 사인의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등록 또는 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³¹⁾

특히 행정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종래의 허가제를 대폭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없이 형식만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은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질적인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는 점에서도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실질적 허가와의 구별은 용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³²⁾

따라서 적어도 허가제의 실질을 가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³³⁾

30) 홍정선, 앞의 책, 150쪽.

31) 조성규,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2005. 1, 243쪽.

32) 조성규, 앞의 논문, 243쪽.

33) 조성규, 앞의 논문, 243쪽.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대다수 문헌은 신고를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누며, 판례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 2000. 5. 26, 99다37382 판결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존재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이고, 대법원 2002. 4. 12, 2001두9288 판결은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라는 사건 이름이 시사하듯 그와 같은 맥락에 선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대판 1993. 6. 8, 91누11544),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건축물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대판 1992. 3. 31, 91누4911),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신고(대판 2000. 5. 26, 99다37382)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³⁴⁾

이와는 달리 판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대판 1993. 7. 6, 93마635),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대판 1999. 4. 27, 97누6780) 등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고 있다.

(2) (예방적)금지해제적 신고와 정보제공적(사실파악형 신고) 신고

1) (예방적)금지해제적 신고의 의의

(예방적)금지해제적 신고(또는 신고유보부 금지, 규제적 신고)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신고로 그 금지가 해제되는 신고”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당해 행위는 법질서에 반하

34) 대판 1995. 2. 24, 94누9146; 대판 1993. 6. 8, 91누11544.

는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통상 그에 대하여 형벌이 가해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발령된다. 다만, 입법정책상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³⁵⁾

2)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의 의의

이에 반하여 행정청에게 단순히 행정에 필요한 정보(사실)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신고, 즉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해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하여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파악형 신고 또는 정보제공적 신고와 같이 신고의무가 없는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³⁶⁾ 정보제공적 신고의 예로 『독일 영업법』 제14조의 영업개시신고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해당 행정청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신고의 목적은 소관 행정청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구역 내의 영업의 수와 종류에 관한 효과적인 감시를 수행하기 위함이다.³⁷⁾ 그것은 가능한 예방적 금지를 해제시키는 동인·근거가 아니라, 영업개시 이후에 지속적인 감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영업수행을 행정청에게 단지 알리는 데 기여한다.³⁸⁾ 단순한 정보제공적 기능을 갖기에 여기서의 신고의무는 예방적·형식적 금지와는 결합되어 있지 않고, 신고된 활동의 형식적 허용성은 신고의무의 이행에 좌우되지 않

35)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동아법학 제3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62쪽.

36) 김명길, 앞의 논문, 473쪽.

37) Marchs, in: Landmann/Rohmer, Gewerbeordnung-Kommentar, 1994, § 14 Rn. 6.

38) 따라서 영업신고는 영업허가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 Marchs, in: Landmann/Rohmer, Gewerbeordnung-Kommentar, 1994, § 14 Rn. 8; Miche/Kienzle, Das Gaststättengesetz, 12. Aufl. 1995, § 4 Rn. 9.

는다.³⁹⁾ 따라서 이들 신고의무의 위반만으로는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는다.⁴⁰⁾

3) 양자의 차이점

(예방적)금지해제적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의 차이점은 이러한 신고의무불이행의 효과에서 뿐 아니라, 그것의 수리거부에서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예방적 금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수리거부는 금지하명에 해당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알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신고수리거부는 금지하명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 다만, 직무활동의 실행과 그것의 거부를 구별하여 판단을 내리는 입장을 취하면, 후자에서의 신고수리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있다.⁴¹⁾

(예방적)금지해제적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i) 법문상 대상행위의 금지가 전제되면서 사전통제(심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ii) 개시통제의 수단으로 허가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iii) 신고의무불이행의 제재에 대해 대상행위 자체(즉 금지)에 대한 것까지 담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법」 제16조의 착공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영업소개설신고 등은 순전히 정보제공적 의미만을 지닌다. 반면에 「건축법」 제27조의 철거신고의 경우 철거의 성격은 법문상으로 철거 전에 행해야 하므로, 예방적 금지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39) Marchs, in: Landmann/Rohmer, Gewerbeordnung-Kommentar, 1994, § 14 Rn. 8.

40) Fritz, Art. Anzeigepflich, in: Kimminich/v. Kersner/Storm, Handwörterbuch des Umweltrechts, 2. Aufl. 1994, S. 138 f.

41)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134쪽.

42) 김중권, 앞의 책, 134-135쪽.

3. 구별개념

(1) 통 보

통보는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의 행정협조 차원에서 행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신고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정보제공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통 지

통지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즉 특정 사실의 통지행위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로 볼 수 있다(고지행위, 통보행위).

이와는 달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로서의 통지행위는 그 자체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다. 그 예로는 사실에 관한 관념의 통지(토지수용에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특허출원 공고, 귀화고시), 행위자의 의사의 통지(대집행위 계고, 납세의 독촉)를 들 수 있다.

(3) 신 청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나, 순수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나 신청 모두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의 통지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신청은 승낙여부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고와는 차이가 있다.⁴³⁾

행정요건적 행위의 신청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어떤 행정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특히 허가·특허·인가 등은 어느 것이나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즉 신청은 처분절차의 개시요건이다.⁴⁴⁾

4. 유사 제도와와의 구별

(1) 신고제와 등록제의 구별

등록제는 원래의 의미로는 공적 장부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따라서 등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공증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규제 완화작업의 결과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실제 실정법상으로는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 무등록자에 대한 처벌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예 : 영업등록제도)가 있다. 이 경우 법률이 행정청에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을 접수·심사·결정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을 갖게 된다.⁴⁵⁾ 이 점에서 등록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보고자 하는 입장에 나름의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요구로 『석유사업법』 등에서 종전에 허가로 규정한 것을 ‘등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으나, 규제완화의 핵심사항인 허용요건의 완화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

43) 宇賀克也, 行政手續法の解説, 學陽書房, 2006, 58頁.

44) 김세규, 앞의 논문, 54-55쪽.

45) 김철용, 앞의 책, 198-199쪽.

가제를 행정규제의 대표로 인식한 여론의 추이에 쫓아서 단지 용어만을 변경하는 데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등록제’란 본질적으로 ‘허가제’이다.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 허가제의 본질이고, 그에 따라 허가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축소가 인정되는 사정 - 문헌상으로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기속행위로 보기까지 한다 - 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용어라는 외양적 변화에만 치중한 느낌이 든다. 신고가 아닌 그것의 수리에 무게 중심이 주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신고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신고제의 범주에 속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중심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문헌상으로 이른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서 수리가 인정되고 있는 점이 신고제 및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바른 이해를 저해한다.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행위의 처분성 인정과 그런 신고 자체의 인정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자체의 인정이유는 뒤로 하더라도, ‘수리’라는 독립적 행정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리의 효과(예 :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청의 처리의무의 발생)는 수리 그 자체가 아닌 신고나 신청으로부터 나온다.

(2) 신고제와 허가제의 구별

허가 또는 통제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영업허가·건축허가 등이 그 예이다.⁴⁶⁾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예를 들면, 민성년자의 음주·흡연감지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다.

46) 다만,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이외에 면허·인허·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한편, 법령상 허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학문상의 특허·인가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23쪽.

한편 허가 또는 통제허가는 예방적 금지(präventives Verbot)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억제적 금지(repressives Verbot)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예외적 승인’(Ausnahmebewilligung)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는 위험방지라고 하는 통제목적에 의해 잠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인 데 대하여, 예외적 승인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상호구별된다. 예컨대, 주거지역 내의 주택건축은 통제허가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은 예외적 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⁴⁷⁾

예외적 승인의 존재이유는 일반·추상적 법규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곤란함과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면서, 행정청에게 특별히 이형적인 사건에서 일반적 금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⁴⁸⁾

일반적으로 허가제에 있어서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인의 부작위의무가 허가라는 행정행위에 의해 해제되는 데 비하여, 신고제에 있어서는 신고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신고가 행정기관에 접수됨과 더불어 사인의 부작위의무가 해제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⁹⁾

신고제는 개별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르나, 행정절차법상으로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자기완결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신고의 접수·심사·결정(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47)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24쪽.

48) 김증권, 행정법상 억제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승인, 저스티스, 1998. 3, 138쪽.

49)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25쪽.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대법원 1995. 3. 14, 94누9962 판결.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심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자에 대하여 처벌을 과하거나, 의무반자에 대하여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행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률이 행정청에게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접수·심사·결정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 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법률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법적 효과)의 기능을 갖게 된다.⁵⁰⁾

(3)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다시 신고제로의 변천

연혁적으로 볼 때, 허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허가 여부의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고 신속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도가 법정의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도로 발전되고, 국민에게 이보다 더 부담을 덜 주는 제도로서 일정한 신고만 하면 특정 영업을 쉽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등록제도보다 완화된 형태의 신고제도가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그러나 현행법상 신고제도는 법적 성격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5.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허가와의 성질을 지니는가 여부

(1) 구별긍정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허가제에서의 허가와의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

50) 김철용, 앞의 책, 199쪽.

51) 김재규, 신고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검토, 법제처, 124-125쪽.

사만을 거치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도 거쳐야 한다⁵²⁾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⁵³⁾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⁵⁴⁾을 그 논거로 하여, 등록제와 허가제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한다.

(2) 구별부정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으로 허가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이는 쌍방적 행정행위에서의 허가과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신고의 수리와 등록 내지 허가는 구별실익이 없다고 한다. 주요 논거로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수리는 사인의 행위가 행정청의 특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허가제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⁵⁵⁾

6. 신고의 요건

신고의 요건은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⁵⁶⁾ 다만, 「행정절차

5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공장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대판 1999. 7. 23. 97누6261.

53) 홍정선, 앞의 책, 192쪽.

54) 헌재 1997. 8. 21. 93헌바51.

5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29쪽;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56)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식품점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점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법』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의무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 요건으로 i)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ii)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iii)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2항). 물론 신고인의 편익을 위해 신고의 내용은 사전에 주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의무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에 앞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제40조 제3항). 그리고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제40조 제4항).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⁵⁸⁾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9. 4. 23, 2008도6829.

5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192쪽.

58) 홍정선, 앞의 책, 193쪽.

7. 신고의 수리

(1) 의무적 수리

신고의 수리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서는 개념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서만 문제된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것은 판례의 (원칙적) 입장이기도 하다.⁵⁹⁾ 예외의 판례가 보이기도 한다.⁶⁰⁾ 부적법한 수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만약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다면, 그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수리)가 된다.⁶¹⁾

(2) 신고필증

행정실무상으로는 신고를 필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59) “토지거래신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 제21조의14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대판 1997. 8. 29, 96누6646.

60)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대판 1998. 9. 25, 98두7503. →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임

61) 홍정선, 앞의 책, 193쪽.

경우에 상이하다.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의 신고필증은 다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말하자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에서의 신고필증은 사인의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승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고, 신고의 효과를 발생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즉 그것은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⁶²⁾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주어지는 신고필증은 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지만, 그 서면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인 것이라는 점에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시 부여되는 신고필증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⁶³⁾

8.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행정절차법』은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62)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판 1985. 4. 23, 84도2953.

63) 홍정선, 앞의 책, 194쪽.

64) 홍정선, 앞의 책, 194쪽.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⁶⁵⁾ 판례는 주민등록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⁶⁶⁾

(2) 부적법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이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도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수리는 도달을 확인하는 사실상의 행위일 뿐이며, 신고가 도달되었다고 하여도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건 미비의 부적법한 신고를 하고 신고영업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영업은 무신고영업으로서 불법영업에 해당하게 된다.⁶⁷⁾ 이러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이

65) 홍정선, 앞의 책, 194쪽.

66)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판 2009. 1. 30, 2006다17850.

6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을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8. 4. 24, 97도3121.

대법원은 종래부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는데, 공법상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발생의 여부를 사인에게 의존시키는 판례의 논리구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인의 공법상 의무의 구체화는 공행정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따

아니라 영업장폐쇄조치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요건미비의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행위는 위법한 수리행위가 된다. 즉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수리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고,⁶⁹⁾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아니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수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신고업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으로서 불법(위법)영업에 해당하지만, 수리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신고업의 영업행위는 수리가 취소되기까지는 불법(위법)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리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신고인의 신고영업을 막을 수 있다.⁷⁰⁾

(3) 신고의무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신고의무위반이 사법적 효력의 부인을 의미하는가는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법조항이 단속규정인가, 효력규정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⁷¹⁾

라서 과세관청이 사인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한다. 홍정선, 앞의 책, 196쪽 각주 1 참조.

68) 홍정선, 앞의 책, 195쪽.

69)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6. 6. 2, 2006두644.

70) 홍정선, 앞의 책, 195-196쪽.

7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의7, 제21조의3 제7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 제21조의 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9. 수리의 거부(거부행위의 처분성)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에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바,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만약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에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접수의 거부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달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며, 사인의 신고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는 발생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⁷²⁾ 그러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특히 정보제공적 신고)라 하더라도 수리의 거부는 잠정적인 금지를 종국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금지하명이라고 보아 수리거부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⁷³⁾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88. 11. 22, 87다카2777.

72)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13.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제조업의 허가등에 관한 규칙(1997. 4. 23. 해양수산부령 제19호 수산물가공업 허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 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9. 12. 24, 98다57419,57426.

73)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VIII, 80-90쪽 참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
가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법한 거부처분을 항
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10. 신고업의 양도

(1) 위법의 승계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⁷⁴⁾

(2) 권리의 승계

신고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신고영업의
양도의 경우, 신고의 내용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양도인의 법

74)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
항에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3. 이용업에서 업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차 또는 4차 위반시(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
간 중 영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시)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하고, 그보다 위반횟수
가 적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게 되며, 일정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이용사(업주)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치이고,
아울러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
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
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
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1. 6. 29, 2001두1611.

적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⁷⁵⁾

(3) 지위승계신고에서의 신고의 법적 성격

관련법령에서 당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단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승계)]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문제된다. 이러한 신고는 양도대상이 된 영업을 법적 성질에 따라 신고의 성질이 판단되어야 한다. 즉 허가영업양도의 경우 그 신고는 허가(신청)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75)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대판 2003. 7. 11, 2001두6289;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이 준용됨으로써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의 영업을 양도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 2004. 10. 28, 2004다10213.

허가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자가 허가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⁶⁾

판례는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격을 ‘신규허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본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수리를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처분으로 보고 있다.⁷⁷⁾

11. 신고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모든 신고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찰목적상 인정된 신고(예 : 각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서는 i) 신고의무는 행정기관이 위험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공행정수행을 위한 정보(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바, 신고의무의 부과는 영업상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예방과 효과적인 경찰목적⁷⁸⁾을 위한 자료획득수단의 성질을 갖는다. ii) 경찰목적의 신고제도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보다는 자유제한의 강도가 약

76) 홍정선, 앞의 책, 189쪽.

77)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01. 2. 9, 2000도2050;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중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중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판 2003. 2. 14, 2001두7015.

78) 대판 2000. 4. 25, 99도5315 참조.

한 규제수단이다. iii) 그렇지만 신고제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사인에 대한 침해가 상대적 금지의 경우보다 경미하다고 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청이 임의로 사인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사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침해행위이므로, 사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⁷⁹⁾ 또한 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은 그 의무부과를 위한 법률 이외에 독자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학설이고 확립된 판례이다. 다시 말해, 법률유보는 의무부과와 의무강제 양쪽에 모두 해당된다.⁸⁰⁾ iv) 신고제도가 - 특히 경찰목적상 - 필요한 것이라 하여도 신고제가 무제한으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제의 도입에는 특히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⁸¹⁾

그러나 신고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두어져 있거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받는 주체,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및 절차, 형식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신고받는 주체,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및 절차, 형식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어 의무이행을 위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각종 신고·정보제공적 신고의무 등 부과 목적은 적정하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신고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형

79)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 2005, 박영사, 146쪽.

80) 박정훈, 앞의 책, 321쪽.

81) 헌재결 1990. 8. 27, 89헌가118.

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⁸²⁾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동일 의무 위반에 대한 다른 입법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나,⁸³⁾ 법령에 따라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의 상한이 과도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각종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있거나,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이행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가 많아 기업 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제 3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 제출의 의의

1. 행정조사 개관

(1) 의 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에 있어서의 정보나 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다. 행정주체가 여러 가지 결정을 행하기 전에 관련 정보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조사는 상대방의 신청서의 심사와 같은 수동적 형식으로 행해지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에 의한 현장검증·질문·검사 등과 같이

82) 법제처, 앞의 책, 436쪽; 국회법제실, 앞의 책, 966쪽.

83) 국회법제실, 앞의 책, 966쪽.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밖에 구체적인 행정결정과의 직접적인 관련 없이도 정책의 입안, 적정한 행정운영의 확보를 위해 널리 행정조사활동이 행해지고 있다.⁸⁴⁾

그런데 행정조사는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위가 아니고 그 준비단계인 사실행위라는 점, 행정조사의 방법·대상 등이 다종다양함으로 인해 그것을 통일적인 법적 도구개념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다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행정조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외에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 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재조명이 이루어져 왔고,⁸⁵⁾ 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18일부터 시행중이다.

(2) 법적 근거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전부유보설’에 입각하지 않는 한, 행정조사에 언제나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⁶⁾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

84)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429쪽.

8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429쪽.

86)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432쪽.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5조),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특정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협조가 없는 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특정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조사라도 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수반하는 행정조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⁸⁷⁾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78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약사법」 제69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등 많은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3)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제4조).

- i)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ii)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iii)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iv)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v)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626쪽.

vi)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한 계

행정조사도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4조), 조사대상의 선정(제8조), 중복조사의 제한(제15조) 등이 법령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호구조사, 위생검사, 제품검사 등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증표의 휴대와 제시라는 방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법도 그와 같은 경향에 입각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17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76조 제3항, 지방세법 제64조 제2항 등).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같은 법 제10조)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5)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법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관리감독, 위반확인, 사실 확인, 실태조사, 심사 등을 이유로 각종 행정조사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법령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조사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등 일반국민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개별법에 규정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⁸⁸⁾ 조사의 상대방, 조사의 대상·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 국민에게 적지 아니한 부담을 주 있다.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은 ‘보고명령과 자료제출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88) 국회법제실, 앞의 책, 965쪽 참조.

있지 않다는 점,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제4조 제4항)라고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에서 행정조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별법에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이상에서 보고·신고의 의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i)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ii)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iii)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iv)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소관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v)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관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신고·자료제출(이하 “보고·신고등”이라 한다)의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법률에 근거 없이 보고·신고등 의무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무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여전히 기존의 인·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보고·신고제도,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있거나, 보고·신고등 의무 이행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 보고·신고등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기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법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등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 행정의 정보수집,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자료제출·보고의무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보고·신고·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 총괄표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	3	1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9366호	2009.7.31	
2	고등교육법	2	3	1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9936호	2010.4.23	
3	과학관육성법	·	2	·	·	2	교육과학 기술부	제8976호	2008.3.21	
4	과학교육진흥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5	과학기술기본법	7	7	·	·	14	교육과학 기술부	제9992호	2010.2.4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16	·	·	18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4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9705호	2009.5.22	
8	광주과학기술원법	2	3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9937호	2010.2.26	
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5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8890호	2008.3.14	
10	교육공무원법	4	2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10258호	2010.4.15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643호	2010.1.1	
12	교육기본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915호	2008.6.22	해당 없음
1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1	10	1	·	12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이공계지원특별법									
1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1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9호	2010.3.17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401호	2009.1.30	
1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	6	·	·	7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1호	2010.3.17	
1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2	4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10080호	2010.3.17	
19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0	기술사법	2	·	1	1	4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1	·	2	3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4	·	3	7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3	뇌연구촉진법	2	1	·	2	5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77호	2010.3.17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	·	·	3	5	교육과학 기술부	제9108호	2008.6.13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2	·	·	2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26	대한민국학술원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2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2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4	·	1	7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3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3	4	·	·	7	교육과학기술부	제8863호	2008.2.29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	13	·	·	16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3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입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1	·	·	1	교육과학기술부	제7534호	2005.5.31	
3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5	·	1	9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3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기술부	제8674호	2007.12.14	해당 없음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15	4	·	20	교육과학기술부	제9908호	2009.12.31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6	사립학교법	8	7	1	·	16	교육과학 기술부	제10258호	2010.4.15	
3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9401호	2009.1.30	해당 없음
38	생명공학육성법	·	1	·	1	2	교육과학 기술부	제9932호	2010.1.18	
3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	·	2	3	교육과학 기술부	제9932호	2010.1.18	
4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	4	·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69호	2010.3.17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	6	·	·	8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72호	2010.3.17	
4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 외자채용에 관한특별법	·	1	·	·	1	교육과학 기술부	제6435호	2001.3.28	
4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3	1	·	5	9	교육과학	제10076호	2010.3.17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부			
4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5	2	1	·	8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88호	2010.3.17	
45	영재교육진흥법	·	6	·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46	우주개발진흥법	1	5	1	·	7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87호	2010.3.17	
47	우주손해배상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48	원자력법	6	1	12	·	19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86호	2008.2.29	
49	원자력손해배상법	2	2	·	·	4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89호	2010.3.17	
50	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1	·	·	·	1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5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6	2	2	·	10	교육과학	제10074호	2010.3.17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방사능 방재 대책법						기술부			
5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	1	·	·	2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53	유아교육법	1	4	·	·	5	교육과학 기술부	제10176호	2010.3.24	
5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7	·	·	7	교육과학 기술부	제9629호	2009.4.22	
55	자격기본법	2	3	1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9190호	2008.12.26	
5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5	·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5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1	·	·	10	교육과학 기술부	제8913호	2008.3.21	
5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	1	1	·	5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46호	2010.2.26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	·	·	교육과학	제9923호	2010.1.1	해당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기술부			없음
60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4	·	·	4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61	초·중등교육법	5	6	·	·	11	교육과학 기술부	제8917호	2008.3.21	
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5	7	·	12	교육과학 기술부	제9935호	2010.1.22	
63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6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3	·	·	3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65	평생교육법	2	9	6	·	17	교육과학 기술부	제9641호	2009.5.8	
6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1	·	·	1	교육과학 기술부	제9758호	2009.6.9	
67	표준시에 관한 법률	·	·	·	·	·	교육과학	제3919호	1986.12.31	해당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기술부			없음
68	학교급식법	1	·	·	·	1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70호	2010.3.17	
69	학교도서관진흥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70	학교보건법	1	2	·	·	3	교육과학 기술부	제9932호	2010.1.18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	1	3	·	5	교육과학 기술부	제9763호	2009.6.9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6	·	·	8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7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	1	·	·	1	교육과학 기술부	제9743호	2009.5.28	
7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	·	·	·	교육과학 기술부	제8886호	2008.3.14	해당 없음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6	·	·	·	6	교육과학	제9932호	2010.1.18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관한 법률						기술부			
76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2	·	1	·	3	교육과학 기술부	제9518호	2009.3.25	
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1	3	·	6	교육과학 기술부	제8989호	2008.3.28	
7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	3	1	·	5	교육과학 기술부	제8916호	2008.3.21	
79	한국고전번역원법	·	3	·	·	3	교육과학 기술부	제8852호	2008.2.29	
80	한국과학기술원법	2	2	·	·	4	교육과학 기술부	제9413호	2009.2.6	
8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4	·	·	4	교육과학 기술부	제9414호	2009.2.6	
8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	1	·	·	2	교육과학 기술부	제10081호	2010.3.17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8호	2010.3.17	
8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3	1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85	한국연구재단법	1	4	·	·	5	교육과학기술부	제9518호	2009.3.25	
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	2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9640호	2009.5.8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	5	·	·	8	교육과학기술부	제9934호	2010.1.22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3	-	-	3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5호	2010.3.17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	3	-	-	4	교육과학기술부	제10073호	2010.3.17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3	3	-	-	6	교육과학기술부	제8852호	2008.2.29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 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 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계	134	260	48	21	463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에서 조사된 것은 일반적 보고 2건, 자료제출 4건 등 법의 규정형식에 따라 분석된 보고·신고는 6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수적 자료제출을 제외할 경우에는 보고 2건, 자료제출 1건 등 3건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원을 위한 상황보고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지원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법인과 기관에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보고는 전형적인 사전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의 입법형식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폐지 또는 해산사유 발생보고

법률 제18조제3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된 외국학교법인에 폐지 또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발생보고는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정법상의 보고에 해당된다. 그 보고기한을 7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후 설립승인의 취소 등의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보고는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위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이는 곧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고위반

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법률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에 관한 행위는 승인이라는 본래의 행정행위를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류제출은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9조제2항, 시행령 제13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자료제출의 내용은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전형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요건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즉, 광범위하고 중복적인 자료제출의 요구는 업무의 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그 요건을 ‘필요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보다는 첫 번째 자료제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연도의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변경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 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제3항은 법률 제11조에 따라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이 자료제출은 지정이라는 본래의 행정행위의 완성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구별된다.

6) 폐쇄승인에 필요한 서류신청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신청이라는 행정행위에 부수한 자료의 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등교육법

이 법률은 보고 2건, 신고 1건, 자료제출 3건 등 총 6건의 보고·신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있어서 보고·신고는 전형적인 입법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과도한 행정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다수라는 점에서 재량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학교규칙 보고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4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전형적인 사후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보고기간을 14일하여 행위발생 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고의무에 대하여는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제60조에 포괄적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가능하지만, 시정·변경명령은 매우 포괄적인 행정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자치권이 인정되는 교육분야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별로 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행령 제53의2는 법률 제40조에 따라 시행되는 위탁교육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는 사전(계획보고)과 사후(결과보고)보고가 통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위탁에 대한 관리차원의 보고에 해당한다. 다만, 보고기간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내로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고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귀국한 날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신고는 전형적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4) 폐쇄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법률 제62조, 시행령 제72조는 장관이 학교설립자에게 재학생과 학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행정제재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이다. 그 자료제출의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였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5)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5조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전형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요건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절차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교육부과학기술부장관이 정책수립과 기관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통계정보자료를 위한 요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두어서 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요청규정은 보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요건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과학관육성법

이 법은 서류제출에 관하여 총 2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등록과 통보에 부수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보고적 성격을 가지는 자료제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 변경등록 서류제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3조는 과학관 등록 후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등록변경의 부수적 자료제출로 본질적 의미의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폐관통보 서류제출

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는 과학관 폐관통보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관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폐관통보에 부수적인 행위로서 본질적 의미의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과학교육진흥법

해당 보고·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과학기술기본법

이 법률에서는 보고 7건, 자료제출 7건이 보고·신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나타난 보고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주로

행정내부적 관계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규율하거나, 다른 행정행위의 수행을 위한 부수적 자료제출과 신청행위를 자료제출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보고와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2건 정도로 파악된다.

1) 시행계획수립지침의 보고

법률 제7조제4항·제8조, 시행령 제5조·제6조는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장관의 보고의무와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2) 평가결과 보고

법률 제12조제7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3) 예측결과 보고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22조제4항·6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과학기술예측의 결과의 보고·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4) 영향평가 결과보고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기획평가원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영향평가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이 보고는 조사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고와는 다른 평가에 부수된 행위유형으로 볼 수 있다.

5) 결과보고의 보고와 통지

시행령 제23조제5항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것은 사실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보고와는 다른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6) 영향평가 결과보고

시행령 제23조제7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은 사실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보고와는 다른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7) 사업집행실적보고

시행령 제44조제4항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 등이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율하는 규정이다. 결과에 대한 사후보고로서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두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다.

8) 출연금 또는 보조금 신청서류의 제출

시행령 제44조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해 사업계획서,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예산수령을 위한 보조적 자료제출행위로서 전형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시행령 제44조제5항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매사업연도

의 세입·세출 결산을 제출하는 것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제출은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10)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류제출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지정행위에 부수하는 자료제출로 본래의미의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기획평가원 정부출연금 교부신청서류제출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기획평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부출연금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것은 출연금 교부에 부수하는 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된다.

12) 지원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시행령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급을 신청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지원금 교부를 위한 보조적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내부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행정행위로서의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시행계획서 등의 제출

시행령 제20조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협약과제 목록,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연구회의 이사장이 위원회와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평가에 부수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제출은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부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14)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시행령 제40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게 과학기술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통계와 정보제공을 위한 전형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므로 자료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맞게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연구기관과 관련된 보고 2건과 자료제출 17건 등 총 19건의 보고·신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 2건은 감독관청의 장이 국회에, 연구회가 감독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되며, 자료제출은 계획의 승인을 위한 자료제출과 내부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로 이루어져 있다.

1) 연구기관 해산보고

법률 제17조제4항은 감독관청의 장이 국회에 연구기관해산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러한 보고는 비록 행정부처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유형의 형태는 전형적인 기관간의 보고형태를 취하는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2)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9조는 연구회가 감독관청의 장에게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

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이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3) 결산서류제출

법률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2조는 연구기관이 연구회에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고 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것으로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관간의 내부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산승인에 부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평가결과 제출

법률 제28조제2항과 시행령 제21조는 연구회가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관간의 내부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산승인에 부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영목표 승인을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는 원장에게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전단계 행위로서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의견서의 제출

법률 제13조와 시행령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관청의 장에게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서의 제출은 의무적 자료제출이 아니라 임의적

규정이며, 행정내부적인 관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라는 점에서 보고적 성격의 일반적인 자료제출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7) 예산요구서와 계획서의 제출

법률 제13조제3항과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연구기관이 소속연구회에 매년 5월 31일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연구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8) 예산요구서와 계획서의 제출

법률 제13조제5항과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연구회는 감독관청의 장에게 소관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매년 6월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9)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법률 제13조제6항은 연구기관이 소속연구회에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0) 변경예산 및 변경사업계획의 제출

법률 제13조제7항은 연구기관이 소속연구회에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변경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 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1) 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

법률 제13조제8항은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과 변경된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 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2) 결산서의 제출

법률 제15조제1항은 연구기관이 연구회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3) 결산서 제출

법률 제15조제3항과 시행령 제12조는 연구회가 감독관청의 장에게 승인된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매년 3월 3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4) 결산서 제출

법률 제15조제4항과 시행령 제12조는 감독관청의 장이 국회에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5) 예산요구서의 제출

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18조는 연구회가 감독관청의 장에게 사업연도마다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로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승인을 위한 부수된 자료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6) 평가보고서의 제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제21조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행정내부적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17) 평가결과의 제출

법률 제28조제3항은 감독관청의 장이 국회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행정내부적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18) 평가결과의 제출

법률 제29조제4항은 감독관청의 장이 국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행정내부적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이 법률은 자료제출 4건의 보고·신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서의 제출과 관련된 서류제출은 신청에 부수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서류제출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서류제출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행정청에 일방적인 행정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더불어 자료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치를 입법화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형식이 될 것이다.

1) 신청서의 제출

법률 제6조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청서의 제출은 회원 자격부여를 위한 행위에 부수된 서류제출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서류제출과 구분된다.

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제출

법률 제16조의5와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공제회에 사용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경우 대상기관·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제출은 실적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가장 전형적인 보고적 성격

의 서류제출에 해당하는 바, 관련 규정의 입법형식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제회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벌칙규정이 없으며, 법률 제24조에 포괄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행위유형별로 행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과학기술 발전장려금의 운영실적 제출

법률 제16조의6과 시행령 제8조제2항은 공제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이 경우 과학기술 발전장려금 적립 및 재투자 현황을 포함한다), 과학기술 발전장려금 지급사항(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 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을 포함한다) 등 과학기술 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류제출은 실적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가장 전형적인 보고적 성격의 서류제출에 해당하는 바, 관련 규정의 입법형식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제회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벌칙규정이 없으며, 법률 제24조에 포괄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행위유형별로 행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산 관련 자료제출

법률 제19조제2항은 공제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류제출은 공제회 내부에서 승인된 결과 통보해주는 것으로 결과에 대

한 사후보고적 성격의 서류제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제회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벌칙규정이 없으며, 법률 제24조에 포괄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행위유형별로 행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8) 광주과학기술원법

이 법률은 2건의 보고와 3건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건의 보고는 기관내부의 결정사항을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 통보에 기초하여 감독기관을 관리·감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무부과형 보고이지만, 보고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료제출의 경우 1건은 승인에 부수된 자료제출이며, 2건은 결과통지형식의 자료제출이라는 점에서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해당되므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학위과정 등 보고

법률 제13조제2항은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이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사항은 기관내부의 결정사항을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성격의 보고로서 전형적인 의무부과형 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해당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학사내용 등 보고

법률 제17조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사항은 기관내부의 결정사항을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성격의 보고로서 전형적인 의무부과형 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해당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

법률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행위유형이라는 점에서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구별된다.

4)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법률 제11조제2항은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사업계획과 예산심의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제출로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제출

법률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연구개발 후 활

용계획서, 기타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포함한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관리·감독이라는 행정조사적 성격과 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가지는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 법률은 5건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5건의 자료제출은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이 아니라 소청심사라는 심사절차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거나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 소청심사청구서와 부분 제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2조는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인의 소속 학교명 또는 전 소속 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분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청심사청구에 부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2) 소청심사청구의 위임장 또는 지정서 제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4조제2항은 교원이 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청심사청구에 부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3)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시행령 제5조는 피청구인이 심사위원회에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청심사청구에 부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4)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항은 심사위원회가 관계기관에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와 관계기관간의 기관내부적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5) 재심 자료제출의 요구

시행령 제22조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요구서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답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심사청구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

서 일반적인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차이가 있다.

(10) 교육공무원법

이 법률은 보고 4건, 자료제출 2건 등 총 6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인사규정과 관련된 보고 3건은 기관내부적 정보제공을 위한 보고이며, 사직서제출은 본래적 의미의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수상황보고 1건과 교원임용 계획제출 및 실적제출 1건만이 해당된다.

1) 교원임용 계획 제출 및 실적 제출

법률 제11조의4제2항과 시행령 6조의2는 대학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임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과 실적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2회 나누어 제출하도록 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1회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연수상황보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은 특별연수자에게 연수기간 중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권

한을 가지므로 연수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조사의 한 방법으로서의 보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연수자의 사직서 제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자료제출은 사직이라는 행위에 부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료제출과는 다르다.

4) 평정결과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4조는 확인자에게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정보제공에 관한 보고이지만 기관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이 평가결과보고에 관한 규정은 교감평정(제25조)과 연수성적평정(제38조) 결과보고에도 준용된다.

5) 결과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9제1항은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정보제공에 관한 보고이지만 기관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6) 회의록 보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정보제공에 관한 보고이지만 기관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11) 원자력법

이 법률은 보고 6건, 자료제출 1건, 신고 12건의 보고·신고관련 의 무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는 행정조치이후의 보고 3건과 결과보고 3건으로 되어 있다. 즉, 사후보고를 중심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출은 보고·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며, 신고는 원자력의 특성상 규제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1) 개발사업 추진보고

법률 제9조의2제6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 보고에 해당한다.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보고

법 제20조의8제3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 또는 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 또는 면제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력제고,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원자력분야 기초연구를 위한 재투자,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고조치 등의 보고

법 제89조제2항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또는 포

장 중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법률 제98조제1항, 시행령 제301조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지진·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법률 제98조제1항, 시행령 제301조제2항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8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보고·검사 등

법률 제103조제1항, 시행령 제199조,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관을 명할 수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

법률 제103조제1항, 시행령 제199조, 시행규칙 제125조은 발전용 원자로, 열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표준설계인가 변경신고

법률 제104조의1제1항, 시행규칙 제133조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계(표준설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계량관리규정 변경신고

법률 제12조의2제1항은 허가를 받은 자(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변경신고

법률 제15조의2제1항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등

법률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27조는 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시설검사

시행령 제128조제3항은 가공사업자에게 시설검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사용 전 검사

시행령 제149조제3항은 사용 후 핵연료처리사업자에게 사용 후 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변경신고

법 제55조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사업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법률 제55조의2, 시행규칙 제35조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법률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179조, 180조, 시행규칙 제52조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7) 업무대행자의 등록의 변경신고

법률 제65조의2제2항, 시행령 제196조제3항은 등록한 자(업무대행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운반신고

법률 제86조제1항은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 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운반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86조 제2항은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 법률은 자료제출 5건과 신고 7건으로 총 12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자료제출은 주로 조사의 필요에 따른 채무자와 금융당국의 제출에 관한 사항이며, 신고는 채무자의 사실신고에 관한 사항과 계획신고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의 신고의무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해외이주신고

법률 제20조제1항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학 및 원리금 상환계획 신고

법 제21조제1항은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의무상환액 신고

법률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0조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는 같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5) 의무상환액 신고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6) 의무상환액 신고

법률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은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7)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3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대출신청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수정신고

시행령 제27조는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기한 후 신고

시행령 제28조는 신고기한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를 위한 자료제출

법 제38조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평생교육법

이 법률은 보고 2건, 자료제출 9건 및 신고 6건 등 총 17건의 신고·보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 2건은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사후보고의 정형적 요소를 갖춘 행위유형이다. 다만, 신고는 본래의 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본래의 의미의 보고적 성격을 가지는 신고와는 차이가 있다. 자료제출도 본래의 행위에 따르는 자료제출로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시정명령 이행보고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관리감독에 따라 행정조치의 추후진행상황의 점검을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보고에 해당한다.

2)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법률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24조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으로 통계적 목적과 관리감독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3)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법률 제32조제4항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4) 평생교육 실시신고

법률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49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시설폐쇄신고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시설설치신고

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64조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7) 시설설치신고

법률 제37조3항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8) 시설설치신고

법률 제38조제3항, 시행령 제67조는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평가결과 제출

시행령 제14조의2는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1항 학습과정의 명칭, 교육시설 및 설비, 교육목표,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 학습자 수, 교원·강사, 교재 및 교수방법, 학습자 관리 방안, 그 밖에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한 상세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발급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재발급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지정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대표자의 성명·주소, 개설예정일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등록서류제출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지정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 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

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개설예정일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 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폐쇄인가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29조제1항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지정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 수·정원·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개설예정일의 사항을 기재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학력인정 신청서류제출

시행령 제74조제1항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국토해양부	제9629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	·	1	국토해양부	제9629호	2010.1.1	
3	개항질서법	·	·	6	1	7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4	건널목개량촉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976호	2008.3.21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	건설기계관리법	1	·	15	1	17	국토해양부	제9850호	2010.6.30	
6	건설기술관리법	·	·	6	·	6	국토해양부	제9848호	2009.12.29	
7	건설산업기본법	·	·	6	1	7	국토해양부	제8971호	2008.3.21	
8	건축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6.22	해당 사항 없음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2	·	2	국토해양부	제9857호	2009.12.29	
10	건축법	3	·	16	1	2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11	건축사법	·	1	8	1	10	국토해양부	제9187호	2009.3.27	
12	경관법	·	·	·	1	1	국토해양부	제8974호	2008.3.21	
13	고속국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976호	2008.3.21	해당 사항 없음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4	골재채취법	2	·	7	1	10	국토해양부	제9636호	2009.10.23	
1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438호	2009.8.7	해당 사항 없음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	1	1	5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1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439호	2009.2.6	해당 사항 없음
18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⁸⁹⁾	·	·	3	2	5	국토해양부	제10272호	2010.10.16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1	·	1	국토해양부	제9595호	2009.4.1	

89)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15	1	16	국토해양부	제9596호	2009.7.2	
2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907호	2009.12.31	해당 사항 없음
22	교통안전공단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388호	2009.1.30	해당 사항 없음
23	교통안전법	·	6	4	2	12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	·	1	2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2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705호	2009.8.23	해당 사항 없음
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	·	1	2	5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7	국제선박등록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441호	2009.8.7	해당 사항 없음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	·	·	1	4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29	국토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2	1	3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31	케도운송법	3	·	10	·	13	국토해양부	제9636호	2009.10.23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	1	1	1	4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3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256호	2008.12.26	제외 (외통부)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6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3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1	1	국토해양부	제9869호	2009.12.29	
3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	·	2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37	도로법	·	1	4	·	5	국토해양부	제9730호	2009.5.27	
38	도선법	·	·	4	1	5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	1	2	5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40	도시개발법	·	·	1	1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3	·	3	국토해양부	제9860호	2009.12.29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	·	1	·	2	국토해양부	제9775호	2009.12.10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0	국토해양부	제9386호	2010.1.31	해당 사항 없음
44	도시철도법	.	.	4	1	5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4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0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4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	1	.	1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4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3	.	3	국토해양부	제9778호	2009.12.10	
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1	.	1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	5	1	7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51	물류정책기본법	·	·	6	3	9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5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1	1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5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64호	2009.12.29	해당 사항 없음
5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1	8	1	10	국토해양부	제9055호	2008.3.28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	4	3	9	국토해양부	제9340호	2010.1.1	
56	부동산투자회사법	1	1	·	2	4	국토해양부	제9599호	2009.4.1	
57	사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8976호	2008.3.21	해당 사항 없음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106호	2008.9.6	해당 사항 없음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1	1	1	4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60	선박등기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70호	2009.12.29	해당 사항 없음
61	선박법	1	·	6	·	7	국토해양부	제9870호	2009.12.29	
62	선박안전법	·	1	1	1	3	국토해양부	제9871호	2009.12.29	
63	선박직원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74호	2009.12.29	해당 사항 없음
64	선박투자회사법	2	1	·	2	5	국토해양부	제9707호	2009.5.22	
65	선원법	2	·	3	1	6	국토해양부	제9851호	2009.12.29	
6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3	1	1	·	5	국토해양부	제9852호	2009.12.29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해당 사항 없음
68	수도권정비계획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29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6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4	1	9	국토해양부	제9849호	2009.12.29	
70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1	·	1	·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71	신항만건설촉진법	·	·	1	·	1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7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2	23	2	28	국토해양부	제9733호	2009.11.28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4	연안관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75	외국인토지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186호	2009.6.27	제외
7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77	유료도로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853호	2009.12.29	해당 사항 없음
7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	·	1	1	4	국토해양부	제9740호	2009.11.28	
7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8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546호	2009.3.25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1	임대주택법	·	·	6	·	6	국토해양부	제9863호	2009.12.29	
82	자동차관리법	4	·	7	1	12	국토해양부	제9867호	2010.2.7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2	·	·	3	국토해양부	제9450호	2010.2.7	
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542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3	·	·	3	국토해양부	제9601호	2009.4.1	
86	주차장법	·	3	5	·	8	국토해양부	제9341호	2009.1.7	
87	주택법	5	2	11	2	2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8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1	·	·	·	1	국토해양부	제9777호	2009.12.10	
8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1	1	2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90	지하수법	3	1	13	2	19	국토해양부	제9717호	2009.11.28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1	철도건설법	·	·	·	1	1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92	철도사업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08호	2009.4.1	해당 사항 없음
9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2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94	철도안전법	·	·	5	·	5	국토해양부	제9610호	2009.4.1	
9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4	13	1	18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96	택지개발촉진법	1	1	1	1	4	국토해양부	제9865호	2010.6.30	
9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977호	2010.1.27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33호	2009.10.23	해당 사항 없음
99	하천법	·	1	3	·	4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10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543호	2009.6.26	해당 사항 없음
101	한국공항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해당 사항 없음
102	한국도로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634호	2009.7.23	해당 사항 없음
103	한국수자원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04	한국철도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905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10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391호	2009.1.30	해당 사항 없음
10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10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06호	2009.10.1	해당 사항 없음
108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109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453호	2009.2.6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10	한국해운조합법	·	·	·	·	·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1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781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112	항공법	5	·	27	·	32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11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	·	·	·	1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1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80호	2009.9.10	해당 사항 없음
115	항로표지법	·	·	13	1	14	국토해양부	제9855호	2009.12.29	
116	항만공사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117	항만법	·	·	8	1	9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18	항만운송사업법	·	·	6	·	6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11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35호	2009.5.27	해당 사항 없음
120	해상교통안전법	2	·	6	1	9	국토해양부	제9731호	2009.5.27	
121	해양과학조사법	1	·	·	·	1	국토해양부	제8852호	2008.2.29	
1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	·	0	국토해양부	제9854호	2009.12.29	해당 사항 없음
1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	·	2	국토해양부	제9454호	2009.8.7	
124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17호	2009.11.28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2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3	11	1	17	국토해양부	제9758호	2009.12.10	
126	해양환경관리법	2	2	8	2	14	국토해양부	제9872호	2009.12.29	
127	해외건설촉진법	2	·	2	·	4	국토해양부	제9856호	2009.12.29	
128	해운법	·	·	15	1	16	국토해양부	제9773호	2009.12.10	
1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14	2	16	국토해양부	제8980호	2008.7.14	
13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	·	·	0	국토해양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계	70	46	369	63	548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⁹⁰⁾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고 1건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두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금지 및 예외적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허가는 사

90) 국토해양부 소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투자회사법』, 『선원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임대주택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택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로표지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보고·신고제도 현황은 별책 부록 참조.

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Ausnahmegewilligung)에 해당한다.⁹¹⁾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신고의 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허가 취소,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법 제30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Zwangsgeld)이란, 비대체적인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 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을 말한다.⁹²⁾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형벌)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한 속죄를 위한 처분이 아니다. 강제금

9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92)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483쪽; 홍정선, 앞의 책, 609쪽. 이행강제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헌재결 2004. 2. 26, 2001헌바 80등, 2002헌바26 (병합) 참조].

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행정상 명령의 실현을 위한 집행수단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준수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4항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와 성질을 다소 달리하고, 따라서 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될 수 있다.⁹³⁾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같은 법 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 시행령 제42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처분의 불복수단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쟁송을 제기하면 된다.⁹⁴⁾

93) 헌재결 2004. 2. 26, 2001헌바 80등, 2002헌바26 (병합) 참조.

94)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484-485쪽 참조.

(2)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은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1건, 입출항신고 외 신고 5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개항질서법』 제41조 제1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같은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개선명령(법 제42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출항신고

『개항질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박구역이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신고

『개항질서법』 제6조 제1항은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

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선박수리신고

『개항질서법』 제7조 제1항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i)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ii)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선박계선신고

『개항질서법』 제7조 제3항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繫船)⁹⁵⁾ 하려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95) 계선이란, 배를 항구 따위에 매어 두는 것을 말한다.

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선박의 항로 정박·정류신고

『개항질서법』 제12조 제1항은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험물 반입신고

『개항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개항의 항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 방지 및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 그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고와 관련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조

치명령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검사결과 보고 1건,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외 신고 14건, 총 17건의 보고·신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건설기계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로서 그 대상이나 요건 등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과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2)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검사

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검사대행자에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차대일련번호,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 후 5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⁹⁶⁾

3)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

9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 같음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항은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인에 같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의 경우 법문에 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의무가 도출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의 신고의 경우 임의적 신고⁹⁷⁾이기에 별도로 수리의무를 명시한 것은 아닌가 한다.

6) 등록말소 신청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

97) 신고의무가 없는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명길, 앞의 논문, 473쪽.

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사항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8) 건설기계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

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승인이 아닌 신고라는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개시신고·휴지신고·폐지신고·휴지사업 재개업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사항에 변경(사업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사업재개 예정일 5일전까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매매용건설기계 사업장 제시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건설기계매매업자에게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에는 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매매용건설기계 매도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건설기계매매업자에게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에는 매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건설기계조종사의 신분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자 인정신고 외 신고 5건, 총 6건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건설기술자 인정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법 제6조의4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감리전문회사 휴업신고·폐업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3항은 감리전문회사⁹⁸⁾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리전문회사 지위승계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은 감리전문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98) 감리전문회사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참조.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1항은 이러한 영업양도신고, 법인간합병신고시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정명령권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외 보고 1건,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외 신고 5건, 총 8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81조)을 발할 수 있고,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보고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의무 위반을 허위의 보고와 보고 태만으로 구분하여 제재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2) 건설업자 경영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81조), 건설업의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83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業) 그 자체에 대한 신고가 아닌 등

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한다.

4) 건설업 지위승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건설업을 상속받은 경우(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신고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인 지위승계신고 위반에 관한 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다.

5)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어느 건설업이 폐업했을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휴업 관련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3조 제8호). 휴업상태인데, 또 다시 영업을 정지를 명하는 것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있는지의문이다.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신고 외 신고 1건, 총 2건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 분양신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신고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통보는 분양신고필증의 교부방식으로 함)하도록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신고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히 행정청에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의계약 대상 물량 등 신고(보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개모집·공개추첨에 따른 분양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전단은 “같은 법 제6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분의 규모 등이 i) 최초 분양신고면적(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ii)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른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후단은 이 경우 미리 수의계약을 할 대상 물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여기서의 ‘신고’는 명칭은 신고이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분양에 있어서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린다는 점, 분양권자에게 법률에 근

거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등에서 수의계약제도와 보고의무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건축법

『건축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위법건축공사보고 외 보고 2건, 건축허가의제신고 외 신고 15건, 총 20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건축법』 제8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11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법건축공사보고

『건축법』 제25조 제1항은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

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사감리자에게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조사 결과보고

『건축법』 제81조 제4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1조 제6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의 요청상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건축허가의제신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i)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

축 또는 재축,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iii)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iv)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v)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건축허가의제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5)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6) 용도변경신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설건축물건축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생략)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공사계획신고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

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법』은 이러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건축법』 제2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의무 위반은 행정목적은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건축철거신고·재해멸실신고

『건축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철거예정일 7일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옹벽, 굴뚝 등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허가 신청시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 생략). 『건축법』은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만 이행하면 행정청의 별다른 수리행위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신고는 전형적인 신고(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보인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통하여 국민은 수익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3) 건축관계자 지위승계신고(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i)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ii)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iii)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등 국민에게 이러한 지위승계형 신고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 등 국민에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14)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등 국민에게 이러한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ii)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ii)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증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자에게 이러한 배치현황 제출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가 곧바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배치현황을 보내도록 규정하면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6) 전산자료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등 제출

『건축법』 제33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i)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ii)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의무를 새로이 기업 등 국민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해당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 및 절차 등만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건축사법

『건축사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건축사보 신고 외 신고 7건, 건축사 업무실적 제출 1건, 총 10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건축사법』 제30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이러한 보고명령 위반에 대하여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법 제28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건축사법』은 보고명령 위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축사 사망신고

『건축사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 사망에 따라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신고 외에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된다.

3) 건축사업무신고·변경신고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할 수 없는 인적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반드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또한 『건축사법』은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건축사보 신고·변경신고

『건축사법』 제7조 제2항은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합

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 앞서 언급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사보의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거나 건축사 예비시험만을 합격한 자이기는 하나, 건축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9조)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신고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법』은 이러한 신고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따라서 건축사보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변경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건축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외국 건축사면허 소지자 건축사업무신고·변경신고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

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는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이 직접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불편이 존재할 수 있는바,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는 신고의무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한편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신고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은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근거 없는 새로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건축사업무 변경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건축사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사업무신고사항 변경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인데,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사업무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변경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기간, 양식, 첨부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반드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8조 제1항 제8호), 이러한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휴업·폐업신고제도를 두는 이유는 영업신고를 하여 시장에 진입한 자가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 부문에서 공급부족으로 공급가격 상승 및 소비자 불편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하려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공급대책 기타 소비자의 불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⁹⁹⁾

그런데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 규정을 둘 필요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들 규정을 두고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지어는 행정벌로서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 휴업신고·폐업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사업무신고제도’의 특성상 건축사업무신고만 하면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영업자의 휴업·폐업으로 인하

99) 김재규, 앞의 논문, 192쪽.

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가져다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건축사업무 휴업신고·폐업신고를 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건축사법』은 휴업신고·폐업신고 위반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건축사 업무실적 등 제출

『건축사법 제19조의2』 제1항은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실적 등 제출은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려면 제출된 업무실적 등의 자료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을 때 과연 자료의 진실성과 성실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9) 경관법

『경관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경관법』 제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0)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허가제의 골재 채취 보고 외 보고 1건, 골재채취 등록기준신고 외 신고 6건, 총 10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골재채취법』 제21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법 제19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허가제의 골재 채취 보고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중의 2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제3항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의무 부과 근거 자체는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골재채취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2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부할 서류는 i) 골재채취업 등록증, ii)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iii)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iv)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v)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이다.

결국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때 2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골재채취업자에게 불필요한 인적·물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매 2년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특히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만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그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적을 전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골재채취법』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 19조)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은 등록변경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골재채취업 지위승계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양수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이들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

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법』은 이들 지위승계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6)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25조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i)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ii)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골재채취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7)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변경신고의무와 그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i)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의 변경, ii)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을 말한다.

한편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의 경우에는 그 요건,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재채취법』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골재채취 분기별 현황보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개발계획 변경보고 외 보고 2건, 기허가 또는 허가 불요 행위 신고의 공사 또는 사업착수신고 1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특별법』 제54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

2) 기허가 또는 허가 불요 행위 신고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행위허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i)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ii)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1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¹⁰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사용실태보고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1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외 신고 2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사용실태보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매립면허관청이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의 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100)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은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되어 2010.10.16자로 시행되었고,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상의 보고·신고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i) 법인의 명칭, ii) 법인의 대표자, iii)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지위승계신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의 권리·의무는 그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지위승계신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반적인 지위승계 관련 입법례와는 달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분할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폐지(신고)보고 1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사업폐지신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외 신고 14건, 총 16건의 보고·신고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i)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교적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6월의 기간 내에서의 업무정지(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중개업자의 사용자 고용신고·해고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감독상 필요로 하는 것은 해고뿐 아니라, 퇴사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신고’라기보다는 ‘퇴사신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휴업신고·휴업기간 변경신고·폐업신고·재개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휴업의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6) 거래당사자간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ii) 토지 또는 건축물, i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iii)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항은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거래당사자간 부동산거래신고)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의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6항은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

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법 제5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이행신고·보증변경신고·기간만료에 따른 보증재설정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근거 없는 새로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급적 신고의무 부과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직접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역시 법률의 근거 없는 새로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부과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직접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점검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1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변경신고 외 신고 3건,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외 자료제출 5건, 총 1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교통안전점검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교통안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교통행정기관((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교통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교통안전법』 제40조 제1항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교통안전법』 제40조 제2항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변경제출

『교통안전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그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ii)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ii)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iii)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iv)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v)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vi)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찬가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제출·변경제출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

『교통안전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수단운

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지 않고 있다.

7) 특별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교통안전법』 제36조 제1항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가 i)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ii)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지 않고 있다.

8) 교통사고관련자료제출

『교통안전법』 제51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55조·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당해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운행기록 등 제출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수단에 운행기록장치 등을 장착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 보고·자료제출 1건, 실태조사 자료제출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 보고·자료제출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실태조사 자료제출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ii)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ii)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iii)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iv) 보행환경 실태, v)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료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바,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하면 교통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타당성 평가 대행업무 이행 확인 자료제출·보고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1건,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 외 보고 1건, 평가대행자 폐업신고 1건, 총 5건의 보

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타당성 평가 대행업무 이행 확인 자료제출·보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이러한 자료제출·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보고의무 위반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재수단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2)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이러한 자료제출·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22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벌금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보고의무 위반이라는 점에 비추어 동종의 유사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우와 비추어 보았을 때 법률상 제재수단의 상한이 높은 측면이 있다.

3)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

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이러한 자료제출·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22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대행 보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 제1항은 복합환승센터¹⁰¹⁾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101) 복합환승센터란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15호).

-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약방식에 의한 사업대행을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대행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대행계약 체결보고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평가대행자 폐업신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제1항은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

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는 평가대행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 폐업 신고서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장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해선박법”이라 한다)은 보안사건 발생 예방,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1건,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보고 외 보고 2건, 총 4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보안사건 발생 예방,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국제항해선박법』 제41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

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보고·보안사건 관련 정보제공

『국제항해선박법』 제32조 제1항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보안정보제공서로 하되,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법』은 이러한 보고·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제적 합동보안훈련 참여 보고

『국제항해선박법』 제39조 제4항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정부 등이 주관

하는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법』은 이러한 보고·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사업·공사착수신고 외 신고 1건, 총 3건의 보고·신고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44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법 제133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재난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4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외 보고 2건, 궤도사업 변경신고 외 신고 9건, 총 13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케도운송법』 제22조 제2항은 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는 케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도운송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케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12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케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케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3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대한 케도운송사고 보고

『케도운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케도운송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경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케도운송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케도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 준수 등 관련 보고

『케도운송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케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케도사업자 및 전용케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12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궤도사업 변경신고

『궤도운송법』 제4조 제1항은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임원의 변경,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전용궤도 운영신고·변경신고

『궤도운송법』 제5조 제1항은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신고대상 전용궤도를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케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도운송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케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12조 제2항)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전용케도 운영 승인사항 변경신고

『케도운송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전용케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케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도운송법』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케도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케도운송법』 제9조 제1항은 i) 케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ii) 케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iii) 법인인 케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케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케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에 대한 지위승계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허가 또는 승인시에 결격사유자가 지위승계를 통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궤도운송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관련법령에서 당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합병·상속하는 경우 양수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상속인은 단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문제된다. 이러한 신고는 승계대상이 된 영업을 법적 성질에 따라 신고의 성질이 판단되어야 한다. 즉 허가영업양도의 경우 그 신고는 허가(신청)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허가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자가 허가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²⁾

판례는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격을 ‘신규허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본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수리를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처분으로 보고 있다.¹⁰³⁾

102) 홍정선, 앞의 책, 189쪽.

103)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01. 2. 9, 2000도2050;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따라서 『궤도운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형 신고는 명칭은 ‘신고’이나, 그 실질은 승계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8) 궤도사업 경영 등 위탁신고

『궤도운송법』 제10조 제1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궤도사업자·전용궤도운영자 휴지신고·휴지기간 변경신고·폐지신고

『궤도운송법』 제11조 제1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판 2003. 2. 14, 2001두7015.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휴지·폐지 등 신고 입법례와는 달리 같은 조 제3항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궤도운송법』은 휴지신고 및 휴지기간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1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은 ‘폐지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승인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 보고 1건, 사업(공사)추진상황신고 1건, 사업성 분석자료제출 1건, 총 4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승인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처리 보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승인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i) 사업비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ii) 사업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iii)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증감, iv) 시행자의 주소 변경, v)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vi)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vii)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viii)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승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비로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사업(공사)추진상황신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 제2항은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별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있다.

4)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를 동호 각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익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i)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ii)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iii)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시설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때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와 시행자 간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보고·자료제출 1건의 행정조사적 성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보고·서류제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과 관련되는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4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결과 제출 1건 외 자료제출 1건, 총 2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결과 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에 의무부과의 근거 둘 필요가 있고, 결과제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분기별 사업시행 결과 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분기별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에 의무부과의 근거 둘 필요가 있고, 결과 제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4) 도로법

『도로법』은 상속신고 외 신고 3건, 차량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자료제출 1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위승계형신고

『도로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일부터 30일 이내, 양수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도로 관리청¹⁰⁴⁾(이하 이 보고서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4) 도로 관리청의 정의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20조 참조.

2) 공사착수신고

「도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가의 기준의 대강은 적어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보다 상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이고, 공사착수신고의무 부과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사착수신고 역시 규제의 하나인 바, 이를 반드시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차량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자료제출

「도로법」 제59조 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청에게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도선법

『도선법』은 선박운항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1건, 도선료 신고 외 신고 3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선박운항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도선법』 제29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선료 신고·변경신고

『도선법』 제21조 도선사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도선법』 제27조 제3항은 도선사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도선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업무 보고·자료제출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1건,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보고 외 보고 1건, 정비구역 안에서의 사업신고 1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7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8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비사업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7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8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¹⁰⁵⁾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회계감사결과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i) 같은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ii)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iii)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0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신고는 강학상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은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타인 토지 출입의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명령(법 제75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85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Ausnahmebewilligung)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5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외 신고 2건, 총 3건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입장료 신고·변경신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단서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장료 신고 및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 1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 폐업신고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

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반드시 대행업자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7조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0)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은 행정조사적 성격의 업무·자산상태보고 1건, 도시철도사업 양도신고 외 신고 3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도시철도건설자 업무·자산상태보고

『도시철도법』 제25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

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9조의2)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또는 부과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¹⁰⁶⁾

과징금은 금전상 제재라는 점에서 형사벌로서의 벌금이나 행정벌로서의 과태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과징금은 i) 행정법상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가해지는 것인 점에서 형사벌과 다르고, ii) 행정법상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해 가해지더라도 그것은 성질상 처벌은 아니며,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금전의 납부 등의 불이익의 부과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와 행정벌·형사벌의 부과는 이론상 양립할 수 있다.¹⁰⁷⁾

과징금부과행위는 그 자체 독립적인 침익적 행위(금부하명)이므로 법률유보의 원리상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과징금은 i) 법령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행정제재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 ii) 사업(영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거나 사업(영업)의 취소(정지)와 선택관계에 놓이는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후자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의 2 제4항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의 용도를 ii) 도시철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 ii) 도시철도기

106)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515쪽; 홍정선, 앞의 책, 638쪽.

107) 홍정선, 앞의 책, 639쪽. 현재결 2007. 7. 12, 2006두4554; 현재결 2003. 7. 24, 2001헌가25 등 참조.

술의 연구개발, iii) 도시철도이용자의 서비스개선사업, iv)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교육훈련이나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v)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2) 도시철도사업 양도신고·합병신고

『도시철도법』 제4조 제3항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9조의2)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법』 제4조 제3항은 양도신고·합병신고의무자, 신고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추후에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운임 결정신고·변경신고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제1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

하거나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9조의2)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는 운임 결정신고·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추후에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1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에 신고만 하면 행위 허가 없이 계속적으로 공사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2)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외 2건의 신고, 총 3건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 착수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료 신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준공확인 전 사용신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

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준공전 사용신고’는 신고만으로 의무가 완성되는 자체완성적 신고라 할 것인데, 제재수단이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있다.

(33)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지위승계신고 1건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지위승계신고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개발법”이라 한다)은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개

발사업대행 계약 체결 보고 1건, 사업양수신고 외 신고 4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물류시설개발법』 제61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시설개발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발사업대행 계약체결 보고

『물류시설개발법』 제27조 제1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시행자가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행자가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여기서는 계약방식에 의한 사업대행을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대행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대행계약 체결보고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지위승계신고

『물류시설개발법』 제14조 제1항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등록업 승계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등록시 결격사유자가 영업 양수도·법인합병 등에 따라 등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된다. 『물류시설개발법』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는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물류시설개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휴업신고·폐업신고·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법인해산신고

『물류시설개발법』 제15조 제1항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신고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방법·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 명시적인 수권근거는 없지만, 당해 법률 조항의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집행명령의 형식으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법률유보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휴업·폐업신고의 경우 법률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신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휴업·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이해하면 위임입법의 외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신고의무자에게 충분한 신고기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인바, 실제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률에서 다른 일반적인 입법례들처럼 휴업·폐업신고를 사후신고로 규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신고의무 이행 확보에 바람직했을 것이다.

『물류시설개발법』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재개업신고는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물류시설개발법』은 휴업·폐업신고,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 위반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7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폐업신고의무,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만이 유의미할 것이다.

(35)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외 자료제출 1건, 국제물류주선업 양수도 신고 외 신고 5건, 총 8건의 보고·신고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물류현황조사·지역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러한 자료제출요청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는 시·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물류기업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러한 자료제출요청 위반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기업에게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러한 자료제출요청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제물류주선업 지위승계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국제물류주선업 휴지·폐지·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의 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6조 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이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신고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방법·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지·폐지 또는 해산 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 명시적인 수권근거는 없지만, 당해 법률 조항의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집행명령의 형식으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법률유보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휴지·폐지신고의 경우 법률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신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휴지·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이해하면 위임입법의 외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신고의무자에게 충분한 신고기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인바, 실제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률에서 다른 일반적인 입법례들처럼 휴지·폐지신고를 사후신고로 규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신고의무 이행 확보에 바람직했을 것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재개업신고는 두고 있지 않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상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거주실태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1건,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착수신고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거주실태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5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서류제출요구 불응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착수신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은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

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특례로서의 공사 또는 사업착수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보고·자료제출 1건, 개발사업 대행 보고 1건, 공사(사업)착수신고 1건, 신탁계약 체결 서류 제출 1건, 총 4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보고·자료제출

『산업입지법』 제4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¹⁰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08) 『산업입지법』 제48조 제1항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9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마.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사.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아.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자.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 차.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카.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무 부과임에도 보고·자료제출의 대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고·자료제출의무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이러한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개발사업 대행 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통하여 대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더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대행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신청인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한다(같은 조 제5항).

이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체결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계약방식 이용의무 및 보고의무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행령 차원에서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3) 공사(사업)착수신고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신탁계약 체결 서류 제출

『산업입지법』 제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와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기는 하나, 이러한 자료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새로운 의무부과인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 절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	·	·	2	문화체육관광부	제9932호	2010.1.18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2	5	·	8	문화체육관광부	제9928호	2010.1.1	
3	경륜·경정법	1	·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9685호	2009.5.21	
4	공연법	·	1	2	·	3	문화체육관광부	제10111호	2010.3.17	
5	관광기본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741호	2007.12.21	해당 없음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9469호	2009.3.5	

제 3 절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	관광진흥법	2	2	6	·	10	문화체육관광부	제10112호	2010.3.17	
8	국민체육진흥법	1	2	·	·	3	문화체육관광부	제9976호	2010.1.27	
9	국어기본법	·	1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9491호	2009.3.18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2	·	·	3	문화체육관광부	제9492호	2009.3.18	
1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3	·	·	3	문화체육관광부	제9785호	2009.7.31	
12	대한민국예술원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13	도서관법	·	2	·	·	2	문화체육관광부	제9528호	2009.3.25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4	독서문화진흥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9470호	2009.3.5	해당 없음
1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10110호	2010.3.17	해당 없음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2	2	·	7	문화체육관광부	제9677호	2009.5.21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18	문화예술진흥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846호	2008.1.17	해당 없음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	·	1	·	2	문화체육관광부	제9763호	2009.6.9	
20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제 3 절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1	스포츠산업 진흥법	1	·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2	·	5	문화체육관광부	제9974호	2010.1.25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	2	·	·	3	문화체육관광부	제10113호	2010.3.17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9425호	2009.2.6	
25	영상진흥기본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744호	2007.12.21	해당 없음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7	·	10	문화체육관광부	제9657호	2009.5.8	
2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9932호	2010.1.18	해당 없음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3	·	3	문화체육관광부	제10115호	2010.3.17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1	·	1	문화체육관광부	제9472호	2009.3.5	
3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3	·	5	문화체육관광부	제9098호	2008.6.5	
31	저작권법	1	1	1	·	3	문화체육관광부	제9785호	2009.7.31	
32	전통무예진흥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9006호	2008.3.28	해당 없음
3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9473호	2009.3.5	
34	지방문화원진흥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1	·	·	1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3	2	·	5	문화체육관광부	제9494호	2009.3.18	

제 3 절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 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 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1	1	·	2	문화체육관광부	제9932호	2010.1.18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10107호	2010.3.17	해당 없음
39	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	2	·	·	2	문화체육관광부	제9789호	2009.10.9	
40	한국관광공사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9474호	2009.3.5	해당 없음
4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42	향교재산법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제9215호	2008.12.26	해당 없음
	계	14	39	36	0	89				

2. 개별법상의 보고·신고 현황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이 법률은 2건의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자료의 제공요청은 본래적 의미의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은 아니다.

1) 공사준공보고서의 제출

법률 제30조는 시행자는 시장에게 공사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료의 제공요청

법률 제17조는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는 조직위원회에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개인이 공공기관에 보고적 성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신고 5건, 자료제출 2건, 보고 1건 등 총 8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필요보고 명령

법 제31조제2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보고는 일반적인 보고의무보다는 필요한 경우 보고를 강제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나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태보고서의 제출

법 제31조제3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2회(반기별 1회)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①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②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③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3) 내용수정 신고

법률 제21조제5항,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법률 제26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유사업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업을 포함하여 복합

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5) 중요사항 변경신고

법률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19조는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¹⁰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률 제29조제4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규칙 제17조는 ‘영업승계인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의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근거 없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109)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①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③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④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⑤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⑥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말한다.

7) 폐업신고

법률 제30조제1항, 시행규칙 제22조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말소규정이 있어도 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할 것이다.

8) 자료제출 요구

법률 제22조제1항은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을 신청에 필요한 추가적 요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은 아니다.

(3) 경륜·경정법

이 법률은 보고 1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보고·검사

법률 제2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주사업자(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보고명령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연법

이 법률은 2건의 신고와 1건의 자료제출을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1)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은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으로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장운영의 정지명령과 벌칙으로서 공연활동 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3항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3천인 이상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행정처분으로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장운영의 정지명령과 벌칙으로서 공연활동 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검사 및 진단결과 제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은 정기검사(1차 : 당해 공연장의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받는 것, 2차 :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5년 마다, 그 밖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행정처분으로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자료제출은 단순한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이 아니라 제출된 내용을 행정청이 검토하여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준의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이 법률은 보고 1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보고의무와 같은 사항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기금대여상황 보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4조는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관

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금의 대여업무에 관하여는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대여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그 기관에 강제적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문이다.

(6) 관광진흥법

이 법률은 보고 2건, 신고 6건, 자료제출 2건 등 총 10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법률 제7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은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등은 지정 또는 승인 즉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고와 자료제출은 보칙에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보고와 자료제출에 관하여 법률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며, 행정재량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입법이다.

이 보고와 자료제출은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로서 행정처분과 벌칙을 동시에 두고 있는 것은 매우 강한 제재에 해당한다. 즉, 단순 정책의 수립·집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은 국가인 행정청이 담당하는 업무이며, 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이는 협조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실적보고

시행령 제62조는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사후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이지만,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고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0조는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등 허가사업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여 허가규제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도 변경허가만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한 벌칙은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에는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없이 부령에 신고사항(110)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불비에 해당한다. 즉, 다음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입법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제3항 단서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5조제4항,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3조는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110) 시행령 제8조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지위승계신고

법률 제8조제4항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영업방법 및 배당금 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26조는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규제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다른 규정과 달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규정이 없다.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7) 조건완성 신고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¹¹¹⁾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111)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갖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고는 조건이 완성되었음을 행정청에 알려주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에 신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제24조)에 관련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8) 사실발생신고

시행령 제62조제2항은 보조사업자는 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②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③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④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사실이 발생되었음을 행정청에 알려주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에 신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제61조)에 관련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9) 재무제표의 제출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조건입증 서류제출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법률은 해산보고 1건, 자료제출 및 보고 3건, 신고 2건, 일반적 자료제출 1건 등 총 7건의 보고·신고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해산보고

법률 제53조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법률 제5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와 자료제출은 보칙에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보고와 자료제출에 관하여 법률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며, 행정재량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입법이다.

3) 보고 및 자료제출

법률 제56조의2제6항은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자료제출 및 보고

법률 제15조의2제3항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20조의5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① 사업의 진행 정도, ② 지원금 사용 내역, ③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④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지원신고

법률 제14조는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①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②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 ③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④ ①부터 ③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②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1조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송사업자등은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11조에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은 없이 포괄적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7) 결산서의 제출

법률 제8조4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자료제출 3건, 신고 2건 등 총 5건의 보고·신고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폐업신고

법률 제11조제1항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업승계신고

법률 제14조제3항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입증서류제출

법률 제15조는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자료제출요청

법률 제19조제3항 시·도지사는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턴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자료제출요청

법률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7건의 신고와 3건의 자료제출 등 총 10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26조는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미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98조제2항), 미변경신고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계획신고

법률 제37조제1항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98조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영화상영의 신고

법률 제41조제1항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

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상영금지 또는 상영정지(법 제42조), 형벌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위승계신고

법률 제46조제3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법률 제57조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지위승계신고

법률 제63조제3항은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8조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폐업신고

법률 제64조제1항은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8) 관련 자료제출

법률 제25조의2제3항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관련 자료제출

법률 제35조는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 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관련 자료제출

법률 제56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등급분류) 및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발행신고

법률 제16조제1항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 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① 제호, ② 종별 및 간별, ③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⑤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⑥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31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폐업신고

법률 제17조는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영업의 승계신고

법률 제22조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서류제출

법률 제21조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정기간행물 제출

법률 제23조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에게 등록·신고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초 간행물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 보건(식품·위생)

(1)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건강검진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942호	2009.3.22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	16	1	18	보건복지부	제8941호	2008.9.22	
3	검역법	1	·	·	·	1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7.7.12	
4	결핵예방법	1	·	1	·	2	보건복지부	제8728호	2008.12.22	
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특례법	2	·	·	·	2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8	공중위생관리법	·	·	6	1	7	보건복지부	제9026호	2008.7.1	
9	구강보건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10	국립암센터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11	국민건강보험법	·	·	8	5	13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12	국민건강증진법	·	1	·	1	2	보건복지부	제6983호	2009.1.1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	1	1	3	보건복지부	제9795호	2010.1.10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1	1	·	2	보건복지부	제9431호	2009.8.7	
15	국민연금법	·	·	15	1	16	보건복지부	제9754호	2009.12.10	
16	기생충질환예방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17	기초노령연금법	·	·	2	1	3	보건복지부	제9617호	2009.10.2	
18	긴급복지지원법	·	·	·	·	·	보건복지부	제9751호	2009.5.28	해당 사항 없음
19	노인복지법	·	2	14	2	18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4	3	7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0호	2008.4.18	해당 사항 없음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029호	2008.6.29	해당 사항 없음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	·	10	1	21	보건복지부	제9717호	2009.11.28	
25	모자보건법	4	·	7	1	12	보건복지부	제9333호	2009.7.8	
2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840호	2009.12.29	해당 사항 없음
27	보건의료기본법	1	·	·	·	1	보건복지부	제9034호	2008.9.29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	·	·	1	2	보건복지부	제9028호	2008.9.29	
29	보건환경연구원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0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 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	·	·	0	보건복지부/ 법무부	제8655호	2008.1.18	해당 사항 없음
31	사회보장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767호	2009.6.9	해당 사항 없음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938호	2008.3.21	해당 사항 없음
33	사회복지사업법	·	1	4	1	6	보건복지부	제9766호	2009.12.1	
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	·	9	1	15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3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	2	·	2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해당 사항 없음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4	1	5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7	식품안전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121호	2008.12.14	해당 사항 없음
38	식품위생법	9	·	12	2	23	보건복지부	제9692호	2009.8.7	
3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1	1	3	보건복지부	제8944호	2008.9.22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	·	1	1	4	보건복지부	제9025호	2009.3.29	
41	아동복지법	3	·	6	·	9	보건복지부	제9122호	2008.12.14	
42	암관리법	·	·	·	1	1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43	약사법	10	·	37	1	48	보건복지부	제9123호	2008.12.14	
4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432호	2009.8.7	해당 사항 없음
45	영유아보육법	1	·	3	2	6	보건복지부	제9792호	2010.1.1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9032호	2008.6.29	해당 사항 없음
47	위생사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647호	2008.4.18	해당 사항 없음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9	·	9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49	의료급여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50	의료기기법	3	·	24	1	28	보건복지부	제9185호	2009.6.27	
5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	7	1	9	보건복지부	제8650호	2008.4.18	
52	의료법	4	·	2	12	18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5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4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1	·	1	5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5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1	1	2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14	1	15	보건복지부	제9030호	2008.5.26	
58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	2	2	보건복지부	제8974호	2008.3.21	
59	장애인복지법	·	·	6	1	7	보건복지부	제8652호	2008.4.18	
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9705호	2009.8.23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68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62	전염병예방법	7	·	5	1	13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63	정신보건법	·	·	8	1	9	보건복지부	제8939호	2009.3.22	
6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685호	2009.11.22	해당 사항 없음
6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66	지역보건법	·	·	1	·	1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해당 사항 없음
67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386호	2010.1.31	해당 사항 없음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업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8	천연물신약연구 개발촉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69	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685호	2009.11.22	해당 사항 없음
7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71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	·	·	0	보건복지부	제9028호	2008.9.29	해당 사항 없음
7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644호	2008.10.18	해당 사항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4	한의약육성법	·	·	·	·	0	보건복지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사항 없음
75	혈액관리법	3	1	5	1	10	보건복지부	제9023호	2009.3.29	
76	화장품법	1	·	5	1	7	보건복지부	제8646호	2008.10.18	
7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0	보건복지부	제8610호	2008.8.4	해당 사항 없음
7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	·	·	2	보건복지부	제8940호	2008.9.22	
79	가축전염병예방법	·	·	2	1	3	농림수산 식품부	제9130호	2008.9.11	
80	농산물품질관리법	·	1	4	1	6	농림수산 식품부	제9759호	2009.12.10	
81	비료관리법	1	·	5	2	8	농림수산 식품부	제10017호	2010.8.5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2	사료관리법	1	·	6	1	8	농림수산 식품부	제9432호	2009.8.7	
8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	4	1	5	농림수산 식품부	제9952호	2010.1.25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	2	1	3	농림수산 식품부	제8852호	2008.12.22	
85	수산물품질관리법	1	·	4	·	5	농림수산 식품부	제10023호	2010.8.5	
86	식품산업진흥법	1	·	1	·	2	농림수산 식품부	제9951호	2010.1.25	
87	인삼산업법	1	·	11	·	12	농림수산 식품부	제9759호	2009.12.10	
88	축산물가공처리법	3	·	7	1	11	농림수산 식품부	제9665호	2009.11.9	
	계	84	9	297	62	452				

(2) 보건(식품·위생)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¹¹²⁾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위생관리 및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 1건, 생산실적보고 1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외 신고 15건, 총 18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위생적 관리 및 영업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생산실적 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생산실적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12) 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위생법』, 『약사법』,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인삼산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보고·신고제도 현황은 별책 부록 참조.

③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한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1항).

④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부터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그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허가업으로 규정하되, 몇몇 중요한 사항 변경의 경우 또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조치(법 제3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1항).

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1항).

⑦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각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발하거나(법 제3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변경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7조 제1항).

⑧ 영업상 사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도착 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했다.

⑨ 지위승계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발하거나(법 제32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⑪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 등록한 경우에는 그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검역법

『검역법』은 “선박, 항공기, 열차 및 자동차 등이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 또는 착륙한 때의 보고” 1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검역법』 제36조는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및 자동차)가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 또는 착륙한 때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하거나 착륙한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 환자나 사망자 유무를 보고하고,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기다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역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 제1항).

『검역법』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운송수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바, 그 주체를 사람으로 지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은 결핵예방접종 실시보고 1건, 결핵환자신고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결핵예방접종 실시보고

『결핵예방법』 제19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핵예방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결핵환자신고

『결핵예방법』 제20조는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결핵예방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2조).

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은 근무실적 보고 등 총 2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근무실적보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는 자(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는 매월의 근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조건미이행 등 보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의 수습을 받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때 또는 해소된 때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은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행정조사적 보고 1건, 공중위생영업신고 외 신고 5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제1항).

② 공중위생영업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전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법 제1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의무 위반과 중요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각각 달리 정하는 입법례를 취하여,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제1항).

생각건대, 본래 신고제이면서, 변경신고 그것도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제도를 두면서 제재수단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신고는 이른바 ‘완화된 형태의 허가제’와 같은 것임에 비추어 신고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도 규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제재수단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은 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공중위생법』 제3조의2 제3항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은 이러한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

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서류제출 4건, 사업장 적용신고 외 신고 7건, 총 13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 및 세대주에 대하여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명칭은 신고이나 그 법적 성격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적용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되어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그 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⑧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에게 그 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7)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3항 및 제4항·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233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조자등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고용비율·지원금 사용내역 보고 1건,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1건, 거주지역·세대의 구성변경신고 1건, 총 3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수급자의 고용비율·지원금 사용내역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2는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이 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수급자의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는 시행령상의 보고의무부과인바, 제재규정을 둘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보고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수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그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신청과 결부된 임의적인 사항인바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거주지역·세대의 구성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에게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기는 하나, 신고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거주지역·세대의 구성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현저한 변동’을 신고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상황이 ‘현저하게 나빠진 경우’에 임의로 신고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임의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신고요건 자체를 완화해서 규정해도 된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수급권자 사망신고 1건,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변경·소멸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수급권자 사망신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변경·소멸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각 연금 관리기관에게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제1항).

10)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자격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 1건,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외 신고 14건, 총 16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가입자의 자격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국민연금법』 제122조는 국민연금공단에게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자료제출요구 위반에 대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법 제86조 제1항), 5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

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9조).

③ 사업장탈퇴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9조).

④ 가입기간 중의 소득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9조).

⑤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9조).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성명이 변경된 경우,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9조).

⑥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소득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연도의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⑦ 지역가입자 등 내용변경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⑧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등 신고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6조는 노령연금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⑨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등급 구분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수급권 소멸 사실을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⑩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에게 수급권 소멸 사실 또는 변경사실을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⑪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이러한 신고나 통보를 참고로 하여 연금지급·중지·변경·정지 등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법률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의 대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만을 보았을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는 정부로부터 급부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를 명확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법률 차원에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3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경위나 원인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고라는 점에서 위반행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⑫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 신고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1조). 그런데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 신고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⑬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당연가입자가 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신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사업장가입자 외국인의 경우 그에게 직접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외국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신고 관련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1)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은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 1건, 수급권 상실신고 외 신고 1건, 총 3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용어는 ‘거부’한다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해당 조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곧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수급권 상실신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수급자에게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수급자 신상변경신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수급자 신상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은 수급자 신상변경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신고의무를 수급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1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의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 1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제출 1건, 실종노인 신상카드제출 1건,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외 신고 13건, 총 18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실종노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2항은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1조의2 제1항).

②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노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법 제39조의3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법 제43조제1항)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제출

『노인복지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대강은 법률에서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부과규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대강은 법률에서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부과규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노

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대강은 법률에서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은 신고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대강은 법률에서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노인학대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

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재수단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⑨ 실종노인 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의3)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노인을 보호·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미신고 보호조치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측면은 가치 이해가 가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어 법정형을 높게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⑩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2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의2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⑪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사항 변경신고·휴지신고·폐지신고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한 자에게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변경·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경신고나 폐지·휴지신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만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휴지·폐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처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바, 신고기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⑫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사항 변경신고·휴지신고·폐지신고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변경·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경신고나 폐지·휴지신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⑬ 양로시설 등·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법 제43조 제1항)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 외 (보고)자료제출 2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외 신고 3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37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제공제한, 지정취소는 이러한 의무부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생각된다.

② 보수·소득 등 보고·자료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37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제공제한, 지정취소는 이러한 의무부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생각된다.

③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37조 제1

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제공제한, 지정취소는 이러한 의무부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생각된다.

④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신고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그 대강은 법률에서 정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쇄명령(법 제37조제3항 단서)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변경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장기요양기관 휴업신고·폐업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마약 수입보고 외 9건의 보고, 사고마약류 신고 외 신고 9건, 총 21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서류제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이 행정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바, 의무부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생각된다.

②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입 또는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19조의 명령에 위반 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마약 등 생산완료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생산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마약류 원료사용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하여 한의 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매 반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마약 도매보고·소매보고·학술연구 사용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 및소매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매반기의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을 매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대마재배자 생산보고·폐기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대마재배자에게 대마초의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대마재배자에게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폐기일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법 제42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사고마약류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지체없

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4조 제1항)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 마약류 취급업무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휴업·재개업·폐업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마약류 취급자 사망신고·무능력신고·해산신고·취급학술연구 종료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하거나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청산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해

당 사실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⑪ 마약류관리 인계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관리 중의 마약류 인계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자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⑫ 도난 등 사고발생 원료물질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원료물질취급자에게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1건, 임신 또는 분만사실 보고 외 보고 3건, 임신부 신고 외 6건, 총 12건의 보고·신고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임신 또는 분만사실)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27조 제2항).

그런데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 부과시 일반적으로 그 대상, 요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는 하나, 그 대상이나 요건 등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임신부·신생아 사망 등 보고

『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신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2항).

③ 미숙아 등 출생보고

『모자보건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임신부·영유아 이송사실 보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4호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2항).

⑤ 임신부 임신 또는 분만사실 신고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은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신고는 명칭은 신고이나 법적 성격은 『모자보건법』상 요보호 요건으로서의 신청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⑥ 산후조리업 신고·변경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미신고·미변경신고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산후조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휴업·재개업·폐업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심대상자 발견보고 1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의심대상자 발견보고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4항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4항은 신고·보고·통지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¹¹³⁾

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실적보고 1건, 총 2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113) 『보건의료기본법』이 기본법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보고나 통지 신고 의무는 개별 법에서 정해질 것을 상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역·실적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보건신기술인증표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보건신기술인증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이 보건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건신기술인증표시제도의 실시나 그와 관련한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보고 방법 및 기한을 고시에 위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두어야 할 것이다.

18)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외 신고 3건, 안전점검결과 제출 1건, 총 6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보고/서류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법 제40조 제1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신고의 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명령(법 제4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효한 신고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여러 가지 제재조치 중 시설의 폐쇄 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만이 유의미한 제재 조치가 될 것이다.

③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업·폐지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지·재개·폐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것은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같은 법 제38조 제3항)를 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8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안전점검결과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법문은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종의 결과보고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점검결과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8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 1건, 잔여배아 보관·제공 등 보고 외 보고 4건, 유전자검사기관 등 신고 외 신고 8건, 총 1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아

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등·유전자치료기관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1조 제1항),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43조 제1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적 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② 잔여배아 보관·제공 등 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에게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41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줄기세포주 제공현황 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연구계획서 승인보고·변경승인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3항은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연구계획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연구계획 승인·변경승인기관이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유전자정보 제공여부 결정결과 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유전정보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정보등의 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전자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41조 제1항)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유전자검사기관 등 신고·변경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폐기 명령(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유전자검사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신고의 경우보다 변경신고의 경우에 더 과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⑦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은 유전자검사기관에게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바, 휴업과 폐업 제재수단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⑧ 유전자은행 변경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유전자은행을 개설하려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전자은행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 유전자은행 휴업신고·폐업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유전자은행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법 제41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바, 휴업과 폐업 제재수단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⑩ 유전자치료기관 신고·변경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 1건,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임의적 신고 외 신고 3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식품 제공자 또는 기부식품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4조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임의적 신고·철회신고·폐업신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신고가 임의적인 신고¹¹⁴⁾이기는 하나, 일단 신고한 경우 그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두어진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의적 신고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기부식품제공사업자 의무적 신고·변경신고·철회신고·폐업신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114) 신고의무가 없는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명길, 앞의 논문, 473쪽.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4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당연신고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실종아동 인지신고 1건, 신상카드 제출 1건, 총 3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⁵⁾

115) 이와 관련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제1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되는 ‘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실종아동 인지신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신고는 명칭은 신고이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신상카드 제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9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의무 1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재해방지 결과보고 외 보고 1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신고) 1건, 총 4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같은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에서는 보고·신고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1조 및 제16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보고·신고의무자가 될 것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보고·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비교해도 과도한 벌금 액수라고 생각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재해방지 결과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재해방지 결과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생산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은 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은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 외 보고 2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외 신고 5건, 총 9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

『아동복지법』 제9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이들에게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 역시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 역시 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② 시설보호아동 퇴소보고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 역시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 역시 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③ 시설보호아동 보호기간 연장보고

『아동복지법』 제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i)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ii)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iii)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 역시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 역시 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④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4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신고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1조)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신고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휴지·재개·폐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지·재개·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하여 상당히 장기인바, 이처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⑥ 아동학대 임의적 인지신고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임의적 인지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

의적 신고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⑦ 아동학대 의무적 인지신고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여기서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한편 임의적 신고와는 달리 의무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재수단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4) 암관리법

『암관리법』은 암통계 자료제출 1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암관리법』 제8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관리법』은 이러한 요구 불응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수단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아마도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5)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은 보육시설 관련 보고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 제출 1건,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1건, 보육시설 폐지신고 외 신고 2건, 총 6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보육시설 관련 보고

『영유아 보육법』 제4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명령(법 제44조 제6호)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영유아 보육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은 별다른 제

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비용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자료제출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5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은 이러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의5 제5항). 그런데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용어는 ‘거부’한다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④ 보육시설 폐지신고·운영중단신고·운영재개신고

『영유아 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폐지·휴지·재개 2개월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정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법 제44조)을 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설치신고 외 신고 8건, 총 9건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설치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종합병원의 경우는 제외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을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송업자 변경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은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이송업 휴업신고·폐업신고·재개업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이송업자가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55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신고의 경우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로서의 실익이 없는 바, 과태료 규정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영업양수·상속·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은 “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55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영업시설 인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55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의료기기 생산실적·수출실적 보고 외 보고 2건, 의료기기 품목제조신고 외 신고 23건, 총 28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의료기기법』 제2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만 규정하면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② 의료기기 생산실적·수출실적 보고

『의료기기법』 제12조 제2항은 제조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전년도의 생산 및 수출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여 보고기한만을 정하고 그 나머지 사항을 행정규칙인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비추어 고시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보고

『의료기기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부작용 보고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32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위해의료기기 회수계획보고

『의료기기법』 제27조 제2항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의료기

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3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5일 이내,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 32조제1항)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의료기기 제조업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고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 등

사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⑥ 의료기기 품목제조신고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조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나, 『의료기기법』상 그 밖의 제조업허가·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과 비교할 때에도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⑦ 의료기기 수입품목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의료기기 수입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기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제조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의료기기 임대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⑪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은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그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⑫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은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그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⑬ 의료기기 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은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임대업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4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그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⑭ 의료기기 제조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그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휴업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⑮ 의료기기 수입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 제5항은 의료기기 수입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그 수입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수입업소를 재개한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휴업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⑯ 의료기기 수리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은 의료기기 수리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그 수리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수리업소를 재개한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휴업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⑰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은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그 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판매업소를 재개한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휴업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⑱ 의료기기 임대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은 의료기기 임대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임대업자가 그 임대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임대업소를 재개한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휴업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⑬ 지위승계신고

『의료기기법』 제40조 제1항은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조업자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등은 해당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은 지위승계신고 기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입법불비라 할 것이다.

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실태 및 취업현황 (신고)보고 1건, 안경업소 폐업신고 외 신고 7건, 총 9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실태 및 취업현황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2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안경업소 폐업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2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치과기공소 개설장소 폐업신고·변경신고·지도치과의사 변경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3호는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기공소개설자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로 정하거나 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매우 후진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⑥ 치과기공소 양수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은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3호는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기공소개설자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로 정하거나 또

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매우 후진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⑦ 안경업소 양수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수신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양수자에게 양수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양수신고는 안경업소 양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9) 의료법

『의료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외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 제출 1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외 보고 3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외 신고 11건, 총 18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의료법인 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제출의무 부과는 관계인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③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보고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법 제6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실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④ 조산수습의료기관 전년도 분만실적보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조산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연간 분만 실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산수습의료기관에게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습의료기관 인정철회 등의 불이익한 제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⑤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보고

『의료법』 제25조(제82조 제3항)는 의료인(안마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의료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9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제82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9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제82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업소 개설신고를 한 자가 개설된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⑧ 의료기관 개설특례신고(부속의료기관 설치신고)

『의료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신고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63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은 신고기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의료법』 제37조 제1항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서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⑩ 의료기관 휴업신고·폐업신고

『의료법』 제40조 제1항(제82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안마사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63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⑪ 부대사업신고·변경신고

『의료법』 제49조 제3항은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63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⑫ 해산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가해지지는 아니하나, 청산인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⑬ 청산종결 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은 청산인이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가해지지는 아니하나, 청산인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⑭ 조산원 지도의사신고·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조산원의 개설자에게 같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가해 지지는 아니하나, 조산원 개설자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1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사항 보고 외 보고 2건, 조직은행 폐업신고 1건, 총 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직은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25조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사항 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조직은행에게 연 1회(당해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2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결과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조직이식의료기관에게 이식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은행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2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중대한 부작용 발생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에게 조직이식과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제24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조직은행 폐업신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신고의무를 위한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신고기한·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헌법상 행정부가 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별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할 것이다.

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의무 1건, 폐업 또는 업무종료신고 1건, 총 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30조 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명령(법 제30조 제2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30조 제3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폐업 또는 업무종료신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30조 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매장신고 외 신고 13건, 총 15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

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상세화하고 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제37조 제1항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보고의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매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화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개장을 하려는 자는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개인묘지 설치신고·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은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의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명령(법 제31조)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 장사시설 폐지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1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료제출 1건, 총 2건의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료의 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1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외 신고 5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보고·서류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법 제6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류제출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서류제출로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폐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재적 조치라고 생각된다. 『장애인복지법』이 그 밖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

는 벌칙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중단신고·재개신고·폐지신고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은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시설의 운영을 중단·재개·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시설 중단·재개·폐지신고의 경우 장기의 사전신고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같은 조 제3항)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비용수납신고

『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2항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5)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은 소독실시사항 관계서류제출 1건, 전염병예방접종 실시결과 보고 외 보고 6건,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신고 외 신고 4건, 총 13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소독실시사항 관계서류제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5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서류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8 제1항)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전염병예방접종 실시결과 보고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의2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소독실시사항보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6 제2항은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8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의2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1항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기타 제1군전염병환자 발생(신고)보고

『전염병예방법』 제5조는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

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 등의 보고(신고)·변경보고(변경신고)

『전염병예방법』 제6조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군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 할 것이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신고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 제1항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염병예방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⑧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설치신고

『전염병예방법』 제23조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이하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염병예방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로 한 취지가 단순히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보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방적 금지해제를 위한 것이라면 적절한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⑨ 소독업신고·변경신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제1항은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신고·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8 제1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 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소독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그营业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법 제40조의8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의2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정신요양 시설 휴지신고 외 신고 7건, 총 9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정신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취소(법 제11조 제1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명령(법 제12조 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정신요양시설 휴지신고·재개신고·폐지신고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같은 법 10조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

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을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정신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 휴지신고·재개신고·폐지신고

『정신보건법』 제17조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건강진단신고 1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건강진단신고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

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기 3일 전까지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은 혈액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부적격혈액 폐기처분 결과보고 외 보고 2건, 품목신고 외 신고 4건, 부적격혈액폐기처분 현황 제출 1건, 총 10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혈액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혈액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혈액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부적격혈액 폐기처분 결과보고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채혈금지대상자 채혈결과보고

『혈액관리법』 제7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에 속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채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채혈금지대상자에 속하는 자로부터 채혈할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혈액검사 결과보고

『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 적격여부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할 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품목신고

『혈액관리법』 제6조 제4항은 혈액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품 제조업 허가 위반, 품목허가 위반, 품목신고 위반은 각각 그 의무의 경중을 달리 한다고 생각되는바, 각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수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⑥ 혈액원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혈액관리법』 제6조의4 제1항은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혈액관리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들 신고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 특정수혈부작용신고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수혈부작용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부적격혈액 폐기처분현황 제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혈액원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혈액원등은 매반기 말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부적격혈액처리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9) 화장품법

『화장품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1건, 화장품 제조업신고 외 신고 4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 기타化妆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보고명령에 위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은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등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화장품 제조업신고·변경신고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의 경우 법상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은 그 신고를 접수 또는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인적 요소로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가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한다.

화장품법 제3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제1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화장품 제조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화장품법』 제6조는 제조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한 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월 미만의 휴업 및 그 업의 재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서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화장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안·진단사실 보고 외 보고의무 2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검안·진단사실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고 생각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따른 감염인 발견 신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2항은 학술연구 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고 생각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감염인 사망신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3항은 감염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고 생각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신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4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 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은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환 경

(1)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11	1	13	환경부	제9433호	2010.1.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	7	1	11	환경부	제8852호	2008.2.29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	·	·	3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	·	·	4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	·	1	2	환경부	제8654호	2007.10.17	
6	대기환경보전법	4	·	12	1	17	환경부	제9695호	2009.5.21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	·	·	·	1	환경부	제9696호	2009.5.21	
8	먹는물관리법	1	3	31	1	36	환경부	제8952호	2008.9.22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	·	0	환경부	제9037호	2009.1.1	해당 사항 없음
10	소음·진동관리법 ¹¹⁶⁾	2	·	5	1	8	환경부	제9770호	2010.7.1	
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5	1	1	8	환경부	제9772호	2009.12.10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	0	환경부	제8371호	2007.4.11	해당 사항 없음
13	수도법	1	·	8	1	10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116)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은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법률 명칭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개정되어 2010. 7. 1.자로 시행 중임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11	1	12	환경부	제9697호	2009.5.21	
15	습지보전법	·	·	·	1	1	환경부	제8958호	2008.6.22	
16	악취방지법	1	·	2	1	4	환경부	제8957호	2008.3.21	
17	야생동·식물보호법	1	·	7	1	9	환경부	제8733호	2008.9.22	
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	·	·	3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1	12	1	14	환경부	제8951호	2008.6.28	
20	자연공원법	·	·	1	·	1	환경부	제9313호	2008.12.31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1	자연환경보전법	·	·	·	·	0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4	·	1	5	환경부	제9685호	2009.11.22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1	5	1	7	환경부	제9433호	2010.1.1	
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9	·	1	11	환경부	제9433호	2010.1.1	
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	·	·	0	환경부	제8612호	2008.2.4	해당 사항 없음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	1	1	환경부	제10030호	2010.2.4	
27	토양환경보전법	·	2	4	1	7	환경부	제8469호	2007.11.18	
28	폐기물관리법	·	1	18	1	20	환경부	제8789호	2008.12.22	
2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	2	1	5	환경부	제8852호	2008.2.29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0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31	하수도법	·	·	16	1	17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	·	·	4	환경부	제9758호	2009.12.10	
33	한국환경공단법	·	·	·	·	0	환경부	제9433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3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	·	·	0	환경부	제9433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3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	·	·	0	환경부	제9433호	2010.1.1	해당 사항 없음
36	환경교육진흥법	·	·	·	·	0	환경부	제8949호	2008.9.22	해당 사항 없음
3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	1	3	환경부	제9685호	2009.11.22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	·	·	·	0	환경부	제9774호	2009.12.10	해당 사항 없음
39	환경보건법	·	·	·	1	1	환경부	제8946호	2009.3.22	
4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1	2	3	환경부	제9590호	2009.7.1	
41	환경분쟁조정법	·	·	·	·	0	환경부	제8955호	2008.9.22	해당 사항 없음
42	환경영향평가법	1		1	2	4	환경부	제9037호	2009.1.1	
43	환경정책기본법	·	·	·	·	0	환경부	제9037호	2009.1.1	해당 사항 없음
	계	18	43	157	27	245				

(2) 환경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¹¹⁷⁾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외 신고 10건, 총 1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i’)의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i)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 ii)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iii)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iv)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v)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2조 제1항),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117) 환경부 소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악취방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고·신고현황은 별책 부록 참조.

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5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중요사항이 아닌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가축분뇨 방류신고(=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이러한 신고를 ‘비정상운영신고’라 부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비정상운영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다만,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가축분뇨 관련영업 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i) 영업소의 명칭 변경, ii) 운반차량의 변경, iii)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iv) 대표자 변경, v)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vi)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2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i) 영업소의 명칭 변경, ii) 기술요원의 변경, iii) 대표자의 변경, iv)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v)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을 들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35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설계·시공업자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营业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조는 营业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나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입법태도에 비추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경우 허가받도록 할 취지는 아닌 바, ‘허가받거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1건, 중간처리업자 자본금, 경영상태 등 보고(신고) 외 보고 2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신고 외 신고 6건 총 11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건설폐기물법』 제34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보고·자료제출의 무자로서의 ‘관계인’과 그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은 보고·자료제출의무자로서의 ‘관계인’으로 i) 배출 신고자, ii)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iii) 배출자를 명시하고, 배출신고자의 경우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 수집·운반업자의 경우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를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i)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

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ii)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은 이상에서 언급한 보고서의 제출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설폐기물법」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의무의 상대방, 그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고·자료제출의무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중간처리업자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 신고

「건설폐기물법」 제14조 제3항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에 같은 조 각호 상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고’라고 할 것이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변경신고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1항은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고 내지 자료제출이라 할 것이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들 의무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

『건설폐기물법』 제27조 제3항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건설폐기물법』 제28조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지위승계신고

『건설폐기물법』 제31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건설폐기물법』 제3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제재의 상한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

3)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1건, 환경영향평가

조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보고 1건, 정수기 제조업 신고 외 신고 30건, 취수량 측량결과 제출 외 자료제출 2건, 총 36건의 보고·신고 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먹는물관리법』 제42조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샘플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 48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 조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보고

『먹는물관리법』 제15조는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조사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경등록사항은 ‘대표자나 상호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은 조사대행자에게 등록사항 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보고의무를 조사대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고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정수기제조업신고·변경신고, 정수기수입판매업신고·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4항은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정수기 제조업신고·정수기 수입판매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법 제46조 제1항),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수기 제조업변경신고·정수기 수입판매업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법 제46조 제1항),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신고의무 위반과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형벌의 제재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④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수처리제조업·정수기제조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가벼운 등록사항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휴업·재개업·폐업·가벼운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먹는샘물제조업·수처리제조업·정수기제조업 지위승계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먹는샘물·수처리제·용기 수입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수입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처리제·용기수입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지정검사기관 중요사항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정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법 제43조 제6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취수량 측정결과 제출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3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은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 제1항)을 발할 수 있고,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 제출

『먹는물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먹는물관리법』은 측정결과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법 제48조 제1항)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소음·진동관리법¹¹⁸⁾

『소음·진동관리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인증시험 결과보고 외 보고 1건, 배출시설 설치신고 외 신고 4건, 총 8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i) 사업자, ii)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iii) 법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iv) 자동차제작자, v) 확인검사대행자, vi) 소음발생건설품체 제작자등, vii)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에게 보고를 명

118)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은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법률 명칭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개정되어 2010. 7. 1.자로 시행 중인바, 이 보고서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분석함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인증시험 결과보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인증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도록 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 명령(법 제17조),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법 제18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특정공사 사전신고·중요사항 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0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제작차 인증 관련 권리·의무 승계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즉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 규정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 곧바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같은 법 제10조의 경우에도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수도법

『수도법』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건,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결과 등 보고 1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경미한 행위신고 외 신고 8건, 총 11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수도법』 제66조 제1항은 “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법 제63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7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결과 등 보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i) 수질검사의 개요, ii)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iii)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iv)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9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의무, 수량분석 실시의무, 검사시설 설치의무, 기록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직접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환경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그 직접적인 근거는 법률에 두고, 보고방법·절차 등만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경미한 행위신고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¹¹⁹⁾인 경

119)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우에는 신고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신고

『수도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ii)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사실, ii)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¹²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법 제63조 제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7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저수조청소업 신고·변경신고

『수도법』 제34조 제1항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5.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120) 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신고기한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있다.

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법 시행규칙』은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수도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명령(법 제35조 제1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수도법』 제34조 제2항은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7조 제3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되어 있다.

⑦ 전용상수도 인가사항 변경신고

『수도법』 제52조 제1항은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고양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러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⑧ 전용상수도 휴지·폐지신고

『수도법』 제52조 제3항은 전용상수도의 설치자가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고양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수질오염사고 보고(신고) 1건, 배출신고 설치신고 외 신고 9건, 총 12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i) 사업자, ii) 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iii)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iv)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v)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수질오염사고 보고(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 또는 정보제공적 신고, 사실행위로서의 신고라 할 것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변경허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이외의 변경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법 제42조 제1항),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법 제4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의 경우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두고 있는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그 상한이 높은 측면이 있다.

④ 배출시설·방재시설 가동신고/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재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재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법 제42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의 경우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두고 있는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그 상한이 높은 측면이 있다.

⑤ 환경기술인 임명신고·개입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과 방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

도록 의무지우고,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2조 제1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i)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ii)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iii)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i)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ii)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iii)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iv)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본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기타 수질오염원¹²¹⁾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본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외 자료제출 3건, 총 5건의 보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i)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ii)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iii)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iv)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v)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vi)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

121) 기타 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산자, vii)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viii)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ix) 법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x)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xi) 법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의 상대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재활용의무결과보고서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계획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1조 제2항)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전년도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에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을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해의 산출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전년도 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바,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직접적 근거 없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매년 인적·물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침해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산 립

(1)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	1	.	2	산림청	제9962호	2010.1.25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9401호	2009.1.30	
3	사방사업법	.	1	.	.	1	산림청	제9176호	2008.12.26	
4	산림기본법	산림청	제9723호	2009.5.27	해당 없음
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10116호	2010.3.17	
6	산림보호법	.	.	1	.	1	산림청	제10250호	2010.4.12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5	.	7	산림청	제10250호	2010.4.12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	산림조합법	·	·	·	·	·	산림청	제8980호	2008.3.21	해당 없음
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	·	산림청	제10026호	2010.2.4	해당 없음
10	산지관리법	·	5	4	·	9	산림청	제9722호	2009.5.27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1	2	·	3	산림청	제9960호	2010.1.25	
1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	3	·	4	산림청	제9763호	2009.6.9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	·	·	산림청	제9177호	2008.12.26	
1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	·	·	·	산림청	제8852호	2008.2.29	
	계	1	10	16	0	27				

(2) 산림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신고 5건, 보고 및 자료제출 2건 등 총 7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① 산림경영계획의 신고

법률 제14조제3항은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사항이지만, 인가받은 계획을 대리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인가사항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단순신고로 보이지만, 시행규칙에 신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행정청이 그 요건의 적적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미신고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은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종묘생산업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16조 제1항 후단과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등록에 따른 변경도 등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위법

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신고로 규정하는 것을 입법체계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연기신고

시행규칙 제44조 제6항은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예외적 입목벌채에 대한 신고

법률 제36조 제4항은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신고행위

법률 제19조제5항은 채종림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 입목·죽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채취, ㉢ 가축의 방목(放牧), ㉣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서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보고 및 자료제출

법률 제67조 제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 종묘생산업자,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사업법인, ㉣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 녹색사업단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필요자료제출

법률 제33조는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산지관리법

이 법률은 신고 4건, 자료제출 5건 등 총 9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① 경미사항 변경신고

법률 제14조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산지전용신고 및 변경신고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토사채취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25조제2항은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법률 제30조 제1항은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은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은 채석신고를 한 자가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평가자료제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평가자료제출

법률 제29조 제2항은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평가자료제출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1. 공정거래 관련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3	1	·	8	공정거래 위원회	제8630호	2008. 2. 4.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	6	·	9	공정거래 위원회	제9554호	2009. 7. 1.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3	5		9	공정거래 위원회	제10171호	2010. 3. 22.	
4	소비자 기본법	5	4	·	1	10	공정거래 위원회	제10170호	2010. 3. 22.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	·	·	1	공정거래 위원회	제8979호	2008. 3.21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	·	·	1	공정거래위원회	제10169호	2010.3.22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3	3	·	7	공정거래위원회	제10172호	2010.3.22	
8	제조물책임법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제6109호	2002. 7. 1	해당 없음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1	·	3	공정거래위원회	제10167호	2010.3.2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1		·	3	공정거래위원회	제9616호	2009.4.1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제9084호	2008. 9.29	해당 없음
	계	16	18	16	1	51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 신고 현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등록에 대한 변경신고 1건, 보고 4건, 자료제출 3건 등 총 8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정보공개서 등록의 변경신고

법률 제6조의2제1항단서, 시행령 제5조의2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자유통약의 심사요청 서류제출

시행령 제16조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는 자유통약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한 서면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유통약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회의결과 보고

법률 제19조 제4항은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협의회 회의에 관계 자료제출

법률 제19조 제6항은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 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조정에서의 관계 서류 보고

법률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자료제출 요구

법률 제23조제5항은 협의회는 당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결과 보고

시행령 제25조는 협의회는 법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주소 등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사무보고

법률 제40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신고 5건, 자료제출 3건, 보고 1건 등 총 9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의 자료제출 요청과 요구에 관한 것으로 내부적 보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자료제출 요청

법률 제3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5조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

법률 제8조의2 제7항, 시행령 제15조의6는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기업결합의 신고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8조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③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①-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법률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채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채무보증현황 신고

법률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신고

시행령 제32조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입찰관련 정보제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법률 제55조의6 제4항, 시행령 제64조의3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

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5건의 신고, 3건의 자료제출, 1건의 보고 등 총9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제도는 방문판매의 사업특성상 주로 규제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신고가 아닌 수리가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자료제출 3건은 통계적 측면의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보고 1건은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제출용 보고에 해당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법률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6·7·8조, 시행규칙 제6조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률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4항, 시행규칙 제7조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영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

법률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5항, 시행규칙 제8조는 그营业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营业을 재개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변경신고

법률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법률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3조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자료제출

법률 제13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20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공제조합의 보고서 제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은 공정위원회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시정권고 시정초치명령 보고

법률 제40조, 시행령 제48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법률 제3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게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소비자 기본법

이 법률은 5건의 보고, 5건의 자료제출 등 총 10건의 보고·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법률 제47조, 시행령 제34조·35조·36조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는 전자적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

시행령 제36조는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해정보 제출요청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시정계획서 제출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시정조치 결과보고

시행령 제38조 제6항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위해정보 분석결과보고

법률 제52조 제2항은 소장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안전센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해정보 제출요청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를 할 때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해정보 보고

시행령 제39조 제5항은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검사·보고 및 자료제출

법률 제77조 제1항, 시행령 제6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법률 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65조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우 광범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의 부담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3. 지식경제 관련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지식경제부	제9495호	2009.3.18	해당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552호	2009.3.25	해당 없음
3	계량에 관한 법률	2	2	·	·	4	지식경제부	제9496호	2009.3.18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	6	·	8	지식경제부	제9679호	2009.5.21	
5	광산보안법	1	1	4	·	6	지식경제부	제9506호	2009.3.18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	·	1	·	4	지식경제부	제9010호	2008.3.28	
7	광업법	1	2	6	·	9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해당 없음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9	국가표준기본법	·	·	·	·	·	지식경제부	제9590호	2009.4.1	해당 없음
10	기술개발촉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630호	2009.4.22	해당 없음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	·	·	·	1	지식경제부	제9582호	2009.4.1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9980호	2010.1.27	
1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1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881호	2009.12.30	해당 없음
15	대외무역법	2	3	1	·	6	지식경제부	제9630호	2009.4.22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3	·	·	3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332호	2009.1.7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8	대한석탄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19	도시가스사업법	4	3	11	2	20	지식경제부	제9533호	2009.3.25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	1	·	1	지식경제부	제9685호	2009.5.21	
2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9708호	2009.5.22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1	·	·	2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2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	3	2	·	6	지식경제부	제9884호	2009.12.30	
24	별정우체국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2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2	·	·	5	지식경제부	제9583호	2009.4.1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	·	·	1	지식경제부	제10230호	2010. 4.15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500호	2009.3.18	
2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9687호	2009.5.21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	1	·	3	지식경제부	제9368호	2009.1.30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31	산업디자인진흥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9688호	2009.5.21	
32	산업발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1	11	·	14	지식경제부	제9626호	2009.4.22	
34	산업표준화법	2	2	1	·	5	지식경제부	제9535호	2009.3.25	
35	상공회의소법	·	·	·	·	·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	·	4	·	8	지식경제부	제10246호	2010.4.12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7	석탄산업법	1	·	3	·	4	지식경제부	제9774호	2009.6.9	
3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1	2	·	3	지식경제부	제10012호	2010.2.4	
39	송유관 안전관리법	·	·	3	·	3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40	수출보험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617호	2009.4.1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3	·	·	3	지식경제부	제10253호	2010.4.12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	6	·	8	지식경제부	제9534호	2009.9.26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929호	2010.2.8	해당 없음
44	에너지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4.14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3	7	·	11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4.14	
4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1	·	1	·	2	지식경제부	제9502호	2009.3.18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4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1	4	·	6	지식경제부	제9503호	2009.3.18	
48	외국인투자 촉진법	1	·	8	·	9	지식경제부	제9774호	2009.6.9	
4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401호	2009.1.30	
5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375호	2009.1.30	해당 없음
5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	·	·	지식경제부	제9628호	2009.4.22	해당 없음
52	우편대체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10126호	2010.3.17	
53	우편법	·	·	1	·	1	지식경제부	제9636호	2009.4.22	
54	우편환법	·	·	·	·	·	지식경제부	제10125호	2010.3.17	해당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5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	·	7	·	8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56	유통산업발전법	1	2	2	·	5	지식경제부	제9774호	2009.6.9	
5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	1	·	·	1	지식경제부	제9685호	2009.5.21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	7	·	10	지식경제부	제9780호	2009.6.9	
5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2	3	·	·	5	지식경제부	제9685호	2009.5.21	
6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61	전기공사법	3	1	4	·	8	지식경제부	제9680호	2009.5.21	
62	전기사업법	1	3	7	·	11	지식경제부	제9680호	2009.5.21	
6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	1	1	·	3	지식경제부	제9535호	2009.3.25	
64	전력기술관리법	·	4	5	1	10	지식경제부	제9680호	2009.5.21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65	전시산업발전법	1	1	·	·	2	지식경제부	제10027호	2010.2.4	
66	전원개발촉진법	·	1	3	·	4	지식경제부	제9376호	2009.1.30	
67	전자거래기본법	1	1	5	·	7	지식경제부	제9708호	2009.5.22	
6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	1	·	1	지식경제부	제9705호	2009.5.22	
6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1	2	·	3	지식경제부	제9981호	2010.1.27	
7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	·	·	·	1	지식경제부	제9885호	2009.12.30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	7	·	·	9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해당 없음
73	집단에너지사업법	·	1	6	·	7	지식경제부	제9933호	2010.1.18	
74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 관한법률	·	·	·	·	·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7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	·	2	지식경제부	제10029호	2010.2.4	
7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	·	2	·	5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77	한국가스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9763호	2009.6.9	해당 없음
7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9182호	2008.12.26	해당 없음
79	한국석유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9681호	2009.5.21	해당 없음
80	한국전력공사법	·	·	·	·	·	지식경제부	제9618호	2009.4.1	해당 없음
8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	·	·	·	지식경제부	제9589호	2009.4.1	해당 없음
8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	2	2	·	6	지식경제부	제9886호	2009.12.30	
8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2	1	1	·	4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제 5 절 공정거래 · 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 · 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 · 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4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	·	·	·	지식경제부	제8852호	2008.2.29	해당 없음
85	화학 · 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3	9	·	13	지식경제부	제9932호	2010.1.18	
8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3	5	·	·	8	지식경제부	제9931호	2010.1.13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1	·	·	1	지식경제부	제9686호	2009.5.21	
	계	64	90	151	3	308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계량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자료제출 2건과 보고 2건 등 총 4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보고 2건의 경우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출의 경우, 수입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조치로서의 자료제출이 아니라 신고 등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 제작·수입 서류제출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제출은 원칙금지 규정에 예외에 대한 허용시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신고에 준하는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2)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법률 제34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제38조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3) 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시행령 제29조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보고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어 위임위반으로 판단된다.

4) 협회에 대한 보고

시행령 제31조는 한국계량측정협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① 사업계획 및 실적, ②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 역시 법률에 구체적인 보고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보고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 법률은 신고 6건과 자료제출 2건 등 총 8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고압가스 제조신고

법률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2) 제조신고 변경신고

법률 제4조 제2항단서, 시행규칙 제4조는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사업의 개시·중단·폐지신고

법률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7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중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승계신고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제6조에 따른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안전관리규정 제출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는 사업자들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에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는 사업자들은 허가관청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또는 사무소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 설치·이전·변경시 변경계획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자

료비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 사용신고

법률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46조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수입신고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49조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광산보안법

이 법률은 신고 4건, 보고 1건, 자료제출 1건 등 총 6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신고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3조의3·제33조의4,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사착수일 20일 이전에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공사완료 또는 시설폐지의 신고

승인을 얻은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보안관리직원 선임·해임신고

법률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36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대리자 선임신고

법률 제13조 제5항, 시행규칙 제37조는 관리직원이 여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후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다.

5) 광산보안사항 보고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광산보안 중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사건 발생시),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공사착수전),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위

험발생시)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광산보안도의 작성 제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46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이를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신고 1건과 보고 3건 등 총 4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 신고

법률 제13조 제2항단서, 시행규칙 제6조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

법률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는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¹²²⁾

1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에 관한 절차 및 광해방지사업별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8조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하도록 규정하면서 보관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를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사업추진실적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긴급광해방지사업 보고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9조는 광해방지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사설의 고장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업무 보고

법률 제29조 제1항은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사설의 소유자, 그 시설의 설치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도시가스사업법

이 법률은 보고 4건, 자료제출 3건, 신고 11건 및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 2건 등 총 20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사업승계신고

법률 제7조 제3항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서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시행규칙 제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 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의 개시·휴업·폐업신고

법률 제8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1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업의 개시·휴업·폐업신고

법률 제10조의4 제2항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 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계약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10조의5 제2항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제출(시행규칙 제10조의9)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신고

시행령 제6조제3항은 법률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신고에 관한 사항은 절차와 방법을 위임하고 있지만, 신고와 같은 규제적 성격의 행정행위는 법률에 그 구체적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11조제2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의제를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11조제6항은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의제를 위한 첨부서류의 제출이라는 점에서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구별된다.

8) 사실신고

법률 제11조의2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법률 제14조제1항은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

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완공도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공급계획 제출 및 보고

법률 제18조제1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조치사항 보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21조제1항)하고 있는 바,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조사적 성격의 보고에 해당한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관리규정의 제출

법률 제26조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 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관리자의 선임신고

법률 제29조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3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평가서 제출

법률 제30조의4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0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39조의2제2항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수급계획제출

법률 제39조의4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39조의8제3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3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39조의8제4항은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3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필요보고

법률 제41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

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②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③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④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조사적 성격의 보고에 해당한다.

(6) 전기사업법

이 법률은 보고 1건, 자료제출 1건, 신고 7건,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 2건 등 총 11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필요보고

법률 제96조의2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개시신고

법률 제9조제3항은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8조제2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계획신고

법률 제26조는 전기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8조제2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경미사항 변경신고

법률 제61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공사신고

법률 제61조제4항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공사 및 변경신고

법률 제62조제2항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법률 제73조의2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8조제2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업무대행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73조의5제1항제3호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08조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22조제2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이다.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8조제1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법률 제73조의8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8조제1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의 자료제출이다.

(7) 전력기술관리법

이 법률은 신고 5건, 자료제출 4건,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1건 등 총 10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보고·검사

법률 제23조제1항전단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명령에 해당한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30조제1항제5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배치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법률 제12조의2제2항은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30조제2항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¹²³⁾는 변경신고를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

123)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한 입법방식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양수·합병신고

법률 제16조의2는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양수(양수)하려는 경우, ②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9조제9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법률 제17조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30조제1항제4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경력신고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이나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실확인을 위한 보고적 성격의 신고에 해당하지만 자료제출의 근거규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식이 아니며,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행령 제27조제5항은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식일 것이다.

7) 완료보고서의 제출

법률 제12조의2제3항은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②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지정 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③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 전망, ⑤ 그 밖에 기술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을 위한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9) 활용실적 제출

시행규칙 제6조는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활용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 활용

실적서에 ①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 신기술을 활용한 공사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 제출을 위한 세부내역으로서의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10) 평가결과제출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은 시험시공을 한 발주자와 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금융 관련 총괄표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 · 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	공사채등록법	·	·	·	1	1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2	공인회계사법	·	1	5	·	6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4	3	·	·	7	금융위원회	제9742호	2009.7.28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	1	·	·	2	금융위원회	제10061호	2010.3.12	
5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	·	·	금융위원회	제10042호	2010.2.4	해당 없음
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	1	1	·	4	금융위원회	제9703호	2009.6.1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6	2	·	10	금융위원회	제10066호	2010.3.12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7	·	·	8	금융위원회	제9324호	2008.12.31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	·	·	1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1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1	1	·	·	2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3.22	
11	금융지주회사법	17	3	4	·	24	금융위원회	제9788호	2009.12.1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5	1	·	6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	·	·	1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	3	3	·	8	금융위원회	제9584호	2009.5.8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1	·	·	1	금융위원회	제10064호	2010.3.12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	·	·	·	1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17	담보부사채신탁법	1	·	4	·	5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1	4	·	8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19	보험업법	6	8	11	·	25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10.2	
20	상호저축은행법	3	2	1	·	6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21	신용보증기금법		1			1	금융위원회	제9685호	2009.5.21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3	3		8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4.1	
23	신용협동조합법	2	1	·	·	3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24	여신전문금융업법	5	4	2	·	11	금융위원회	제9932호	2010.1.18	
25	예금자보호법	1	1			2	금융위원회	제9406호	2009.2.3	
2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	·	금융위원회	제10045호	2010.2.4	해당 없음
27	은행법	10	7	1		18	금융위원회	제9784호	2009.6.9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34	10	·	76	금융위원회	제10063호	2010.3.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	·	2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4.1	
30	전자금융거래법	2	5	·	·	7	금융위원회	제9325호	2008.12.31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4	·	·	9	금융위원회	제9408호	2009.2.3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4	·	·	4	금융위원회	제10044호	2010.2.4	
33	중소기업은행법	·	·	·	·	·	금융위원회	제10065호	2010.3.12	해당 없음
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	·	·	2	금융위원회	제10043호	2010.2.4	
35	한국산업은행법	·	·	·	·	·	금융위원회	제9401호	2009.1.30	해당 없음
3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	·	·	·	금융위원회	제9741호	2009.5.27	해당 없음

제 5 절 공정거래 · 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 · 신고제도

순번	법 률 명	보고	자료(보고서 · 계획서, 평가서, 정보) 제출	신고	행정조사적 보고/자료 제출 등	합계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비고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	·	·	금융위원회	제9969호	2010.1.25	해당 없음
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	·	금융위원회	제8863호	2008.2.29	해당 없음
3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1	·	·	1	금융위원회	제9617호	2009.4.1	
	계	106	111	52	1	270				

6. 금융분야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1) 금융지주회사법

이 법률은 보고 17건, 자료제출 3건, 신고 4건 등 총 24건의 보고·신고 관련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사실보고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변경신고 및 경미사항 보고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금융지주회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필요사항 보고

법률 제8조제2항은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승인사실보고

법률 제8조의4제3항은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변경사실보고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편입신고

법률 제18조제1항은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사실보고

법률 제21조제1항은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편입신고

법률 제24조제2항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편입신고

법률 제30조제2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사실보고

법률 제34조제6항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②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③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취득보고

법률 제34조제7항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거래보고

법률 제34조제8항은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37조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4) 미승인사항의 보고

법률 제39조제4항본문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

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검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임면사실보고

법률 제41조의5제7항은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신용공여보고

법률 제45조의2제5항은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사실보고

법률 제45조의3제4항은 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자료제출요구

법률 제45조의5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미승인사항 보고

법률 제47조제2항 본문은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는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②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③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업무지침서 보고

법률 제48조의2제5항은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검사를 위한 보고·자료제출

법률 제51조제2항과 제51조의2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업무보고서 제출

법률 제54조제1항은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3) 보고사항

법률 제61조는 금융지주회사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상호를 변경한 경우,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업법

1) 사실보고

법률 제74조제2항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① 합병·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②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③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업법상의 신고사항

법률 제93조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①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②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③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④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⑤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⑦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⑧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⑤의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⑥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①-⑧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3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 209조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항보고

법률 제111조제3항은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②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③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항의 미보고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항의 미보고에 대하여는 별칙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사항보고

법률 제111조제4항은 보험회사는 매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말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1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자회사 소유신고

법률 제115조제1항단서는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①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② 보험수리업무, ③ 손해사정업무, ④ 보험대리업무, ⑤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⑥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경영컨설팅 업무, ⑦ 보험업과 관

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⑧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⑨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제공업무, ⑩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⑪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⑫ 건강, 장묘, 장기간병,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업무, 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업무, ⑭ 외국에서 영위하는 보험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집합투자업, ⑮ 그 밖에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보고를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117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① 정관, ②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③ 주주현황, ④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⑤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등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17조제2항은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② 자회사와의 주요거래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재무제표와 보고서 제출

법률 제118조제1항은 보험회사는 매년 3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18조제2항은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때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1항)에 처하고,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이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정관변경신고

법률 제126조는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기초서류변경의 신고와 변경내용 제출

법률 제127조제1항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중

료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고사항

법률 제130조는 보험회사는 ①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③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때, ④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⑤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⑥ 그 밖에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 법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때,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209조제2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보고 및 자료제출

법률 제133조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항은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정리계획서의 제출

법률 제155조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법률 제162조는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제2항제2호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제 1 절 보고·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분석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보고·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이 행정입법에 의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이러한 보고·신고제도는 법률로 규율하거나 또는 법률에 명시적인 수권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연구분야별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된 보고·신고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기술 관련 법제

교육·기술관련 법제분야는 주로 학교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영업 등의 신고와 관련된 규제보다는 주로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이 많이 규율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1) 관련 조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고등교육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후 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기초로 하위법에서 행정처분적 성격의 보고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위탁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위임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1) 관련 조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p>제 9 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강제요청 규정이 있는 자료제출은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강제요청규정은 보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요건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2. 국토·해양 관련 법제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수의계약 대상 물량 등 신고’

1) 관련조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 6 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p>	<p>제 8 조(분양계약서) ① (생략)</p>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모집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분의 규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의계약을 할 대상 물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2) 검토의견

‘건축물의 분양방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 제6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분의 규모 등이 다음 각 호¹²⁴⁾의 어느 하나에

1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i) 최초 분양신고면적(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ii) 분양신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의 계약을 할 대상 물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분양을 인정하면서 법률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신고의무를 시행령에서 비로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신고’는 명칭은 신고이나 그 법적 성격은 보고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보고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있어서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린다는 점, 분양권자에게 법률에 근거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등에서도 수의계약제도와 보고의무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관련조문

건축법 시행규칙
<p>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생략)</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iii)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2)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12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의 수권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등 국민에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의 수권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건축사보 변경신고’

1) 관련조문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	-----------

125)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를 말한다.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p>제 6 조(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생략) ②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2 조(건축사보의 신고등) ①『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p>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건축사법』 제7조제2항은 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건축사보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수권하지 아니한 건축사보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건축사보 신고의무와 마찬가지로, 변경신고의무 역시 법률 차원에서 부과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규칙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재적 행정처분 조치 전에 체결한 계약 현황 보고’

1) 관련조문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p>제11조(자격의 취소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삭제</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p>	<p>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p>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고의무자에게 취소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결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고의무부과의 근거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골재채취 분기별 현황보고’

1) 관련조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p>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2) 검토의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 허가업자 및 신고업자에게 분기별 골재채취 현황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근거가 필요한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발계획 변경보고’

1) 관련조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p>	<p>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검토의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변경보고 기일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발계획 변경보고’

1) 관련조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p>제1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p>③~④ (생략)</p> <p>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p>	<p>제23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 및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p>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방식을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에 덧붙여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약방식 이용의무 부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승인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보고’

1) 관련조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p>제1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p>③~④ (생략)</p> <p>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 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역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면서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시행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법률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변경보고 기일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결과 제출’

1) 관련조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를 지체없이</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바,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시행결과 제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분기별 사업시행 결과 제출’

1) 관련조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당해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바,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분기별 시행결과 제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개발사업대행 계약체결 보고’

1) 관련조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생략) <p>③~④ (생략)</p> <p>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p>	<p>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2) 검토의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방식을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방식 이용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에 덧붙여 계약방식 이용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발사업 대행 보고’

1) 관련조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7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각호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검토의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통하여 대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더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대행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신청인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이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체결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계약방식 이용의무 및 보고의무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행령 차원에서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법례와는 달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대행 이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 방식 및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신탁 계약 체결 서류 제출’

1) 관련조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중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p>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 (생략)

2) 검토의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i) 위치도, ii) 사업계획서, iii) 자금조달계획서, iv)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바, 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부과 자체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조문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선안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선안
<p>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14)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선박의 계선
기간 및 계선사유 관련 서류 제출’

1) 관련조문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p>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선박 	<p>제 2 조(적용제의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각목 생략) 	<p>제 7 조(산업단지의 선박개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검토의견

『선박안전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법 적용 제외 선박을 i) 군함 및 경찰용 선박, ii)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i)’ 및 ‘ii)’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i)’ 및 ‘ii)’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해당 선

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15) 선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채권, 채무의 상계보고’

1) 관련조문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p>제20조의2(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채권, 채무의 상계보고) 선박소유자는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선원법』 제33조 본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단서는 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보고의무부과 자체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조문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선안
<p>선원법 시행규칙 제18조(채권, 채무의 상계 보고) 선박소유자는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16)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보고’

1) 관련조문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p>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생략)</p>	<p>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증감 3. 발전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사업 면적의 변경 4. 6개월의 범위에서 개발사업 시행 기간의 변경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검토의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제14조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실시계획의 변경 역시 실시계획의 승인시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면서,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법률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나 도지사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변경보고 기일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 신고’

1) 관련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자동차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양수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p>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p> <p>③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이 변경된 경우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2) 검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이라는 조명 하에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함),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신고 등 법적 성격이 다른 다수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역시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i)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ii) 법인의 임원, 무한책

임사원 또는 정관이 변경된 경우, iii)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수의 신고의무는 부담적 성격을 갖는바, 그 의무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또 각각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양·수도, 법인합병 또는 해산 등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위승계 여부, 신고방법 및 절차가 중요한바, 지위승계 여부,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수급자 신상변경신고’

1) 관련조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p>제 9 조(변경신고)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2.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p>②~⑤ (생략)</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2) 검토의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수급자 신상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은 수급자 신상변경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신고의무를 수급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보고’

1) 관련조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p>제 8 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p>	<p>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new Health Technology; HT)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대강을 정한 뒤,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제19조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HT 마크)의 사용을, 제20조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제도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전부유보설’에 입각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 사용 내역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 사용 내역 및 실적 등 보고방법, 기한,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126) 고시 제2009-158호, 2009. 8. 25)가 이를 정하고 있다.

126) 『정부조직법』이 2010년 1월 18일자 법률 제9932호(시행 2010. 3.19)로 개정되어 종전의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으나, 2010년 6월 25일 현재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영하여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p>제14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①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HT마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p> <p>② H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H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진흥원장은 이를 익년도 2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가 제14조를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HT마크를 사용하는 등 HT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적발: 시정권고 2.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1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HT마크 사용금지 3. 3차 적발 또는 경고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HT마크 사용정지 <p>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진흥원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를 할 수 있다.</p>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보고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서식과 보고주체만을 더 상세하게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보고방법, 기한, 절차 등’은 빈번한 개정 수요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인 경우로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¹²⁷⁾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수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127)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 현재결 2006. 12. 28. 2005헌바59; 현재결 2004. 10. 28. 99헌바91 등 참조.

게다가 같은 규정 제16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조치는 기업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불이익한 조치이므로 이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규정 제16조 제3항의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위해식품 회수계획 보고’

1) 관련조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p>	<p>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p> <p>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p> <p>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 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p>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생략)</p>

2) 검토의견

『식품위생법』 제45조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이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 한다)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항)라고 규정한 뒤, 회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회수대상식품등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59조는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58조 제2항은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행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만을 놓고 볼 경우 영업자가 회수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보고를 미리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의 법문에 비추어 보면, 영업자가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

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미리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난 후,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또는 “영업자가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 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처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회수계획 보고 → 회수계획의 공표명령 → 회수 → 회수결과 보고”의 순으로 위해식품등 회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과 “회수계획 보고 → 회수계획의 공표명령 → 회수 → 회수결과 보고”의 순으로 위해식품등 회수절차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은 서로 모순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바,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i)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하고, ii)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하고, iii)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반 사실 확인 검사가 회수 절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즉 회수계획 공표를 명하기 전 또는 회수 전에 위반 사실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회수 중 또는 회수 후에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

1) 관련조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p>제 9 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② (생략)</p> <p>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 4 조(아동에 대한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2)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제9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률적 수권 근거 없이 이들에게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 역시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 역시 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시설보호아동 퇴소보고’

1) 관련조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p>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 7 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호) ①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2)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은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보호중인 아동의 퇴소를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법률의 수권 없이 당해 시설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부과의 근거는 적어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시설보호아동 보호기간 연장보고’

1) 관련조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p>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호 생략)</p>	<p>제 7 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호) ① (생략)</p> <p>②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제11조 제2항은 “...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당

해 시설의 장이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부과의 근거는 적어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시설보호아동 보호기간 연장보고’

1) 관련조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p>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호 생략)</p>	<p>제 7 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호) ① (생략)</p> <p>②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제11조 제2항은 “...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당해 시설의 장이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러

한 의무부과의 근거는 적어도 법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료기기 생산실적·수출 실적 보고’

1) 관련조문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p>제12조(제조업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생략)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전년도에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2항은 제조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전년도에의 생산 및 수출실적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여 보고기한만을 정하고 그 나머지 사항을 행정규칙인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비추어 고시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치과기공소
 개설장소 폐업신고·변경신고·지도치과의사 변경신고’

1) 관련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 2 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③ (생략)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5 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생략)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p>

2) 검토의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폐

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기공소개설자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로 정하거나 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매우 후진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감독 행정청에게 치과기공소개설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치과기공소 양수신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안경업소 양수신고’

1) 관련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수신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양수자에게 양수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양수신고는 안경업소 양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1) 수도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결과 등 보고’

1) 관련조문

수도법	수도법 시행규칙
<p>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 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p>	<p>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p>

수도법	수도법 시행규칙
<p>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i) 수질검사의 개요, ii)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iii)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iv)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9조 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9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의무, 수량분석 실시의무, 검사시설 설치의무, 기록 작성·보존의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직접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환경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할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그 직접적인 근거는 법률에 두고, 보고 방법·절차 등만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년도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1) 관련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	제 14 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 22조제2항 본문에 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에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생략)</p>	<p>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2) 검토의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에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을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해의 산출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전년도에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바,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직접적 근거 없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매년 인적·물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침해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보고·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입법권의 행사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의 내용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증할수록,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보다 명확한 수권이 요구되며,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보다 그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¹²⁸⁾

이와 관련하여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¹²⁹⁾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에 있어서도 그 수범자인 국민 또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의 의무자,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받는 자, 보고방법·기한·절차 등이 법률 또는 적어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수조사의 결과 법적 근거가 존재하더라도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의 의무자,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받는 자, 보고방법·기한·절차 등이 법률 또는 적어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128) 헌재결 2003. 7. 24, 2002헌바82.

129) 헌재결 2007. 10. 4, 2006헌바91; 헌재결 2005. 3. 31, 2003헌바12.

한편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의무를 이행할 때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양식이나 첨부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비용의 절감,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인바, 향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일괄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의무를 이행할 때 각종 영업허가증·신고증, 자격증 등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민·기업 등에게 번거로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그 첨부를 면제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연구분야별로 보고·신고 대상, 방법, 기한, 절차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시행결과 제출’

1) 관련조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2) 검토의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에 의무부과의 근거 둘 필요가 있고, 결과제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도시철도법 제4조 ‘도시철도사업 양도·합병신고’

1) 관련조문

도시철도법
<p>제 4 조(사업면허 등) ①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2) 검토의견

『도시철도사업법』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와 합병은 각각 상이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고사항 역시 상이하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사업법』상 운임 결정신고·변경신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3) 항만법 제24조 제1항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1) 관련조문

항만법
<p>제24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2) 검토의견

『항만법』 제24조 제1항은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운송약관신고·변경신고’

1) 관련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제 6 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p>	<p>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p> <p>제28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은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p> <p>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p>	<p>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p> <p>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2) 검토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지는 아니하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제외한 운송약관신고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운송약관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반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손사업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준용된다는 측면에서 신고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 사용내역 보고’

1) 관련조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p>제18조 (자활공동체) ①·② (생략)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p>제26조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p>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의2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p>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2) 검토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는 수급자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위에 부수하는 보고의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고의무의 직접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피보고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해석상 보장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같은 조 제5항에서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보고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바, 가급적 이를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다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고기한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정규칙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

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빈번한 개정 수요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인 경우로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¹³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약사법 제7조 ‘약사·한약사 신고’

1) 관련조문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p>제 7 조 (약사·한약사 신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4 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①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신고의 내용·방법·기간,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개시 6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경우에만 행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신 학교 및 졸업연월일 2.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번호 3. 취업현황

2) 검토의견

『약사법』 제7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130)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 현재결 2006. 12. 28. 2005헌바59; 현재결 2004. 10. 28. 99헌바91 등 참조.

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같은 법 제7조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신고의 내용·방법·기간,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개시 6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한정하면서, i)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ii)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번호, iii) 취업현황이 신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특정한 경우에만 약사 또는 한약사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사 또는 한약사 신고의무가 일상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항만을 볼 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의료기기법 제40조 제1항 ‘지위승계신고’

1) 관련조문

의료기기법
<p>제40조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①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p> <p>③ 제조업자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등은 해당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p>

2) 검토의견

「의료기기법」 제40조 제1항은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조업자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등은 해당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은 지위승계신고 기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입법불비라 할 것이다.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행정법의 핵심과제인 동시에 행정법학의 최대사명인바,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에 대한 의무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률상 근거를 갖는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은 그 의무부과를 위한 법률 이외에 독자적

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학설이고 확립된 관례이다. 다시 말해, 법률유보는 의무부과와 의무강제 양쪽에 모두 해당된다.¹³¹⁾

전수조사 결과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 법은 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을 부과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¹³²⁾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간접적으로는 이를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의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갖는다. 행정벌은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제재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 즉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개의 형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형벌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개별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질서벌¹³³⁾이다.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행정형벌은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는 것인 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것으로서,¹³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131) 박정훈, 앞의 책, 321쪽.

13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0, 498쪽.

133) 행정질서벌에 관해서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통칙적 규정이 없어 행정 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134) 대법원 1969. 7. 29, 69마400 결정.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목적 침해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제130조에 따라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뿐 아니라 - 행정목적에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에서 - 행정형벌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¹³⁵⁾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양자의 구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즉 최근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정형벌의 부과가 절차상 복잡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 대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해 행정의 주도권이 검찰에 넘겨지고, 형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형벌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래 행정형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되는 과태료는 예외 없이 먼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종래의 행정형벌에서 전환된 과태료가 통설에서 말하는 ‘행정목적에 대한 간접적 침해위험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과태료 액수도 벌금액에 상응하거나 이를 훨씬 상회하여 심지어 억대(億代)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135) 특히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용료 등의 면탈과 공공시설의 부정사용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박정훈, 앞의 책, 339쪽.

직시한다면, 행정목적 침해의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통설은 재검토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¹³⁶⁾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³⁷⁾고 판시하여 종래의 통설의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양자의 구별의 상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최근의 입법례를 감안한다면,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과태료로써 충분히 그 제재목적 달성할 수 있는 행위와 행정목적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³⁸⁾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도 행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벌을 억제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표-2>와 같은 의무위반유형은 가능

136) 박정훈, 앞의 책, 339-340쪽 참조.

137) 헌재 1994. 4. 28, 91헌바14.

138) 박정훈, 앞의 책, 340쪽.

한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¹³⁹⁾

<표-2> 신고·보고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유형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유형		과태료 처분 대상 예외 유형
신고의무 위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 행정질서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사항 ○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 기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형벌로 처벌하여야 할 사항 등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종업원 임면(법정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기타 신고 또는 신청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위반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 등 명령위반, 정기보고 등의 위반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기피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의 위반		

한편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상 행정형벌은 물론 행정질서벌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은 행정벌의 정립권한을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입법은 그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므로(헌법 제75조), 행정벌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처벌의 한도가 법률 자체에 규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실제로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 예컨대, 무허가영업죄에 있어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구체적 종류에 관해 - 법규명령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

139) 법제처, 앞의 책, 500쪽 이하.

나, 처벌의 구성요건 및 형량 자체가 법규명령에 위임된 예는 거의 없다.¹⁴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과벌절차가 다르지만, 다같이 행정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위반사실에 관해 병과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¹⁴¹⁾

그러나 관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 행정형벌을 받는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¹⁴²⁾

이러한 관례는 종래 행정질서벌이 행정형벌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현재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이 상대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타당할 수 없다.¹⁴³⁾ 위반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해당하는 - 잠재적 심판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일반형사벌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⁴⁴⁾

행정벌(형벌·과태료) 외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공급거부, 허가사업의 제한 등의 제재수단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와 관련하여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과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과징금과 같이 형벌(벌금)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먼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과징금을 규

140) 박정훈, 앞의 책, 327-328쪽.

141)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509쪽; 박정훈, 앞의 책, 348쪽.

142) 대판 1986. 6. 13, 88도1983.

143) 박정훈, 앞의 책, 348쪽.

144) 박정훈, 앞의 책 348쪽.

정한 입법례를 제시하고, 행정형벌을 부과하거나 (과다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과다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각 연구분야별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유무, 정도 등과 관련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 제재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행정형벌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형벌로 규정되어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행정질서벌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과다한 보고·신고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문화 관련 법제

(1)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학교폐쇄승인 관련 자료제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등교육법(법 제 6조)	학교규칙보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제60조)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 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3	원자력법	안전사고 발생보고 (법 제89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사고 발생보고 (법 제98조제1항)		
		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103조제1항)		
		조사·평가보고(법 제104조의6제1항)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위협보고(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보고(법 제21 조제1항)		
		결과보고(법제37 조제4항전단)		
		결과보고(법제37 조제5항후단)		
		업무보고 및 자료베 출(법 제44조제1항)		
5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등에 관 한 법률	업무 또는 회계보 고(법 제32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운영 의 신고(법 제14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법 제14조의 2제1항)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복합유통게임제공 법 신고(법 제26조 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거짓 또는 부정신 고(법 제35조제2항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 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8	관광진흥법	경미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단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 설·운영의 개선을 명
		지위승계신고(법 제8조제4항)		
		보고 및 서류제출 (법 제78조제2항)		
		유원시설법 경미 사항 변경신고(법 제5조제3항단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원시설법 신고 (법 제5조제4항)		
9	저작권법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법 제105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의간행물 발행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16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법 제2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 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기술사법	보고·자료제출 (법 제18조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고·자료제출 (법 제21조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고(법 제15조 제1항) 자료제출. (법 제13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보고·자료제출 (법 제30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자료제출 (법 제19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결과보고(법 제10 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제출(법 제16 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우주개발진흥법	경미사항 변경신고 (법 제1조제1항 단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원자력법	보고(법 제9조의 2제6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원자력손해보상법	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16조제1항)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경미사항 신고(법 제9조제1항 단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미사항 신고(법 제20조제1항 단서)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의무상환액 신고 (법 제23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상환액 신고 (법 제27조제1항)		
		의무상환액 신고 (법 제28조제1항)		
		소득발생신고(법 제15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이주계획신고 (법 제20조제1항)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 신고 (법 제21조제1항)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1	평생교육법	폐쇄신고(법 제32조제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생교육 실시신고(법 제33조제2항)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법 제35조제2항)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법 제36조제4항)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법 제37조제3항)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법 제38조제3항)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법 제10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습소 휴소·폐소신고(법 제14조제4항)		
		필요보고(법 제16조제3항)		
1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기술료 징수보고(법 제8조제4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신고(법 제26조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정신고(법 제21조제5항)		
		영업승계신고(법 제29조제4항)		
		필요보고(법 제31조)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조제2항)		
15	공연법	재해대책계획신고(법 제11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명령(법 제33조제1항)
16	관광진흥법	지위승계신고(제8조제4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폐업신고(법 제17조) 영업승계신고(법 제22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대표사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영업신고 및 행정처분규정(제35조제2항)

법률 제26조는 원칙적으로 게임제공업은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있고, 제3항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등록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게임제공업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게임제공업자의 추가영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복규제의 완화에 해당한다. 다만, 그 벌칙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35조에서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등록과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같은 조 제1호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호에서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처분을 함께 규정하면서 제1호와 제2호는 반드시 영업폐쇄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5조 벌칙규정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처벌과 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관광진흥법 제78조제2항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벌칙규정(제83조제7호) 및 행정처분규정(제35조제1항)

이 보고와 자료제출은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로서 행정처분과 벌칙을 동시에 두고 있는 것은 매우 강한 제재에 해당한다. 즉, 단순정책의 수립·집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은 국가인 행정청이 담당하는 업무이며, 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이는 협조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단서 변경신고의 벌칙규정(제83조제1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한 벌칙은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구분하

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의 지위승계신고의 벌칙규정(제83조제2호, 제86조제1항제1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더불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입법형식이라 판단된다.

-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폐업신고의 벌칙규정(제39조제1항제4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업승계신고의 벌칙규정(제39조제1항제7호)

사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입증서류제출), 제17조·제19조(자료제출요청)의 벌칙규정(제39조제1항)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은 강제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8)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와 제10조의4(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의 벌칙규정(제51조, 제54조제3항)

이 법 제51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51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54조제3항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개시·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4조제3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신고의 벌칙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규정하여 매우 과도하게 처벌하는 반면에 후자는 상대적으로 행정벌인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서로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토·해양 관련 법제

(1)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건설업 지위승계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6조)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건축물 분양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조)	
3	『건축법』 제83조 제1항	옹벽, 굴뚝 등 공작물 축조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0조)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 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4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업무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5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변경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	
6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준공확인 전 사용 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2)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개항질서법』 제41조 제1항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200만원 이하(법 제48조)	개선명령(법 제42조)
2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건설기술자 인정 신고	1천만원 이하(법 제43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 정지 (법 제6조의4 제1항)
3	『골재채취법』 제9조	점용·사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500만원 이하(법 제66조 제1항)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4	『교통안전법』 제40조 제1항	일반교통안전진단 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500만원 이하(법 제65조)	
5	『궤도운송법』 제10조 제1항	궤도사업 경영 등 위탁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도선법』 제21조	도선료 신고·변경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입장료 신고·변경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3)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징금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궤도운송법』 제22조 제2항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법 제13조)	
2	『도시철도법』 제4조 제3항	도시철도사업 양도 신고·합병신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3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제1항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4)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 제출의무	이행강제금의 상한	제재적 행정처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고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1억원의 범위 내	

(5) 대표사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 지위승계신고’

① 관련조문

건설산업기본법
<p>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p>

건설산업기본법
가 있는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략)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이하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지위승계형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6조는 이러한 지위승계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법문의 해석상 신고의무자는 양도인, 건설업자인 법인이라 할 것인데, 행정형벌 부과 상대방은 양수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어서 행위의무자와 형벌부과의 상대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형벌의 정도 역시 일반적인 지위승계신고 위반에 관한 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사업자의 자본금변경, 인력변경 보고’

① 관련조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p>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p>제24조 (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p>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생략)</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이하 생략)

② 검토의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i)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ii)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변경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제36조),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행정형벌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40조). 이상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9>와 같다.

<표-9> 등록사업자의 자본금변경, 인력변경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행위의 내용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벌	관련 법 조문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제1항 제2호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5조 제2항 제4호

행위의 내용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벌	관련 법 조문
--------	----------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최근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감안한다면,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과태료로써 충분히 그 제재목적 달성할 수 있는 행위와 행정목적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벌(형벌·과태료)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은 제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과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실적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상한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3조 제4항 ‘준공전 사용신고’

① 관련조문

신항만건설촉진법
<p>제13조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p>

신항만건설촉진법
<p>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p> <p>제24조 (벌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② 검토의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3조는 공사준공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라고 규정하여 준공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 교부 전에도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4조는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통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토지 또는 시설의 변경이 아닌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1)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0>과 같다.

<표-10>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 수 입업 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영업소 폐쇄조치 (법 제35조 제1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영업소 폐쇄조치 (법 제35조 제1항)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영업소 폐쇄조치 (법 제35조 제1항)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지위승계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영업소 폐쇄조치 (법 제35조 제1항)
5	『결핵예방법』 제20조	결핵환자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6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업 영업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1항)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법 제10조)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지위승계신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9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10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11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12	『노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1항	실종노인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의3)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약류생산(수출입) 실적 및 판매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마약 등 생산완료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17	『마약류관리에 관	마약류 원료사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한 법률 제25조	보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18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산후조리업 신고·변경신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제2항)	
19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제2항)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잔여배아 보관·제공 등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법 제41조 제1항)
21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22	『의료기기법』 제12조 제2항	의료기기 생산실적·수출실적 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23	『의료기기법』 제27조 제1항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보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32조 제1항)
24	『의료기기법』 제11조 제1항	의료기기 제조업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25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품목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 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제6조 제1항	조신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26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항	의료기기 수입품 목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27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28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29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30	『의료기기법』 제16조 제4항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31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32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	의료기기 임대업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4조 제1항)	
33	『의료법』 제25조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보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34	『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원·치과 의원· 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35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설 치신고·변경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36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1항	전염병 및 예방접 종 후 이상반응 발 생(신고)보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전염병
37	『전염병예방법』 제5조	기타 제1군 전염 병환자 발생(신고) 보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38	『전염병예방법』 제6조	제1군 전염병환자 등의 퇴원·사망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등의 보고·변경 보고		
39	『정신보건법』 제15조 제2항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40	『정신보건법』 제17조	사회복지시설 휴지신고·재개신고·폐지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41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	부적격혈액 폐기 처분 결과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9조)	
42	『혈액관리법』 제7조의2 제1항	채혈금지대상자 채혈결과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9조)	
43	『혈액관리법』 제6조 제4항	품목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44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화장품 제조업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8조 제1항)	
4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	검안·진단사실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2항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따른 감염인 발견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3항	감염인 사망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2)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는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 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2 제1항	건강기능식품 이 력추적관리 등록 사항 변경신고	300만원 이하(법 제47 조 제1항)	
2	『공중위생관리 법』 제3조 후단	공 중 위 생 영 업 변경신고	300만원 이하(법 제22 조 제1항)	
3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부담금 내역에 관 한 자료제출	300만원 이하(법 제34 조 제1항)	
4	『노인복지법』 제 39조의10 제2항	실종노인 신상 카드 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1조의2 제2항)	
5	『모자보건법』 제 15조의10	산후조리업 휴 업·재개업·폐 업신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제2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사 회 복 지 시 설 휴지·재개업· 폐지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안 전 점 검 결 과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조 제1항)	
8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유전자검사기관 등 신고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5조 제1항)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 대상물 폐기명 령(법 제39조)
9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등 신고·변경 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5조 제1항)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명령(법 제 41조 제항)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 제33조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	100만원 이하(법 제33 조 제1항)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법률 제18조 제2항	실험동물생산시설 재해방지 결과보고	조 제1항)	
11	『영유아 보육법』 제43조 제1항	보육시설 폐지신고·운영중단신고·운영재개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명령(법 제44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송업 휴업신고·폐업신고·재개업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2조 제1항)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55조 제2항)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지위승계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2조 제1항)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55조 제2항)
14	『의료기기법』 제13조	의료기기 제조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47조 제1항)	
15	『의료기기법』 제14조 제5항	의료기기 수입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47조 제1항)	
16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의료기기 수리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47조 제1항)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33조 제1항)	시정명령 (법 제23조)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경업소 폐업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33조 제1항)	시정명령 (법 제23조)
19	『의료법』 제40조 제1항	의료기관 휴업신고·폐업신고	300만원 이하(법 제92조)	시정명령 (법 제63조)
20	『의료법』 제49조 제3항	부대사업신고·변경신고	300만원 이하(법 제92조)	시정명령 (법 제63조)
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폐업 또는 업무종료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48조 제3항)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지명령(법 제30조 제3항)
22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중단신고·재개신고·폐지신고	300만원 이하(법 제89조 제1항)	
23	『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2항	비용수납신고	300만원 이하(법 제89조 제1항)	
24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	전염병예방법집중 실시결과 보고	100만원 이하(법 제56조의2 제1항)	
25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6	소독실시사항보고	100만원 이하(법 제56조의2 제1항)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법 제40조의8 제1항)
26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소독업 휴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56조의2 제1항)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법 제40조의8 제1항)
27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정신요양시설 휴지신고·재개신고·폐지신고	100만원 이하(법 제59조 제1항)	
28	『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혈액검사 결과보고	200만원 이하(법 제23조 제1항)	
29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200만원 이하(법 제23조 제1항)	
30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100만원 이하(법 제32조 제1항)	
31	『화장품법』 제6조	화장품 제조업 휴	100만원 이하(법 제32조	

순번	근거 조문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업신고·재개업신고·폐업신고	제1항)	

(3) 대표사례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지위승계신고’

① 관련조문

공중위생관리법
<p>제 3 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0조 (벌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p>③ (생 략)</p>

② 검토의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공중위생법』 제3조의2 제3항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은 이러한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태도는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질서별로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① 관련조문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략)

노인복지법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6조 (벌칙) ① (생략)</p> <p>②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p>

② 검토의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¹⁴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호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45)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i)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i)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ii)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2조 제1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규정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신고·보고·장부비치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통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① 관련조문

노인복지법
<p>제35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 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제56조 (벌칙) ① (생략) ②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p>

② 검토의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¹⁴⁶⁾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호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규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별로 대체하는 입법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신고·보고·장부비치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통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별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노인장기요양법 제60조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① 관련조문

노인장기요양법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

146)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i)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i)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iii)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법
<p>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p>② (생략)</p> <p>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생략)</p> <p>②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p>제69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생략) 7.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검토의견

『노인장기요양법』 제60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위의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같은 법 제6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 규정이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 규정이며, 같은 법 제59조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제재 규정이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의무 위반(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만을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불이익 정도가 가장 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업무 보고, 서류 등 제출’

① 관련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p>제43조 (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p>할 수 있다.</p> <p>제6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2. (생략)</p> <p>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이하 생략)</p>

② 검토의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행정벌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 자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 제43조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법률 자체에 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서 보고의무·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보고·자료제출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전통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보고의무·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① 관련조문

모자보건법
<p>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6조 (벌칙)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② 검토의견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태도는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질서벌로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① 관련조문

사회복지사업법
<p>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생략)</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1.~3의2. (생략)</p> <p>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이하 생략)</p>

②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신고의 요건·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도 제1차 위반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명령을, 제2차 위반에 대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폐쇄명령만이 유의미할 것이고, (시설의) 개선명령 대신 신고의무 이행명령이 유의미할 것이다. 향후 ‘신고의무’ 위반의 특색을 고려하여 법 정비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벌칙 조항과 신고 의무 위반 벌칙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등 변경신고’

① 관련조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p>제24조 (유전자검사기관 등) ①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 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하 생략)</p> <p>제39조 (폐기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감독기관 또는 그 종사자, 제20조의2</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4항,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성·보관 또는 제공된 배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 또는 제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하 생략)

제5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3. (생략)
4.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② 검토의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은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각각 신고의무 및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폐기 명령(법 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41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제1항)를 부과하도록 하여 본신고의 경우보다 변경신고의 경우에 더 과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이처럼 신고의무 위반과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제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통상의 경우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과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정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제재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변경신고의무 1회 위반의 경우 경고, 2회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월, 3회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월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행정실무 운용에 있어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법 정비시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실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 폐업신고’

① 관련조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p>제24조 (유전자검사기관 등) ①~③ (생 략)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①~③ (생 략) ④ 유전자은행의 장은 유전자은행의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1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 또는 제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하 생략)</p> <p>제5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생 략) 4.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7.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p>

② 검토의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제32조 제4항은 각각 유전자검사기관 폐업신고와 유전자은행 폐업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각각의 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각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에 무의미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조문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선안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 또는 제</p>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 또는 제</p>

현 행	개선안
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하 생략)	37조제1항 후단·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하 생략)

10)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 ‘식품조사처리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① 관련조문

식품위생법
<p>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이하 생략)</p>

식품위생법 시행령
<p>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식품위생법 시행령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검토의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항 이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별칙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7조 제1호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신고나 중대한 사항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허가영업 폐업신고의무 위반, 신고영업 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부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11) 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시설 휴지·재개·폐업신고’

① 관련조문

아동복지법
<p>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p>제12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제15조는 “...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시점이 매우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처럼 이른 시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지우는 특별한 입법목적·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i)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ii)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iii)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iv)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강제할 실효성 확보수단이 필요할 것인데, 『아동복지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수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실효성 확보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4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전부유보설’에 입각하지 않는 한, 행정조사에 언제나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제5조),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특정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협조가 없는 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특정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조사라도

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행정조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행정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등 일반국민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국민 또는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개별법에 규정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와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입법례 중 행정관청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하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비교적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 또는 편의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⁴⁷⁾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에는 가능한 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 기업 등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 법적 안정성 담보, 부담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법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달리 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보고명령과 자료제출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제4조 제4항)라고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 조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에서 행정조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를 거부·

147) 국회법제실, 앞의 책, 965쪽 참조.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정형벌을 부과하거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액수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를 제시하고, 행정형벌을 부과하거나 (과다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1)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2>와 같다.

<표-12>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1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41조)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8조 제1항	타당성 평가 대행 업무 이행 확인 자료제출·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19조)	.

(2)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3>과 같다.

<표-13>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개항질서법』 제41조 제1항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개선명령 (법 제42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 ○ 보고를 태만히 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 	시정명령 (법 제81조)
3	『건축법』 제87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3조)	
4	『건축사법』 제30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법 제28조)
5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사용실태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6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6조 제1항)	
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6월의 기간 내에서의 업무정

제 4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출		지(법 제39조)
8	『교통안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	교통안전점검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9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 보고·자료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조)	
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 제1항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22조)	
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보안사건 발생 예방,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2조)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4조 제2항)	
1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6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6조)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보고·서류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4조)	
15	『도선법』 제29조 제1항	선박운항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	
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전문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을 취소하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리업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법 제88조)	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73조)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1항	정비사업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8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법 제73조)
18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5조)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명령(법 제75조)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	
20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3조)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5 제1항	거주실태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0조)	

(3)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4>와 같다.

<표-14>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징금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도시철도법』 제25조 제1항	도시철도건설자 업무·자산상태보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19조의2)	면허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19조)

(4) 대표사례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① 관련조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p>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② 검토의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6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특정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상한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법률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특정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1)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5>와 같다.

<표-15>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1	『국민연금법』 제122조	가입자의 자격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5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법 제86조 제1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서류제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
3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법 제40조 제1항)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제1호)	.
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자료제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
6	『의료기기법』 제28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5조)	.
7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법 제62조)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행정형벌의 정도	제재적 행정처분
8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제16조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

(2)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6>과 같다.

<표-16>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2조 제1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1항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
4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
5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6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자료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
7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4조 제2항)	.
8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제1항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3조 제1항)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법 제 7조 제4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제1항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 37조 제1항)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1항	보수·소득 등 보고·자료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 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37 조 제1항)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9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제한(법 제 29조 제2항), 지정취소(법 제37 조 제1항)
12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2항)	.

제 4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3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4조 제1항)	.
1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9조 제1항)	.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 제1항)	.
16	『의료법』 제61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2조 제2항)	.
17	『인체조직안전및 관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 제2항)	조직은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25조 제1항)
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제2항)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30조 제1항), 뇌사판정기관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명령(법 제 30조 제2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의 정지 명령(법 제 30조 제3항)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
2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1항)	.
21	『정신보건법』 제39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9조 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취소(법 제 11조 제1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태료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정지 명령(법 제12조 제3항)
22	『혈액관리법』 제13조 제1항	혈액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	.
23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	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

(3)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의 <표-17>과 같다.

<표-17>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순번	근거 조문	행정조사명	과징금 액수	제재적 행정처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지도·감독상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업무정지처분에 같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법 제43조 제1항)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법 제 41조 제2항)

(4) 대표사례

1)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는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을 다음의 <표-18>과 같이 대상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 등 국민의 입장에서 당해 조문만을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받게 될 것인지를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문에서는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라고 하여 기업 등 국민에게 ‘강제적인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는 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18> 국민건강증진법상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보고·신고명 (조문)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검사 등(법 제84조 제1항)	사용자 또는 세대주	보건복지부장관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법 제84조 제2항)	요양기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함)	보건복지부장관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보고(법 제84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법 제84조 제4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필요한 자료

2)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① 관련조문

국민건강증진법
<p>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 7 조 (광고의 금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② 검토의견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제1항(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제8조 제3항(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및 제4항(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자료제출요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는 매우 불명확하고,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요건 규정으로서 문제가 있다.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제1항

① 관련조문

모자보건법
<p>제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3. (생략)</p> <p>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하 생략)</p>

② 검토의견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임신 또는 분만사실)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2항).

그런데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의무 부과시 일반적으로 그 대상, 요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는 하나, 그 대상이나 요건 등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① 관련조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p>제27조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31조 (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② 검토의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같은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에서는 보고·신고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1조 및 제16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 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보고·신고의무자가 될 것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보고·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 단과 비교해도 과도한 벌금 액수라고 생각한다.

5) 의료기기법 제28조 제1항

① 관련조문

의료기기법
<p>제28조 (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있는 물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질문·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권한·직무의 범위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28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수거·폐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생략)

② 검토의견

『의료기기법』 제2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5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만 규정하면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제 5 절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신고제도 분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보고·신고·자료제출의무 중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것으로서 기업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각 연구분야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고·신고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1) 관련조문

건축법 시행령
<p>제19조 (공사감리) ①~④ (생략)</p> <p>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p>

건축법 시행령
<p>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각호 생략)</p> <p>⑥ (생략)</p> <p>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p>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종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2)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i)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ii)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자에게 이러한 배치현황 제출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해당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1번,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1번 제출해야 하는바, 이는 해당 공사감리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건대, 건축사보 관련 지도·감독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권한의 위탁을 통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함이 없이 곧바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배치현황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건축사협회가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공사감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사법 제8조 제3항 ‘건축사 사망신고’

1) 관련조문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p>제 8 조 (자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p>	<p>제 6 조(사망신고) ① 삭제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p>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일 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건축사법』 제8조 제3항은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그 상속인이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 사망에 따라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신고 외에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된다.

(3) 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골재채취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 관련조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p>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2년을 말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p>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p>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p>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2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부할 서류는 i) 골재채취업 등록증, ii)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iii)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iv)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v)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이다.

결국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매 2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골재채취업자에게 불필요한 인적·물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매 2년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특히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만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그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적을 전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운송가맹사업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1) 관련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p> <p>④ 삭제</p>	<p>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이전·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검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항은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5 제1항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로서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므로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느 하나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운송개시 등 신고’

1) 관련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양수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p>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p>

2) 검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히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당 조합에 통보해주면 해당 운송사업자가 해당 조합에 알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1)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사망경위신고’

1) 관련조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p>제121조 (신고 등) 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1조 (장애 발생·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이러한 신고나 통보를 참고로 하여 연금지급·중지·변경·정지 등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결부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법률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의 대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만을 보았을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는 정부로부터 급부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를 명확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법률 차원에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31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발생신고의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사고 경위나 원인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고인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에게 연금지급이 행해지지 않아 등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인

데,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같은 법 제85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주면 국민으로서는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 및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사망사실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3항 ‘연구계획서 승인보고·변경승인보고’

1) 관련조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p>제20조의4 (줄기세포주의 이용) ①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2) 검토의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3항은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연구계획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보고의무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연구계획 승인·변경승인기관이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실태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절차

이 조사는 기업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고·신고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으로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기업들이 의무 이행에 따르는 비용을 추산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표준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그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실제 기업체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선행연구 및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였고, 실제 현장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디싸알폴’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실제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임의 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 50개를 선정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관련 조사의 표본은 특성별 할당 후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의 6개 업종의 기업체 298개(각 업종별 50개 내외)로 선정하였다. 임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한 「공중위생관리법」 대상 조

사의 표본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5.79\%$ 이다.

자료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국가 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바, 실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의 확보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방법을 택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 및 자기기업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문항구성 및 분석방법

(1) 설문지의 구성과 형식

설문지를 이용한 본 조사의 설문 구성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아래 <표-19>에 요약되어 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준비용을 추정하고 설문은 <표-19>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크게 3개 주제의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조사와 달리 실제 업체를 운영하면서 신고·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인 조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연구진 및 설문조사업체와의 논의과정에서 설문조사의 내용이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종업원 수나 매출액, 그리고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비용 등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 바, 문항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19> 문항구성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비 고
인구통계 학적 특성	업체, 업체 소재지, 가맹점 여부(공중 위생관리법 대상만 해당), 업종 구분,		본설문 전 구성
일반사항	종업원 수	문1	
	연 매출규모	문2	
비용관련 사항	연간 신고·보고 횟수	문3	건설산업기본법: 8개 공중위생관리법: 7개
	신고·보고를 위한 내부 활동비용 (담당자 평균연봉 해당업무 소요시간)	문4	활동내역: 5개
	신고·보고를 위한 물품, 서비스 비용	문5	해당항목: 6개
	신고·보고를 위한 외부용역 (연간 의뢰횟수, 회당 평균소요비용)	문6	
	외부용역 비용에 대한 적절성	문6-1	
	직접급여 대비 급여 외 간접비용 비율	문7	
	신고·보고 중 가장 부담되게 느끼는 것	문8	
절차에 대한 의견	신고·보고 중 가장 불필요하다 느끼는 것	문9	개방형
	신고·보고 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	문10	

(2) 표준비용 분석방법

표준비용분석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비용의 분석은 준비부터 보고까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의 <표-20>과 같다.¹⁴⁸⁾

148) 이종한,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표-20> 표준비용분석의 단계

단계	세부 단계
Phase 0. 시작	분석에 포함된 기업 관련 규제는 사전적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구분된다. 대규모 분석(특히, 기초 측정, 사전적 분석 및 업데이트)의 경우, 시작 모임(start-up meeting)에 해당부처, 컨설턴트, 그리고 이외의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다.
Phase 1. 사전적 분석	step 1: 규제의 내용은 정보제공의무와 자료 요구로 분해되어진다. 정보제공의무는 자료요구로 분류되어지고 관련된 행정적 활동이 식별된다. 해당부처는 규제를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요소로 분류한다 step 2: 관계된 규제는 구분되고 경계 설정 step 3: 정보제공의무는 유형에 따라 분류 step 4: 관련된 기업 부분이 식별 step 5: 모집단, 비율 및 빈도수의 식별 step 6: 인터뷰에 따라 평가된 정보제공의무와 자료가 평가에 의해 후에 phase 3에서 추정되는 시간 소비에 대한 설명 step 7: 관련 비용 변수의 식별 step 8: 인터뷰에 사용할 지침서 준비 step 9: step 1-8에 대한 전문가 리뷰 실행
Phase 2. 시간 & 비용 분석	step 10: 선택된 규제 대상 그룹에서 대표적 기업들 선정 step 11: 기업들과의 인터뷰 step 12: 기업 분야 대 활동대비 시간 및 자원 소비의 표준화 step 13: step 10-12에 대한 전문가 리뷰 실행
Phase 3. 평가와 보고	step 14: 인증된 데이터가 국가 수준에서 측정됨 step 15: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출처: 이종한,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행정연구원, 20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규모 혹은 매우 큰 규모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모를 줄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수범자들 중 일

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준비용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국가적 규모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진이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였음을 밝혀둔다.

표준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비용변수들은 크게 신고·보고 제출 횟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내부 인력 및 자원 활용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내부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이용하였을 경우, 업체 이용횟수 및 회당 소요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text{기업의 신고·신고 의무 이행 비용} = (\text{연간 신고·보고 제출 횟수} \times (\text{담당자 시간당 비용} \times \text{해당업무 소요시간} + \text{자원 활용 비용})) + (\text{외주용역 이용 횟수} \times \text{회당 평균비용})$$

위에서 담당자 시간당 비용은 평균 연봉을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52주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며,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신고·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처리에 월 평균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그 값을 구하였다. 자원활용 비용은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물품구매나 서비스이용에 대한 비용으로서 우편, 인쇄, 소프트웨어 이용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 절 조사 결과

1. 건설산업기본법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표준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분포를 감안한다면 조사대상 기업의 비율은 적정한 수준에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조사대상자 50명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6명,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기업 10명, 그리고 49인 이하의 소기업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업종 별로 구분하면 토목/건축공사 52.0%(26명), 산업설비공사 10.0% (5명), 조경공사 10.0% (5명), 환경시설공사 6.0% (3명), 기계설비 6.0% (3명), 그 외 기타 16.0% (8명) 등이었으며, 직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명 미만 48.0% (24명), 10명~30명 미만 20.0% (10명), 101명~200명 미만 20.0% (10명), 301명 이상 12.0% (6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21>과 같다.

<표-2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표본수(명)	비율(%)
전 체		50	100.0
기업규모	대 기 업	6	12.0
	중 기 업	10	20.0
	소 기 업	34	68.0
업종구분	토목/건축공사	26	52.0
	산업설비공사	5	10.0
	조경공사	5	10.0
	환경시설공사	3	6.0
	기계설비	3	6.0
	기 타	8	16.0

구 분		표본수(명)	비율(%)
직원규모	10명 미만	24	48.0
	10명~30명 미만	10	20.0
	101명~200명 미만	10	20.0
	301명 이상	6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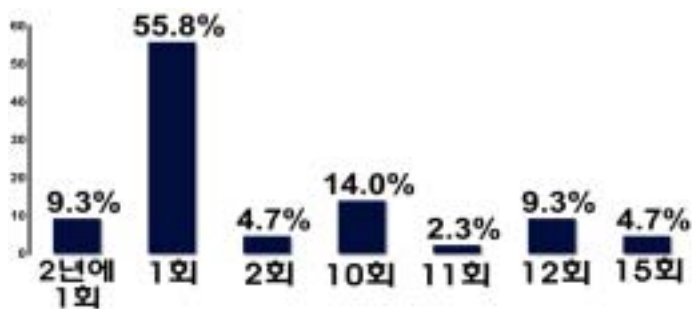
(2) 신고·보고 관련 비용 현황

1) 신고·보고 횟수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간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횟수를 질문한 결과, 연 1회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30.2%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간평균으로 환산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건설 관련 기업들의 신고·보고 의무 횟수는 약 4.16회/년 정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1>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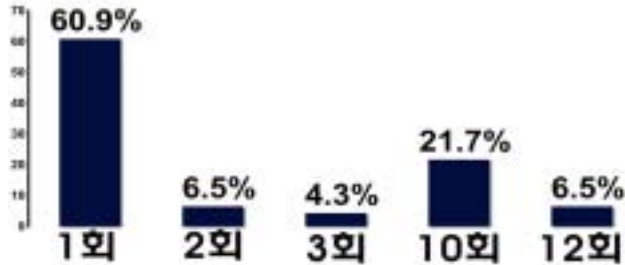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43명)

연간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횟수를 질문한 결과, 연 1회라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10회 이상이

라는 응답도 2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간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83회/년 수준이었다.

<그림-2>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횟수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46명)

연간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횟수를 질문한 결과, 3년에 1회라는 응답이 53.8%로 높은 가운데, 최근 2년간 1회 17.9%, 최근 1년간 1회 20.5% 등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연간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27회/년 수준이었다.

<그림-3>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횟수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39명)

이밖에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합병신고, 건설업 상속신고, 그리고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가 전혀 없거나 1명(상속신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

연간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횟수를 질문한 결과, 연간 1회라는 응답이 91.7%로 높았으며, 그 외 응답으로는 3년에 1회 5.6%, 1년에 2회 2.8% 등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연간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3회/년 수준이었다.

<그림-4>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횟수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36명)

2)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활동

① 정보제공의무 숙지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기업 내부활동들 가운데 ‘정보제공의무 숙지’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일반 사무종사자가 71.4%, 중간관리자가 28.6%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2,939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 17.9%, 3000만원 이하 39.3%, 4000만원 이하 35.7%, 5000만원 이하 7.1%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9.0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1~5시간 미만 35.0%, 년 5~10시간 미만 15.0%, 년 10~20시간 미만 47.5%, 년 20시간 이상 2.5% 등이었다.

② 관련정보 수집 및 평가, 준비, 보고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기업 내부활동들 중 ‘관련정보 수집 및 평가, 준비, 보고’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일반 사무종사자가 52.8%, 중간관리자 36.1%, 기업 대표 및 임원 11.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4,322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 36.1%, 4000만원 이하 38.9%, 6000만원 이하 11.1%, 7001만원 이상 13.9%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12.1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1~5시간 미만 16.7%, 년 5~10시간 미만 25.0%, 년 10~20시간 미만 38.9%, 년 20시간 이상 19.4% 등이었다.

③ 비용지불 및 결제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기업 내부활동들 중 ‘비용지불 및 결제’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기업대표 및 임원 61.3%, 일반 사무종사자 29.0%, 중간관리자 9.7%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5,645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 22.6%, 3000만원 이하 19.4%, 5000만원 이하 6.5%, 6000만원 이하 6.5%, 7000만원 이상 45.2%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월 평균 10.3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1~5시간 미만 29.0%, 년 5~10시간 미만 54.8%, 년 10~20시간 미만 16.1% 등이었다.

④ 내부회의 개최 및 조사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기업 내부활동들 중 ‘내부회의 개최 및 조사’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기업대표 및 임

원 57.7%, 중간관리자 42.3%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6,577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 15.4%, 4000만원 이하 15.4%, 6000만원 이하 19.2%, 7000만원 이하 7.7%, 7001만원 이상 42.3%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8.5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5시간 미만 23.1%, 년 10시간 미만 34.6%, 년 10~20시간 미만 38.5%, 년 20시간 이상 3.8% 등이었다.

3)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항목 등을 ㉠ 우편비, ㉡ 인쇄비, ㉢ 기계(설비), ㉣ 소프트웨어, ㉤ 인지/증지 구입비용, ㉥ 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조사에 참여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기업들(총 50개 기업)의 경우,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해당사항이 없었다.¹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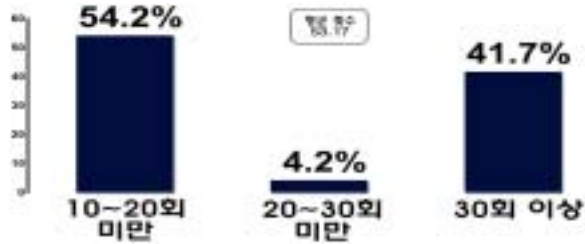
4)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전문 업체 이용현황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의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횟수와 비용을 살펴보았다.

연 평균 이용횟수로는 53.17회, 1회당 소요비용(평균)으로는 191,700원이 각각 응답되었다.

149)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으로는, 실제 해당항목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고·보고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림-5> 연 평균 전문업체 이용횟수



<표-22> 1회 평균 소요비용(유효응답 24명 기준)

		사례수	5만원	20~50만원	50~100만원	(평균 비용/원)
			%	%	%	
■ 전 체 ■		(24)	41.7	54.2	4.2	191,666.7
기업 규모	대기업	(1)			100.0	500,000.0
	중기업	(10)	100.0			20,000.0
	소기업	(13)		100.0		300,000.0

(3) 신고·보고 의무에 따르는 표준비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신고·보고 의무이행에 수반하는 표준비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집단을 대기업(종업원 수 300인 이상), 중기업(종업원 수 50-299인), 소기업(종업원수 49인 이하)으로 구분하여 표준비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대기업은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1,58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은 연간 약 1,931만원, 소기업은 연간 약 363만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신고·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평균 표준비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약 1천만 원 내외에서 최대 2,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소기업 분류에 속한 기업 중에는 최대 7백만 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곳도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건설관련 기업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기업 규모별 표준비용(건설산업기본법)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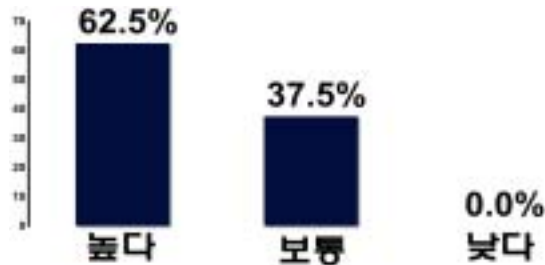
구 분	신고·보고 횟수(회)	내부 인건비	총 내부비용	총 외부비용	총비용	
대기업 4명 (9.1%)	평균	18.3	69.3	1283.3	300	1583.3
	표준편차	6.19	25.1	735.8	600	593.7
	최소값	21	52.0	597.1	0.0	1092.4
	최대값	9	105.8	2326.9	1200.0	2326.9
중기업 10명 (22.7%)	평균	23.2	74.8	1713.1	218	1931.1
	표준편차	2	26.6	557.9	17.5	549.0
	최소값	21.3	43.3	973.6	200	1213.6
	최대값	27.5	109.4	2329.7	240	2529.7
소기업 30명 (68.2%)	평균	3	61.7	201.0	162	363.0
	표준편차	1.2	59.9	212.6	195.0	216.5
	최소값	1	6.9	9.6	0	9.6
	최대값	5.3	210	735	480	735
총계 44명 (100%)	평균	9	65.3	643.1	187.3	830.3
	표준편차	9.2	51.4	757.7	229.5	778.6
	최소값	1	6.9	9.6	0	9.6
	최대값	9	210	2329.7	1200	2529.7

주: 표준비용 산정에 대해 무응답 6개 사례 제외한 44사례 기준 추정.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내부인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문 업체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 업체의 대행비용(용역 횟수 × 회당 용역비용)은 대기업 평균 300만원, 중기업 218만원, 소기업 약 162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우 기업에서는 전문 업체들의 대행의뢰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규모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의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경우, 비용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나타나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7.5%였다.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본 조사에서는 전혀 응답되지 않았다.

<그림-6> 외주 시 비용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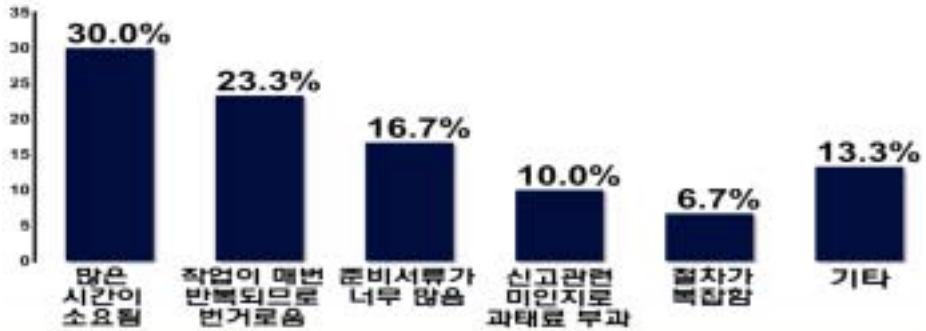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24명)

(4) 신고·보고 의무이행 절차에 대한 수범자 의견

1)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실제 건설산업 기업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0명 중, 30명이 의견을 제시하여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신고·보고 의무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30.0%)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작업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23.3%)을 꼽고 있었다. 이밖에 준비서류가 많다(16.7%)고 여기거나 해당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10.0%)에 대해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30명)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은 준비서류가 많은 것과 매번 반복되는 작업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기업은 많은 시간 소요와 준비서류가 많은 것을, 그리고 소기업은 많은 시간 소요와 매번 반복되는 작업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기업규모별 자세한 내용은 <표-24>와 같다.

<표-24>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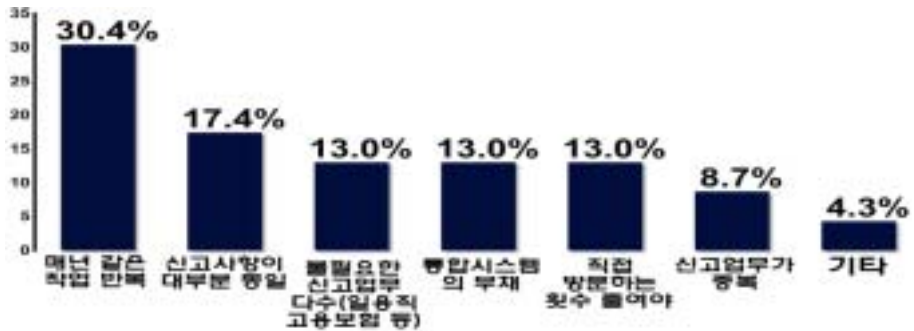
구 분	대기업 (300인 이상)	중기업 (50~299인)	소기업 (49인 이하)	계
신고관련 미인지로 과태료 부과	0	1	2	3
	0%	11.1%	10.5%	10.0%
많은 시간이 소요됨	0	4	5	9
	0%	44.4%	26.3%	30.0%
작업이 매번 반복되므로 번거로움	1	1	5	7
	50%	11.1%	26.3%	23.3%
준비서류가 너무 많음	1	2	2	5
	50%	22.2%	10.5%	16.7%
절차가 복잡함	0	1	1	2
	0%	11.1%	5.3%	6.7%

구 분	대기업 (300인 이상)	중기업 (50~299인)	소기업 (49인 이하)	계
기 타	0	0	4	4
	0%	0%	21.1%	13.3%
계	2	9	19	30
	100%	100%	100%	100%

2)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것

다음은 조사대상자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보고 의무 가운데 부담되는 것과 상관없이 가장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전체 50명 가운데 23명이 의견을 제시하여 살펴본 결과 ‘매년 같은 작업 반복’이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신고사항이 대부분 동일’(17.4%), 일용직의 고용보험과 같은 불필요한 신고가 다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 통합시스템 부재, 직접 방문횟수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림-8>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23명)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기업은 불필요한 신고 다수, 신고업무 중복, 직접 방문횟수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소기업은 매년 같은 작업 반복, 신고사항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응답 분포는 아래의 <표-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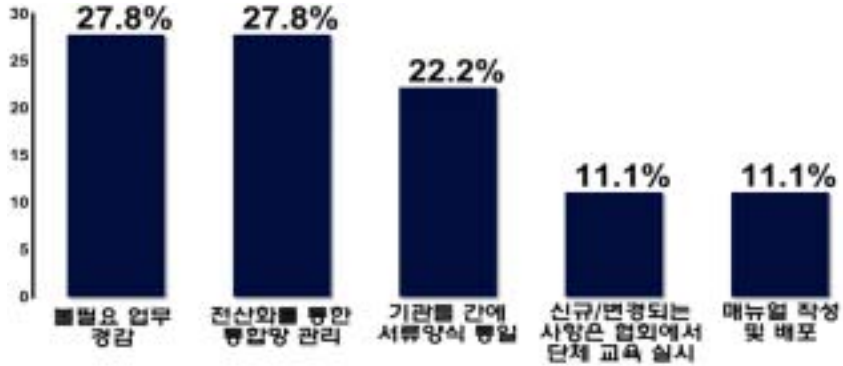
<표-25>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대기업 (300인 이상)	중기업 (50~299인)	소기업 (49인 이하)	계
매년 같은 작업 반복	0	1	6	7
	0%	11.1%	42.9%	30.4
신고사항이 대부분 동일	0	1	3	4
	0%	11.1%	21.4%	17.4
불필요한 신고 다수 (일용직 고용보험 등)	0	2	1	3
	0%	22.2%	7.1%	13.0
통합시스템의 부재	0	1	2	3
	0%	11.1%	14.3%	13.0
신고업무가 중복	0	2	0	2
	0%	22.2%	0.0%	8.7
직접 방문하는 횟수 줄여야	0	2	1	3
	0%	22.2%	7.1%	13.0
기 타	0	0	1	1
	0%	0%	7.1%	4.3
계	0	9	14	23
	0%	100	100	100

3)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신고·보고 의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조사대상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개선안을 제시한 18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고, 전산화를 통해 통합망 관리, 그리고 기관들 사이에 서류양식의 통일, 표준화를 개선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림-9> 신고·보고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건설산업기본법)



(Base: 전체 응답자 50명 중 유효응답자 18명)

2. 공중위생관리법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표준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17.4%(52명), 목욕장업 17.1%(51명), 이용업 17.4%(52명), 미용업 22.8%(68명), 세탁업 18.1%(54명), 위생관리용역업 7.0%(2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가맹점(프랜차이즈)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맹점은 4.7% (14명), 비가맹점은 95.3% (284명)이었으며, 직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명 54.0% (161명), 2~3명 29.5% (88명), 4~5명 8.4% (25명), 6~10명 1.0% (3명), 11~20명 2.3% (7명), 20명 이상 4.7% (14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26>과 같다.

<표-26>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공중위생관리법)

구 분		표본수(명)	응답비율(%)
전 체		298	100.0
업 종	숙박업	52	17.4
	목욕장업	51	17.1
	이용업	52	17.4
	미용업	68	22.8
	세탁업	54	18.1
	위생관리용역업	21	7.0
가맹여부	가맹점	14	4.7
	가맹점 아님	284	95.3
직원규모	1명	161	54.0
	2~3명	88	29.5
	4~5명	25	8.4
	6~10명	3	1.0
	11~20명	7	2.3
	20명 이상	14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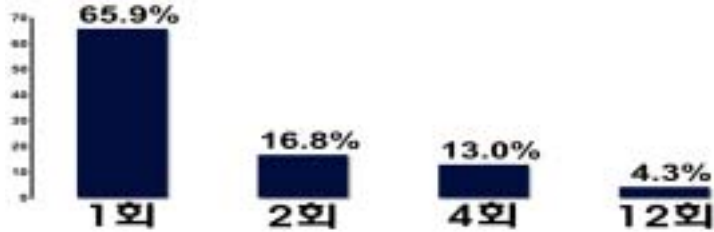
(2) 신고·보고 관련 비용 현황

1) 신고·보고 횟수

연간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 횟수를 질문한 결과, 연 1회라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회 16.8%, 4회 13.0%, 12회 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간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3회/년 수준이었다.

<그림-10> 신고보고횟수-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



(Base: 전체 응답자 298명 중 유효응답자 185명)

연간 ‘공중위생영업신고’ 횟수를 질문한 결과, 연 1회라는 응답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2회라는 응답이 8.3%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8회/년 수준이었다.

<그림-11> 신고보고횟수-공중위생영업신고



(Base: 전체 응답자 298명 중 유효응답자 24명)

연간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횟수를 질문한 결과, 미용업에서 4명의 응답자가 최근 1년간 1회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횟수에서는, 미용업 중 2명의 응답자가 최근 1년간 1회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간 ‘영업양수·도신고’ 횟수를 살펴 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숙박업(3명)과 미용업(2명)에서 최근 1년간 해당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밖에 법인합병신고나 상속신고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2)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활동

① 정보제공의무 숙지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내부활동 중 ‘정보제공의무 숙지’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대표’ 90.4%, 중간관리자 7.2%, 그 외 직원 2.4%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2,919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이하 37.2%, 3000만원 이하 33.1%, 4000만원 이하 12.8%, 5000만원 이하 12.8%, 6000만원 이하 1.4%, 7000만원 이하 0.7%, 7001만원 이상 1.4%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17.8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5시간 미만 2.3%, 년 10~20시간 미만 81.8%, 년 20~30시간 미만 15.9% 등이었다.

② 관련정보 수집 및 평가, 준비, 보고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내부활동 중 ‘관련정보 수집 및 평가, 준비, 보고’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대표’가 87.2%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와 그 외 직원이 각 6.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3,128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3.0%, 2000만원 이하 32.3%, 3000만원 이하 40.4%, 4000만원 이하 8.1%, 5000만원 이하 12.1%, 6000만원 이하 2.0%, 7000만원 이하 1.0%, 7001만원 이상 1.0%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21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10~20시간 미만 43.8%, 년 20~30시간 미만 56.3% 등이었다.

③ 비용지불 및 결제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내부활동 중 ‘비용지불 및 결제’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대표’라는 응답이 95.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중간관리자 1.7%, 그 외 직원 2.6%의 비중을 보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3,277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2.8%, 2000만원 이하 33.6%, 3000만원 이하 35.5%, 4000만원 이하 12.1%, 5000만원 이하 13.1%, 7000만원 이하 0.9%, 7001만원 이상 1.9%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23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5시간 미만 7.1%, 년 10~20시간 미만 42.9%, 년 20~30시간 미만 50.0% 등이었다.

④ 내부회의 개최 및 조사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내부활동 중 ‘내부회의 개최 및 조사’에 대한 담당자 직책을 살펴본 결과, 대표 50.0%, 중간관리자 37.5%, 그 외 직원 12.5%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평균연봉은 4,500만원 수준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 20.0%, 4000만원 이하 30.0%, 5000만원 이하 20.0%, 6000만원 이하 30.0% 등이었다.

담당자의 해당업무 소요시간은 년 평균 28.5시간이었으며, 응답의 분포는 년 20~30시간 미만이 100%(24시간 5명, 36시간 3명) 등이었다.

3)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로 구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항목 등을 1) 우편비, 2) 인쇄비, 3) 기계(설비), 4) 소프트웨어, 5) 인지/증지

구입비용, 6) 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중 우편비와 인쇄비,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응답자 수가 응답에 따라 3명~19명 수준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주목적으로 별도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기계구입비용은 연평균 144,000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분포를 살펴보면, 50만원 미만 80.0%, 1만원 미만 20.0% 등이었다. 인지/증지 구입비용은 평균 20,000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자 수가 3명으로 극히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밖에 설비 등 기타 구입비용은 평균 86,060원 수준이었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52.6%, 50만원 미만 31.6%, 50만원 이상 15.8% 등이었다.

4)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전문 업체 이용현황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의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횟수와 비용을 살펴보았다.

연 평균 이용횟수로는 1.57회, 1회당 소요비용(평균)으로는 168,697원이 각각 응답되었다.

<그림-12> 연 평균 전문업체 이용횟수



<표-27> 1회 평균 소요비용(유효응답 129 기준)

		사례수	5만원 미만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 이상	(평균 비용/원)
			%	%	%	%	
■ 전 체 ■		(129)	17.1	17.8	37.2	27.9	168,697.7
업 종	숙박업	(11)	81.8		18.2		34,727.3
	목욕장업	(35)	14.3	8.6	5.7	71.4	249,714.3
	이용업	(30)		6.7	70.0	23.3	181,600.0
	미용업	(31)	19.4	22.6	45.2	12.9	150,516.1
	세탁업	(22)	9.1	50.0	40.9		114,818.2

(3) 신고·보고 의무에 따르는 표준비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하는 신고·보고 의무이행에 수반하는 표준비용을 분석하였다. 실제 표준비용산정을 위한 응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실제 응답한 나머지 151사례를 가지고 비용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 집단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용역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숙박업은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302만원, 목욕장업은 연간 약 75만원, 이용업은 연간 약 18만원, 미용업은 연간 약 45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세탁업은 연간 약 29만원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용역업의 경우 비용산정을 위한 응답을 얻을 수 없어 제외하였다. 업종별로 평균 표준비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숙박업이 가장 높고, 이용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업종별 표준비용(공중위생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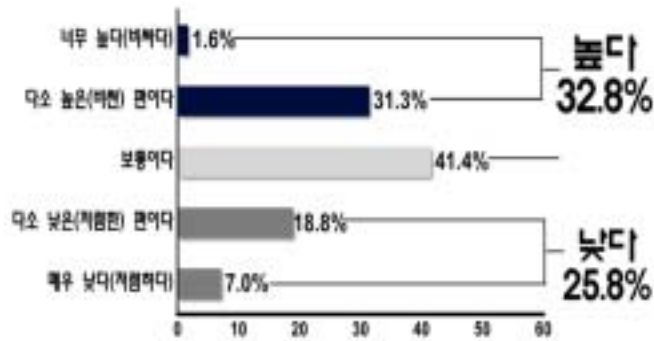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 분		신고·보고 횟수	내부 인건비	총 기타비용	총 내부비용	총 외부비용	총비용
숙박업 26명 17.2%	평균	2.27	99.2	0.6	300.5	1.7	302.3
	표준편차	1.7	108.3	1.6	388.3	3.3	387.0
	최소값	0	0.0	0.0	0.0	0.0	2.0
	최대값	4	346.2	5	1404.6	12	1404.6
목욕장업 35명 23.2%	평균	1.66	9.6	0.3	43.3	31.4	74.6
	표준편차	1.4	21.3	1.7	100.7	24.0	100.7
	최소값	0	0	0	0	12	12
	최대값	6	57.7	10	406.2	150	466.2
이용업 30명 19.9%	평균	0.63	0	0	0	18.16	18.16
	표준편차	0.5	0	0	0	4.3	4.3
	최소값	0	0	0	0	8.4	8.4
	최대값	1	0	0	0	24	24
미용업 37명 24.5%	평균	3.5	7.3	6.9	33.8	15.0	48.8
	표준편차	4.3	13	21	82.8	14.6	84.9
	최소값	0	0	0	0	0	3
	최대값	4	57.7	100	400	60	400
세탁업 23명 15.2%	평균	1.3	2.6	7.3	14.2	14.3	28.5
	표준편차	1.4	5.5	27.2	33.1	10.0	36.3
	최소값	0	0	0	0	0	2
	최대값	4	17.3	130	138.7	42	147.1
총계 151명	평균	1.9	21.5	3.0	72.2	17.0	89.3
	표준편차	2.6	58.1	15.1	201.0	17.1	197.7
	최소값	0	0	0	0	0	2
	최대값	6	346.2	130	1404.6	150	1404.6

주: 표준비용 산정에 대해 무응답한 147 사례 제외.

신고·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의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높다(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 ‘비용이 낮다(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1.4%였다.

<그림-13> 외주시 비용의 적절성



(Base: 전체 응답자 298명 중 유효응답자 128명)

(4) 신고·보고 의무이행 절차에 대한 수범자 의견

1)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응답자들에게 신고보고의무 중 가장 부담되는 것과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횟수가 많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 21.9%, ‘협회(업무대행)비용이 비싼 편’ 17.2%, ‘같은 내용반복으로 시간/비용부담’ 15.6% 등이 높게 응답되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서류의 중복제출’ 6.3%, ‘기준이 명확치 않음(수질기준 등)’ 4.7%,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 1.6%, ‘담당 인력이 없어 어려움’ 1.6%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림-14> 신고보고 의무 중 가장 부담되는 것



(Base: 전체 응답자 298명 중 유효응답자 64명)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숙박업은 횃수가 많다는 것과 협회(업무 대행)비용이 비싼 편이라는 의견이, 목욕장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업은 교육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미용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세탁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위생관리용역업은 횃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의무에 대한 업종별 의견은 다음의 <표-29>와 같다.

<표-29>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공중위생관리법)

구 분	숙 박	목욕장	이 용	미 용	세 탁	위생관 리용역	계
서류 중복 제출	3	0	0	0	0	1	4
	14.3%	0%	0%	0%	0%	12.5%	6.25%
절차 복잡	0	5	0	5	4	0	14
	0%	38.5%	0%	50%	50%	0%	21.9%
협회(대행비) 비용 부담	6	3	0	0	2	0	11
	28.6%	23.1%	0%	0%	25%	0%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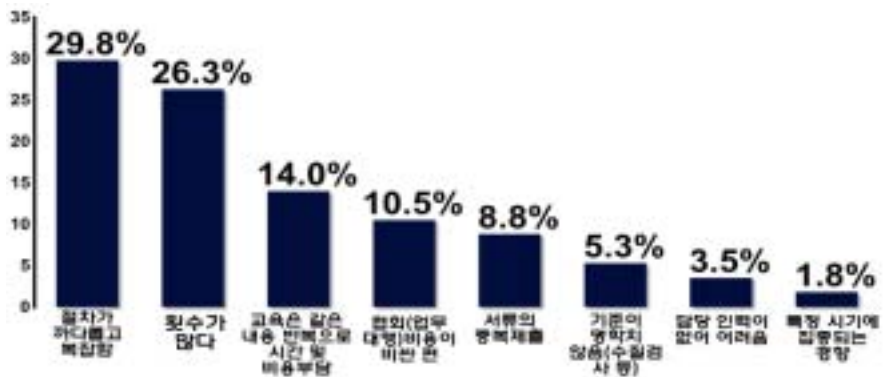
제 5 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실태조사

구 분	숙 박	목욕장	이 용	미 용	세 탁	위생관 리용역	계
같은 내용 교육 반복	0	1	4	3	2	0	10
	0%	7.7%	100%	30%	25%	0%	15.6%
기준 명확치 없음	0	3	0	0	0	0	3
	0%	23.1%	0%	0%	0%	0%	4.7%
담당인력 없음	0	0	0	0	0	1	1
	0%	0%	0%	0%	0%	12.5%	1.6%
특정시기에 집중	0	1	0	0	0	0	1
	0%	7.7%	0%	0%	0%	0%	1.6%
횟수 과다	12	0	0	2	0	6	20
	57.1%	0%	0%	20%	0%	75%	31.3%
계	21	13	4	10	8	8	6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부담의 정도와는 별개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29.8%)는 응답과 ‘횟수가 많다’(26.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15> 신고보고 의무 중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Base: 전체 응답자 298명 중 유효응답자 57명)

업종별로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의무를 살펴보면, 숙박업은 횃수가 많다는 것, 목욕장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과 세탁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위생관리용역업은 다양하게 의견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의무에 대한 업종별 의견은 다음의 <표-30>과 같다.

<표-30>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공중위생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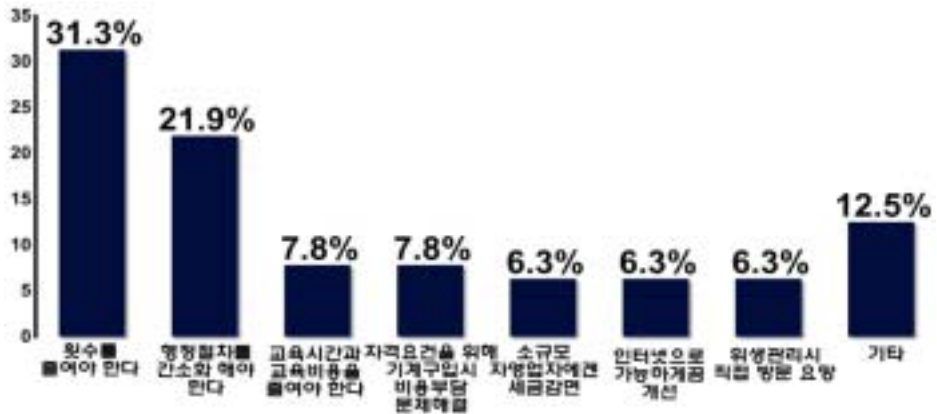
구 분	숙 박	목욕장	이 용	미 용	세 탁	위생관 리용역	계
서류 중복제출	3	0	0	0	0	2	5
	15.8%	0%	0%	0%	0%	33.3%	8.8%
절차 복잡함	0	5	0	8	4	0	17
	0%	45.5%	0%	66.7%	44.4%	0%	29.8%
협회(대행비) 비용 부담	4	2	0	0	0	0	6
	21.1%	18.2%	0%	0%	0%	0%	10.5%
같은 내용 교육 반복	0	2	0	3	3	0	8
	0%	18.2%	0%	25%	33.3%	0%	14.0%
기준 명확치 않음	0	1	0	0	0	2	3
	0%	9.1%	0%	0%	0%	33.3%	5.3%
담당 인력 없음	0	0	0	0	2	0	2
	0%	0%	0%	0%	22.2%	0%	3.5%
특정 시기에 집중	0	1	0	0	0	0	1
	0%	9.1%	0%	0%	0%	0%	1.8%
횃수 과다	12	0	0	1	0	2	15
	63.2%	0%	0%	8.3%	0%	33.3%	26.3%
계	19	11	0	12	9	6	57
	100%	100%	0%	100%	100%	100%	100%

3)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횟수를 줄여야 한다’(31.3%)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21.9%)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을 줄여야 한다’ 7.8%, ‘자격요건 위해 기계구입시 비용문제해결’ 7.8%, ‘소규모 자영업자에겐 세금감면’ 6.3%, ‘인터넷으로 가능하게끔 개선’ 6.3%, ‘위생관리시 직접 방문 요망’ 6.3% 등이 응답되었다.

<그림-16>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Base: 전체 응답자 298명 중 유효응답자 64명)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현행 우리나라 법령상의 보고·신고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수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대상을 분석함은 물론,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의 보고·신고는 이론적 체계는 물론 개념적 관련성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법령의 입안은 물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법령에 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 및 이론적 접근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다시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행정의 편의와 규제를 위한 불필요한 보고·신고를 발굴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법령상의 문제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적 성격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은 그 실태조사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조사되고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보고·신고제도는 신고자인 기업과 일반국민 등에게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규제적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행정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청은 단순한 통계적 목적 혹은 관리·감독의 목적으로 거의 활용되거나 관리되지도 않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남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는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령상의 보고·신고 및 자료제출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법령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담이지만 수범자

의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고·신고가 중복적이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신고를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법령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의 보고·신고 관련규정에 주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그 기간이 1회성에 거치기보다는 매월, 분기별, 반기별, 연간 혹은 몇 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고·신고 등에 관한 행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수범자의 부담도 동시에 줄인다는 점에서 통합화된 전산망의 활용을 줄이고 일회의 보고·신고로 갈음하고, 변경에 따른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고·신고 위반의 처벌에 있어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금융·보건·안전 등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의 액수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크지고, 관련 사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한 보고적 성격의 행위에도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수범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벌의 강화문제와 더불어 숨겨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고·신고에 관한 사항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라 1회적인 경우 이를 수범자가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보고·신고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행정지도

등의 규정을 두어 행정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처벌규정 등은 두지 않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기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신고·보고의 횟수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에 일반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고·신고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영업자 등 소규모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담당공무원은 배치하거나, 보고·신고 등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직접조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법령에 1차 알림조사, 2차 직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보고·신고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체계와 관련해서는 보고·신고제도의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이 행정입법에 의한 보고·신고제도가 원용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위임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에 따른 규정과 시행령에 따른 규정이 혼재하는 바, 서식과 관련 열거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서 규제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의무부과에 있어서도 그 수범자인 국민 또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고·신고자, 보고방법·기한·절차 등이 법률 또는 적어도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일괄적인 법령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0.
-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 박영사, 2005.
-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세규,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재론, 동아법학 제3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 김재규, 신고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I, 2001.
-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 판례연구 VIII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002. 2.
- 김중권, 행정법상 억제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승인, 저스티스, 1998. 3.
-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 조성규,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2005. 1.
- 천병태·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 佐藤英善, 經濟行政法, 成文堂, 1990.
- 宇賀克也, 行政手續法の解説, 學陽書房, 2006.

부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건설산업기본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현행 법률에 규정된 신고, 보고 의무 가운데 불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파악하여 기업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실태파악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월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 조사 담당자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T: (02)3775-1068 / F: (02)3775-1061

회사명		연락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않음)
응답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업규모	①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② 중기업(종업원 50인~299인) ③ 소기업(종업원 49인 이하) ④ 그 외 기타		
업종구분	① 토목/건축공사 ② 산업설비공사 ③ 조경공사 ④ 환경시설공사 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⑥ 그 외 기타		
담당자 서명		자료수집일	

I. 일반사항

문1. 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① 10명 미만 ② 10명-30명 미만 ③ 30-50명 미만
 ④ 50-100명 미만 ⑤ 100-200명 미만 ⑥ 200-300명 미만
 ⑦ 300명 이상

문2. 2009년을 기준으로 귀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_____ 만원)

II. 신고를 위한 비용 관련사항

문 3. 귀 사의 경우 다음의 신고·보고를 최근 1년간 몇 회 정도나
 이행하셨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모두 응답하여 주세요.
 만약 2~3년에 1회 정도라면, 별도로 표기하여 주세요. (예: 2년
 에 1회, 3년에 1회 등)

구분	보고·신고명 (조문)	년간 횟수
1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법 제49조 제1항: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	총00회
2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법 제49조 제1항, 제3항: 건설공사의 시공상황)	총00회
3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 12조의2: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총00회

구분	보고·신고명 (조문)	년간 횟수
4	건설업 양도신고 (법 제17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4호 건설업양도 신고서)	총00회
5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5호 법인합병신고서)	총00회
6	건설업 상속신고 (법 제17조 제4항: 별지 제16호 건설업상속신고서)	총00회
7	건설업 폐업신고 (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6호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총00회
8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 상호·명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증명서류)	총00회
전 체		총00회

문 4. 다음은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귀사의 내부활동 들로서 그 중 일부만 해당 될 것입니다. 귀사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만 골라 담당자의 직책, 담당자의 평균연봉, 해당 업무를 위한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본 설문 문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보기 >

(1) 기업대표 및 임원	(2) 중간 관리자	(3) 공장관리자(공장장, 반장 등)
(4) 외부전문직(기술직,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5) 일반 사무종사자(총무, 경리 담당 등)	(6) 생산직 종사자
(7) 기타		

활동내역	담당자 (직책)	담당자의 평균연봉 (만원)	해당업무 소요시간 (시간)
1) 정보제공의무 숙지		만원	/월
2) 관련정보와 수치 수집 및 평가, 수치의 준비, 보고 (계산과 보고, 검토와 수정, 기술, 복사, 파일링, 배포, 자료제출 등을 모두 포함)		만원	/월
3) 비용지불 및 결제		만원	/월
4) 내부회의 개최 및 조사 (회의의 경우 주관자만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조사는 감사인 주관 회의참석, 감사 수검준비 및 이행, 시정조치 결과보고 등)		만원	/월
5) 기타()		만원	/월

주 1)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담당자 보기>에서 골라 기재함

주 2) 담당자의 연봉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좋으니 대략적으로라도 기재 요망

주 3)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만 기입해야 함

문 5. 귀사에서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으실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최근 1년의 경험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 하신 후 각 공란에 비용을 기입하시고 총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항목 (해당항목에 체크)	1) 우편비	2) 인쇄비	3) 기계 (설비)	4) 소프트 웨어	5) 인지/증지 구입비용	6) 기타
소요비용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문 6. 귀 사업장에서는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법무사, 협회, 심부름 센터 등)에 의뢰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당란에 기입해주시시오. (오직 신고·보고 의무만을 위한 외부전문용역을 의미하며, 연 평균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연간 용역의뢰 횟수	()회	1회당 평균 소요비용	()원
-----------------------	------	------------------------	------

문 6-1. 그렇다면 전문업체에 대행을 의뢰한 경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 ① 너무 높다(비싸다) ② 다소 높은(비싼)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낮은(저렴한) 편이다
 ⑤ 매우 낮다(저렴하다) ⑥ 기타 (구체적으로 :)

문 7. 귀사에서는 한사람의 직원을 고용하여 근무시키는데 있어, 급여 외에 간접비용(4대 보험, 복리후생비, 사무집기, 사무공간 등)이 직접 급여의 몇 %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 ① 10% ② 20% ③ 25% ④ 30% ⑤ 40% ⑥ 50%
 ⑦ 50% 초과

Ⅲ. 절차에 대한 수범자 의견

문 8. 귀 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시기에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문 9. 귀 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시기에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부담의 정도와는 별개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문 10.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보고의 중복 제출, 과도한 비용, 보고·신고의 내용 어려움. 횡수가 많다 등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공중위생관리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현행 법률에 규정된 사업체의 신고, 보고 의무 가운데 불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파악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실태파악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월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02)3498-8792)
▶ 조사 수행 기관
 (주)디시알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02)3775-1060)
▶ 조사 담당자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T: (02)3775-1068 / F: (02)3775-1061 / E-mail: kkd@dcrpoll.com

회사명		연락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않음)
응답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업체소재지	_____ 시 _____ 군/구 _____ 동/읍/면		
가맹점 여부 (프랜차이즈)	① 가맹점 ② 가맹점 아님		
업종구분	① 숙박업 ② 목욕장업 ③ 이용업 ④ 미용업 ⑤ 세탁업 ⑥ 위생관리용역업(정소대행업체)		
담당자 서명		자료수집일	

I. 일반사항

문1. 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① 1명 ② 2~3명 ③ 4~5명 ④ 6명 ~10명
 ⑤ 11~20명 ⑥ 20명 이상 ⑦ 그 외 기타

문2. 2009년을 기준으로 귀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II. 신고를 위한 비용 관련사항

문 3. 귀 사업장의 경우 다음의 신고·보고를 최근 1년간 몇 회 정도나 행하셨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모두 응답하여 주세요. 만약 2~3년에 1회 정도라면, 별도로 표기하여 주세요. (예: 2년에 1회, 3년에 1회)

※ 면접원 : 아래의 해당 사안에 대해 각각 법적으로, 실제 어떤 일들인지 응답자들에게 설명할 것

구분	보고·신고명 (조문)	년간 횟수
1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법 제9조) 보고(행정조사)_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 ___ 회
2	공중위생영업신고(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영업신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별지 제1호 영업신고서	총 ___ 회

구분	보고·신고명 (조문)	년간 횟수
3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의2) 위반시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별지 제1호 영업신고서	총 ___ 회
4	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의3)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별지 제5호의2 폐업신고서	총 ___ 회
5	영업양수·도신고(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4) 위반시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총 ___ 회
6	법인합병신고 위반시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총 ___ 회
7	상속신고 위반시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별지 제6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총 ___ 회
전 체		총 ___ 회

문 4. 다음은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할 때 포함되는 귀 사업장의 내부활동들로서 그 중 일부만 해당 될 것입니다. 귀사에게 해당 되는 내용들만 골라 담당자의 직책, 담당자의 평균연봉, 해당 업무를 위한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본 설문 문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보기 >

(1) 대표 (2) 중간 관리자 (3) 그 외 직원 (4) 기타
--

부 록

활동내역	담당자 (직책)	담당자의 평균연봉 (만원)	해당업무 소요시간 (시간)
1) 정보제공의무 숙지		만원	/ 월
관련정보와 수치 수집 및 평가, 수 치의 준비, 보고 2) (계산과 보고, 검토와 수정, 기술, 복사, 파일링, 배포, 자료제출 등 을 모두 포함)		만원	/ 월
3) 비용지불 및 결제		만원	/ 월
내부회의 개최 및 조사 (회의의 경우 주관자만을 기준으 4) 로 기재하며, 조사는 감사인 주관 회의참석, 감사 수검준비 및 이행, 시정조치 결과보고 등)		만원	/ 월
5) 기타()		만원	/ 월

주 1)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담당자
보기>에서 골라 기재함

주 2) 담당자의 연봉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좋으니 대략적으로라도
기재 요망

주 3)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만 기입해야 함

문 5. 귀 사업장에서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으실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 하신 후 각 공란에 비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항목 (해당항목에 체크)	1) 우편비	2) 인쇄비	3) 기계	4) 소프트웨어	5) 인지/증지 구입비용	6) 기타 (설비)
소요비용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문 6. 귀 사업장에서는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행업체(법무사, 협회, 심부름 센터 등)에 의뢰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당란에 기입해주시시오. (오직 신고·보고 의무만을 위한 외부전문용역을 의미하며, 연 평균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연간 용역의뢰 횟수	()회	1회당 평균 소요비용	()원
---------------	------	----------------	------

문 6-1. 그렇다면 전문업체에 대행을 의뢰한 경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 ① 너무 높다(비싸다) ② 다소 높은(비싼)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낮은(저렴한) 편이다
- ⑤ 매우 낮다(저렴하다) ⑥ 기타 (구체적으로 :)

문 7. 귀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의 직원을 고용하여 근무시키는데 있어, 급여 외에 간접비용(4대 보험, 복리후생비, 사무집기, 사무

공간 등)이 직접 급여의 몇 %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 ① 10% ② 20% ③ 25% ④ 30% ⑤ 40% ⑥ 50%
⑦ 50% 초과

Ⅲ. 절차에 대한 수범자 의견

문 8. 귀 사업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시기에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문 9. 귀 사업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시기에 신고·보고 의무 중에서 부담의 정도와는 별개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 문 10. 신고·보고 의무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보고의 중복 제출, 과도한 비용, 보고·신고의 내용 어려움. 횡수가 많다 등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